

한국목간학회

제34회 정기발표회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의 현 단계



- 일시 : 2020. 6. 25 (목) 13:00~18:10
-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지하1층 교육실
- 주관 : 한국목간학회
- 주최 : 한성백제박물관, 한국목간학회

■ 제34회 정기발표회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의 현 단계> 일정

사회 : 정호섭(고려대)

1부 고구려	13:00~ 14:30	■ 廣開土太王陵碑 탁본 『惠靜本』의 탁본사적 위치 - 『水谷本』과의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발표 :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토론 :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 「集安高句麗碑」의 建立 목적과 守墓制 발표 : 안정준(서울시립대) 토론 : 여호규(한국외대)

사회 : 김영심(한성백제박물관)

2부 백제 · 가야	14:40~ 16:10	■ 백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안기의 정치적 성격 발표 : 장미애(고려대) 토론 : 박현숙(고려대)
		■ 임나관련 금석문의 재검토 -任那 草拔과 金官國의 역사적 성격 발표 : 최연식(동국대) 토론 : 김재홍(국민대)

사회 : 홍승우(경북대)

3부 신라	16:20~ 17:50	■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과 의의 발표 : 권인한(성균관대) 토론 : 한경호(성균관대)
		■ 신라 文書木簡의 話者와 書者 발표 : 이경섭(경북대) 토론 : 박성현(계명대)
총평	17:50~ 18:10	주보돈(경북대)

■ 목차

■ 廣開土太王陵碑 탁본 『惠靜本』의 탁본사적 위치

- 『水谷本』과의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발표 :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1
토론 :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21

■ 「集安高句麗碑」의 建立 목적과 守墓制

발표 : 안정준(서울시립대학교)	23
토론 :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49

■ 백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안기의 정치적 성격

발표 : 장미애(고려대학교)	53
토론 : 박현숙(고려대학교)	73

■ 임나관련 금석문의 재검토 -任那 草拔과 金官國의 역사적 성격

발표 : 최연식(동국대학교)	77
토론 : 김재홍(국민대학교)	95

■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과 의의

발표 : 권인한(성균관대학교)	97
토론 : 한경호(성균관대학교)	135

■ 신라 文書木簡의 話者和 書者

발표 : 이경섭(경북대학교)	137
토론 : 박성현(계명대학교)	157

廣開土太王陵碑 탁본 『惠靜本』의 탁본사적 위치

- 『水谷本』과의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 I. 머리말
- II. 「惠靜本」의 복원과 「水谷本」
- III. 두 탁본의 특징 비교
- IV. 맺음말

I. 머리말

광개토대왕릉비(이하 능비로 줄여 씀)가 현존하고는 있지만 원래 새겨진 문자와 현재의 문자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비문의 훼손은 비바람에 의한 자연적 손상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위적 행위에 의해서도 비문은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었다. 19세기 말 능비 발견 직후 비석을 덮고 있는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비면에 불을 질렀다. 이끼는 제거되었지만 이 때 불을 맞은 비면도 많은 손상을 입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비문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자 탁본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탁본의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게 되자 탁공은 비면에 석회를 바른 다음 탁본을 만들게 된다. 또한 명확한 글자를 구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회로 가공한 글자도 만들어 졌다. 그 과정에서 원래의 글자가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석회는 風雨에 의해 제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8년 비각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석회는 塗布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석회는 잔존했다. 석회는 현재에도 비면에 상당량이 존재한다. 더구나 1960년대와 80년대에 중국 당국이 비면의 강화 보수를 위해 행한 약품 처리 작업은 더 큰 문제가 되었다. 약품에 의해 잔존 석회와 응회암의 원석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제는 원석과 석회가 구분이 힘들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비 연구의 일차적 사료는 초기원석탁본이다. 초기원석탁본이란 능비에 석회가 발리기 이전에 만들어진 탁본을 말한다. 원석탁본이라고도 한다.

현재 알려진 능비 탁본은 130여 본에 이른다.¹⁾ 이 중에는 석회탁본이 대부분이며 원석탁본은

13~18여 본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3본이 알려져 있다. 혜정본과 구 임창순 소장본, 규장각 소장본이다. 구 임창순 소장본은 현재 그의 아들인 임세권이 소장하고 있다.²⁾ 임창순의 호를 빌어 靑溟本이라고도 한다. 청명본의 경우 발문이 있어 탁출된 내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청명본은 1889년 北京의 명탁공 李雲從에 의해 채탁된 원석탁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명본은 완전본이 아니다. 4면에 걸쳐 5곳 364자의 결실이 있다.³⁾ 최근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국내의 또 다른 원석탁본으로 알려진 규장각 소장본은 청명본 3면의 결실 부분임이 밝혀졌다.⁴⁾ 이로 보면 국내 원석탁본은 청명본과 혜정본 2본이 되는 셈이다.

일본에는 水谷本(미즈타니본)과 金子本(가네코본)이 원석탁본으로 알려져 있다. 水谷本은 國立歷史民俗博物館에 所藏되어 있으며 金子本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대만에는 중앙연구원 傅斯年圖書館藏 甲本과 乙本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만에는 미공개 탁본 중에 원석탁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는 舊 王少箴 소장본(현재 북경 거주 후손이 소장), 중국국가도서관장본, 북경대학 도서관 A~E본 등 12본이 소개되고 있다.⁵⁾ 그러나 현재 원석탁본으로 알려진 중국 소재 본들 중에는 원석탁본으로 보기 힘든 탁본도 보인다. 사진 만으로 보아 원석탁본의 여부를 가름하기 어렵지만, 석회탁본을 원석탁본으로 보고된 것도 있는 것 같다. 향후 실물을 통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I. 「惠靜本」의 복원과 「水谷本」

1. 「惠靜本」의 출현

혜정본은 전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관장이었던 김희숙씨 소유의 능비 拓本이다. 혜정은 김희숙씨의 號이다. 이 탁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廣開土太王이 崩御한 지 1600년이 되는 해인 2012년 이었다. 소유자가 1984년~1985년 무렵 中國 北京의 琉璃廠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하였다.⁶⁾ 그 이후 몇몇 지인들에게 보여주긴 했으나 원석탁본인지의 여부 등을 포함해 이 탁본의 진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탁본은 잘라서 冊으로 엮은 線裝本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형태를 剪裝本 또는 剪帖本이라 하였다. 剪裝本과 剪帖本은 탁본을 잘라서 裝幀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일본학계의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이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 張明善 탁출』에 실린 고광의, 조우연, 백승옥의 논고 참고.

2) 任世權·李宇泰 編著, 2002, 『韓國金石文集成(1)』, 韓國國學振興院.

3)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212쪽의 주 (10).

4) 권인한, 2013, 「奎章閣藏 '廣開土大王陵碑文拓本'의 價值」『口訣研究』31.

5) 조우연, 2019, 『廣開土大王陵碑 拓本- 張明善 탁출』, 국립문화재연구소, 58~59쪽.

6) 이는 필자가 2012년 말 김희숙 소장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자세한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 소장자는 한일 관계 연구자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과 부부였다. 최서면 원장은 1957년 일본으로 망명한 후 30년 동안 도쿄에 거주하면서 한일 관계 역사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힘썼다. 2020년 5월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동아일보』 2020년 5월 27일자 28면). 혜정본 수집에는 최서면 원장의 자료에 대한 안목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존 상태의 혜정본 상황은 일본 아니면 중국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혜정본 첫 쪽에 중국의 북경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鑑定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성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혜정본은 모두 2冊으로 각각 1面과 2面을 잘라서 1冊씩 엮었다. 원래는 4冊으로 추정되며 3面과 4面이 성책 되었을 3, 4冊은 없다. 향후 출현을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혜정본이 가지는 탁본사적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 검토의 대상 자료로서는 水谷本을 택했다. 水谷本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진데다가 현존하는 원석탁본 가운데 원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2. 「水谷本」의 탁본사적 위치

水谷本은 미즈타니 테이지로(水谷悌二郎)가 1945년 5월 東京 本郷弓町の 江田文雅堂에서 400엔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한다.⁷⁾ 현재는 일본 千葉縣 佐倉市 소재의 國立歴史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水谷의 유족이 1995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재야 학자라고 할 수 있는 水谷은 능비 탁본에 대한 연구에 盡力하여 1959년 「好太王碑考」(『書品』 제100호)를 발표하게 된다. 여기에서 수곡은 탁본의 종류를 쌍구곽전본, 원석탁본, 석회탁본으로 구분한다.⁸⁾ 이러한 구분은 이후 탁본 분류의 기본이 되었다. 水谷은 1884년부터 쌍구곽전본이 만들어지며, 원석탁본은 1887년부터, 석회탁본은 1899년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본인 소장본은 원석탁본이라 하였다.⁹⁾

이에 대해 李進熙는 1972년 水谷本이 원석탁본이라 한데 대하여 반박하였다.¹⁰⁾ 그는 水谷本을 1930년대 이후 석회가 많이 박락된 이후의 탁본이라고 하였다. 또한 1883년 일본에 처음 들어온 酒匂本도 석회로 비면을 바른 뒤 탁본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원석탁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쌍구가목본 제작시기를 1882년 이후로 보았다.

水谷本의 원석탁본 여부는 현재 알려진 석회 박락기의 대표적 탁본인 書學院本과의 비교와 원석탁본이 확실시되는 靑溟本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서학원본의 경우 실견을 통한 자세한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사진 상으로 보아 水谷本과는 세로 패선에서 차이가 있다. 서학원본의 경우 패선이 보이긴 하나 석회의 잔존으로 인해 間斷이 있다. 이에 반해 水谷本의 세로 패선은 비교적 선명하다. 이는 水谷本이 석회 탁본이 아님을 증명해 준다. 또 하나의 말기 석회본인 足立本과 비교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서학원본과 足立本은 아주 유사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향후 실견을 통해 비교 관찰한다면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석회 탁본에서 1-3-27字(1면 3째줄 27번째 글자를 표시함. 이하 같음)는 ‘因’으로, 1-3-41字는 ‘黃’으로 탁출되어 있지만 원석탁본인 북경대 도서관 A~D본이나, 청명본 등에서는 ‘天’과 ‘履’로 되어 있다.

7) 다케다 유키오, 2013,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문제」『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46쪽.

8)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書品』100号; 1977, 『好太王碑考』, 東京, 開明書院.

9) 위와 같음.

10)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李基東 譯, 1982, 『廣開土王陵碑의 探求』, 서울: 一潮閣); 2003, 『好太王碑研究とその後』, 靑丘文化社.

水谷本 또한 이들과 닮아 있다. 水谷本은 원석탁본임에 틀림없다.

【표 1】 탁출법의 변천과 水谷本の 위치¹¹⁾

	水谷悌二郎 案(1959년)	李進熙 案			王健群 案		武田幸男 案 1988년	
		1972년	1973년 ¹²⁾	1985년 ¹³⁾	1984년	1988년 ¹⁴⁾		
I 기	쌍구곽전 본 1884년 ~	쌍구가목 본 1882년~	左同	左同	쌍구가목 본 1875년 ~	左同 1875년 ~	목수곽전본 1881년 ~	
II 기	원석탁본 1887년 ~ 水谷拓本	본격적 탁본 1887년 ~	左同	左同	쌍구가목 본과 정식 탁본 병행 1887년 ~ 정식탁본 이 중심 1889년 ~	左同 1882년 ~ 水谷拓本 (쌍구가목 본은 1889년가 지 작성)	원석탁본 1887년 ~ 水谷拓本	
III 기	석회탁본 1889년 ~	참모본부에 의한 석회전면 도포 후 탁본			석회 탁본이 중심 1902년 ~	문자의 사이에만 석회를 바르고 탁본 1900년 ~	석회탁본 1890년대 초 ~	
		1900년 ~	1899년 ~	左同				
		곧 이어 다시 석회 바름			석회탈락 후의 탁본 1963년 ~	문자를 석회로 보수한 후 탁본 1902년 ~		
		석회가 떨어져 나가는 시기의 탁본						
		水谷拓 本 1930년 이후 탁본	水谷拓 本 1935~19 45년 추정	水谷拓 本1930 년대 중엽 탁본				

11)濱田耕策, 1990, 「故足立幸一氏寄贈の京都府立福知山高校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について」『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朝鮮の研究』,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 NO.24, 27쪽 표 2에서 改變 轉載.

12) 이진희, 1973, 『好太王碑の謎』, 講談社.

13) 이진희, 1985, 『好太王碑の謎-日本古代史を書きかえる』, 講談社文庫.

14) 왕건군 등, 1988, 『好太王碑と高句麗遺跡』, 讀賣新聞社.

【표 2】 武田幸男의 A형(원석탁본) 유형분류 대조표¹⁵⁾

유형	A1형	A2형	A3형	A4형
탁본의 정돈 상태	부정돈	정돈	정돈	정돈
용지 매수	1매 정도	150~160매 정도	60매 전후	12매
용지의 층수		1층	1층	2층
용지의 段數		11~12단	8~9단	3단
착묵 상황	1자 정도	착묵하지 않은 곳 약간 있음	전면 착묵	전면 착묵
탁출 거칠기 정도	가목의 가능성 있음	약간 거침	정교함	정교함
글자 가늘기 정도		약간 두터움	가늘	가늘
해당 탁본	關月山 등의 탁본	대만 傅斯年 乙本, 王少箴구장 본, 중국국가도 서관본, 북경대도서 관E본	『書通』 창간호 부록본, 북경대학도 서관 A본	水谷本, 金子本, 靑溟本, 부사년 甲本, 북경대학도서 관 B본, C본, D본
비고	미확인			1889년 李雲從 탁본

水谷의 연구 성과를 더욱 진척시킨 연구자는 武田幸男이다.¹⁶⁾ 그는 탁본의 공백부분(着墨되지 않은 부분)의 형태 변화에 주목하여 탁본을 편년하였다.¹⁷⁾ 각종 묵본의 유형을 A형(原石拓本), B형(墨水廓填本), C형(石灰拓本), D형(模刻本)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A형은 비가 발견된 1880년 이후부터 1890년까지 약 10년간 탁출된 것으로 보았다. 武田은 묵본을 拓出法(수탁 수법의 섬세한 정도 및 拓字의 두터운 정도), 着墨法(착묵한 곳의 有無와 廣狹), 用紙法(각 면의 段과 매수, 합계 매수, 層數)을 기준으로 다시 A1~4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표 2 참조】.¹⁸⁾

A1형은 小紙에¹⁹⁾ 한 문자나 여러 문자가 탁출된 것으로, 비 발견 직후에 탁출된 부분탁을 말한다. 이 유형은 아직 발견 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武田이 이 유형을 설정한 것은 묵수곽전본의 존재 때문으로 보인다. 묵수곽전본의 경우 그 모본이 되는 원석탁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묵수곽전본은 A1형의 탁본지를 바탕으로 그 위에 종이를 대고 윤곽을 그린 후 나머지 부분에 먹칠 채우는 방식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묵수곽전본은 탁본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의 원석탁본이라 할 수 있는 A1형의 문자를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자료적 가치는

15) 武田幸男, 2009, 앞의 책, 112쪽의 表2을 바탕으로 보충.

16) 武田幸男, 1988, 『광개토왕비원석탁본집성』; 2009, 『광개토왕비연구묵본의 연구』

17)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陵碑研究の現段階」『廣開土王陵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243~251쪽.

18) 武田幸男, 2009, 앞의 책, 110~112쪽.

19) 능비 탁본은 비의 크기 때문에 종이를 이어 붙일 수밖에 없다. 이때의 작은 단위의 종이를 小紙 또는 小拓紙라 표현한다.

있는 것이다.

A2형은 탁출 수법이 조잡하고, 碑字는 두껍고, 먹칠 착묵하지 않은 공백 부분이 있는 탁본이다. 각 면 11~12단으로서 각 단 4매로 구성된 탁본이다. 따라서 한 면 합계 44매 정도로 전체 150~160매 정도의 탁지로 이루어진 탁본을 말한다. 다만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부사년도서관 소장 乙本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A3형은 용지가 총 60매 전후로 8~9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거의 전면에 착묵했으며 글자의 두텁기는 가는 형태의 탁본을 말한다. 현재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書通』 창간호 부록본과 북경대학도서관 A본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A4형은 각 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지는 총 12매의 탁본을 말한다. 정교하고 치밀한 착묵이 거의 전면에 미치고 문자는 가늘게 탁출된 유형을 말한다. 武田은 A4 유형을 1889년 李雲從이 제작한 탁본으로 보고 있다. 이 유형에는 水谷本 외에 金子本과 청명본, 부사년 甲本 등 현재 7본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最古 最良의 목본으로 보았다.²⁰⁾

水谷本은 武田의 A4유형에 속한다. 필자는 전고에서 혜정본을 水谷本과 동일한 사람이 제작한 탁본일 것으로 추정한 바가 있다.²¹⁾ 그러나 당시는 水谷本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행하기 전에 추정해서 내린 결론이었다. 이번의 검토는 그러한 추정에 대한 구체적 확인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두 탁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보이는데 초점을 두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惠靜本の 復原

혜정본은 원 탁본을 잘라서 책으로 만든 선장본이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 전체적 특징을 살피기 어렵다. 이를 자르기 이전의 형태로 복원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혜정본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문장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있다. 그런데 그 곳에는 글자의 아래 부분에 어김없이 빨간 동그라미가 조그마하게 그려져 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1-1-14자인 北字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글자의 다음 글자는 1-1-15자인 夫字가 아니라 1-2-1자인 巡字가 배열되어 있다. ‘~出自北夫餘-(1-1-13자~16자 부분)’로 되어야 할 곳이, ‘~出自北巡幸-(1-1-13자~14자, 1-2-1~2자 부분)’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1-2-14자인 臨字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1-3-14자인 本字 위에 그려져 있다. 이후도 계속 이어진다. 모두 각행의 14자에 있으며 그 다음자는 각 행의 15자가 아니라 모두 다음 행의 첫 번째 글자가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문장을 읽어 보면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동그라미는 각행의 27자에도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각 행의 28자가 아니라 그 다음 행의 14자가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각 행의 마지막 글자, 즉 41자에도 어김없이 朱圓이 그

20) 다케다 유키오, 위의 논문, 2013, 47~48쪽

21) 백승욱, 2014, 23쪽.

려져 있다. I-1-41자인 駕字에는 朱圓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밑의 종이가 덮여 잘 안 보일뿐이지 자세히 보면 그곳에도 朱圓이 있다. 다른 곳에도 밑의 종이로 인해 朱圓이 덮힌 부분이 있다. 이 점은 성책이 이루어지기 전 朱圓이 그려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주원이 석독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I 면의 각 행 14자의 경우 두 번 표구되지만 27자들은 한 번만 들어간다.²²⁾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는 해정본이 도저히 僞作일 수 없는 확실한 단서가 된다. 해정본의 사료적 가치를 의심할 수 없는 한 증거이다.

朱圓은 능비 각 면 3단 拓本の 마지막 字에 행해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책 시 성책의 순서와 관련하여 성책자가 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원에 대한 비밀이 풀리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해정본은 1면 3단으로 된 탁본을 裝幀한 것이다. 이는 水谷本과 동일하다. 두 拓本을 비교해 보니 단을 이룬 지점도 같았다. 둘째, 성책자는 광개토태왕릉비를 직접 보지 못했음은 물론 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이는 성책 시기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일 수 있다. 셋째, 성책자는 한문에 不通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장을 이해했다면 각 단의 연속이 14행에서 15행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1면 上段에 이어지는 것이 中間 段으로 보고 장정하여 製本하였다. 이는 I 면 상단이 끝나는 부분에 비문 글자보다 작은 크기로 ‘首’ 자가 붙여져 있는데 이 글자는 아마도 上段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復原은 成冊 시 오려 붙였던 부분을 해체하는 방식을 통해 拓本 당시의 상태로 만들어 보았다(【그림 6-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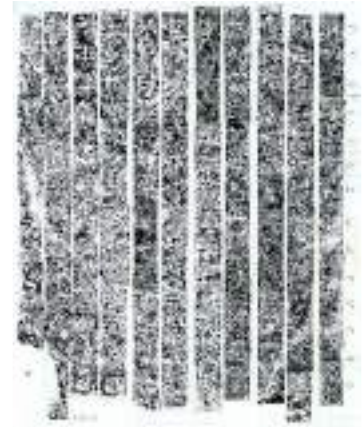
【그림 6】 I 面 上段 復原



【그림 7】 I 面 中段 復原



【그림 8】 I 面 下段 復原



22) 필자는 전고에서 겹침 拓出字 즉 각 행의 14자와 27자에 대하여, 모두 두 번 탁출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대로 성책되어 진 것으로 보았다(백승욱, 2014, 14쪽 우하단 문장). 그런데 이번의 검토에서 14자는 그러하지만 27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류를 訂正한다.

【그림 9】은 복원된 惠靜本의 1면을 水谷本과 비교해 본 것이다. 水谷本 I 面の 復原圖는 既存 武田幸男의 研究 成果를 參照한 것이다.²³⁾ 【그림 10】의 좌측은 惠靜本 I 면과 II 면의 복원도이다. 오른쪽 그림은 복원한 惠靜本을 水谷本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III. 두 탁본의 특징 비교

武田의 유형 구분론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탁본 유사성의 첫 번째 사안은 탁본 각 면의 段 구성과 용지의 총 매수이다. 惠靜本의 복원을 통해서 惠靜本도 水谷本과 같이 각 면 모두 3段 구성으로 이루어진 탁본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6~8】). 그리고 각 단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그림 9】와 아래 【그림 13-②】의 좌측 하단 ‘王’ 부분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외 구체적인 부분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양 탁본 간 유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拓紙의 층수와 紙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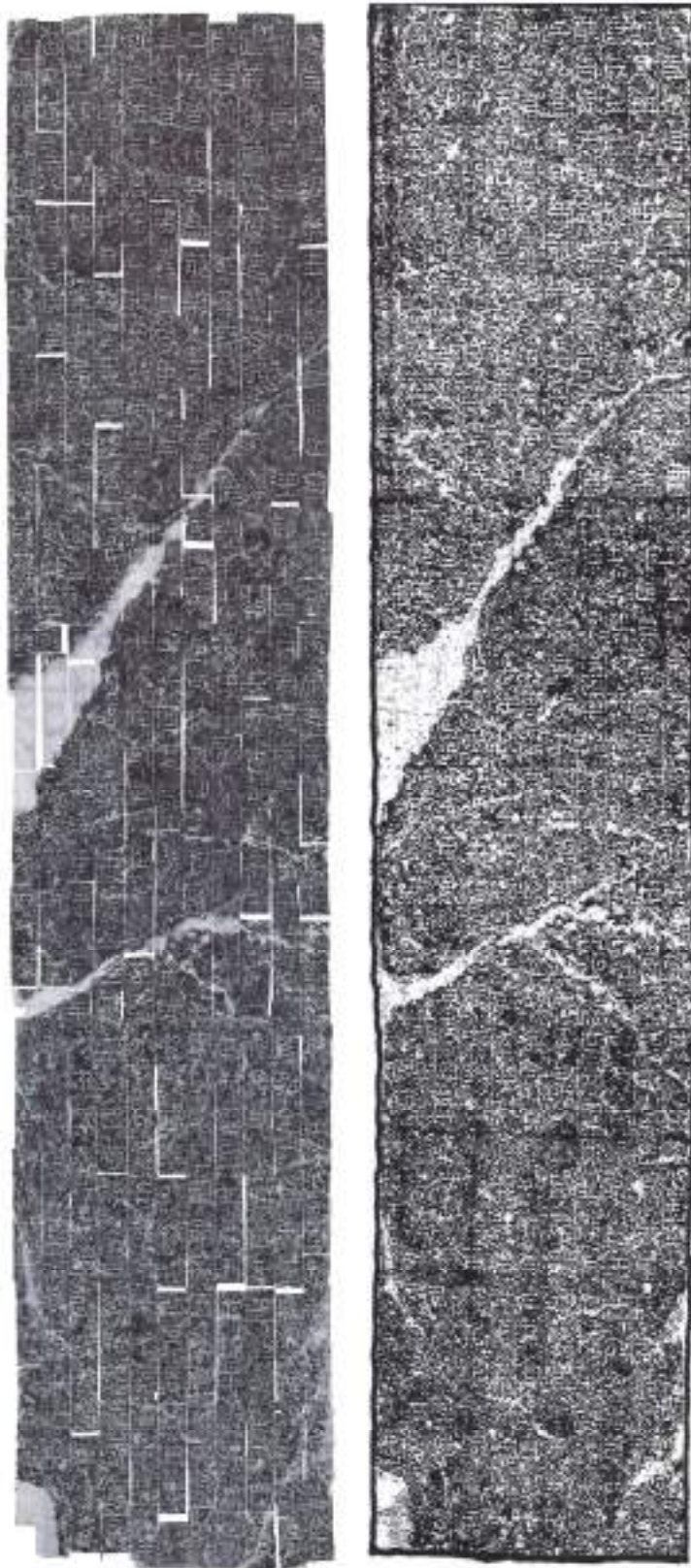
水谷本과 惠靜本 모두 기본적으로 두 겹 탁지(二重紙)이다. 두 탁본의 경우 얇은 종이를 사용하여 탁본을 했다. 2겹으로 한 것은 능비 비면의 상태가 거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얇은 종이의 경우 글자 탁출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유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능비의 상태는 얇은 종이 한 겹으로 拓本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던 것 같다. 이에 택한 방법이 종이를 두 겹으로 하여 탁본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水谷本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3중, 또는 4중으로 된 곳도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2중으로 비면에 종이를 붙였는지, 아니면 한 장을 붙이고 또 한 장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종이의 두께와 탁본의 현존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2중지로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신할 수 없다. 水谷本에서 3~4중지가 보이는 곳은 2중지 위에 필요에 의해 다시 종이를 더 붙인 것으로 보인다. 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있다.²⁴⁾ 이중지 탁본 방법은 탁본 제작자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다. 惠靜本의 경우도 탁지를 두 겹 사용해서 탁출했음을 탁본 곳곳의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23)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166쪽.

24) 향후의 조사에서 3중지인 곳을 체크하여 비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곳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惠靜本(左)과 水谷本(右) 1面 復原圖의 比較



【그림 10】 惠靜本 1, 2면 복원도(左)과 水谷本에 혜정본을 올려놓은 모습(右)



紙質에 대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사진과 실견 때의 느낌만으로 지질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다. 착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지질을 주로 살펴보았다. 오염의 정도로 인해 종이의 색이 동일하지는 않아 비교가 용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거의 유사한 종이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데이터 축적을 통한 과학적 방법을 기대한다. 탁본 가운데 지질이 매우 거친 것을 실견한 적이 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學) 소장본이다. 이는 석회 탁본인데 아마도 碑가 있는 현지인 중국 集安 생산의 종지로 보인다. 그런데 水谷本의 경우는 이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의 양질 종이를 사용했다. 그리고 닥나무의 根皮가 많이

보이는 흔히 朝鮮紙라고 하는 종이와도 차이가 있어 보였다. 탁본의 제작 시기가 최소한 20세기 초 이전임을 고려할 때 당시로서는 매우 고급지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2. 小拓紙의 크기와 이음 맵시

능비는 높이가 6.39m이다. 각 면의 폭은 I면이 1.48m, II면이 1.35m, III면이 2m, IV면이 1.46m에 달한다. 비가 크기 때문에 탁본 제작 시 종이를 이어 붙여 탁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최초 작은 단위의 종이를 小紙 또는 小拓紙라고 한다. 이러한 소탁지의 크기와 소탁지를 이어 붙이는 방식 등을 조사하여 비교해 봄으로서 탁본들 간의 차이점 또는 닮은 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탁본에서 보이는 특징은 바로 탁본 제작자의 습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탁지에 드러나는 특징을 통해서 탁본 간의 유사성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탁본을 만드는 탁공들이 탁본을 만들 때 각자 소탁지의 크기와 이음 맵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탁본 가운데 이러한 소탁지를 조사한 예가 있다. 1981년 가지모토본(梶本本)을 조사한 長正統의 연구와²⁵⁾ 나이토본(内藤本)을 조사한 横山昭一の 연구,²⁶⁾ 足立幸一가 교토(京都)의 福知山 고등학교에 기증한 탁본을 조사한 濱田耕策의 연구,²⁷⁾ 早乙女雅博의 도쿄대학소장본과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소장본에 대한 연구 등이다.²⁸⁾ 그러나 현재까지 원석탁본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행해진 바는 없다.

그런데 소탁지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탁본의 뒷면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탁본을 잘라서 선장본이나 절첩본으로 裝潢한 경우는 이를 살피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全張本이라 하더라도 탁본의 보존을 위해 뒷면에 대해 장황을 한 경우는 소탁지 크기나 이음매를 살피기 어렵다. 다행히 水谷本の 경우 현존 상태가 최초 탁본했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필자는 2019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水谷本の 뒷면을 조사 할 수 있었다.

水谷本の 경우 1면 상단은 가로 $4 + \alpha$ 段, 세로 $3 + \alpha$ 열의 소탁지로 구성되어 있다. α 는 소탁지를 다시 가로 혹은 세로로 잘라서 붙인 것이다. 4단 3열이면 모두 12장의 소탁지가 되어야 하지만 $+\alpha$ 때문에 1면 상단의 경우 모두 19매 정도의 소탁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1단 1열의 소탁지 길이는 가로 47cm였으며, 세로는 45cm였다(이하 가로×세로로 표시함). 2단의 한 소탁지는 46×45.5 cm였다. 이음의 순서는 상 1단 우측 1열부터 좌로 이어 나갔으며, 2단은 다시 우에서 좌로 붙여 나갔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어나간 것이다. 이음매의 겹치는 부분은 2.2cm 정도였다. 소탁지 한 장의 안에는 3×3 字 모두 9자의 글자가 탁출 되었다. 1면 중간 단의 소탁지 크기를 측정해 보았다. 1단 1열과 1단 3열의 소탁지 모두 45×47 로 나타났

25) 長正統, 1981,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拓本の外的研究」『朝鮮學報』99・100輯.

26) 横山昭一, 1990, 「目黒區所藏拓本の採拓年代と外的特徴」『目黒區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寫眞集』, 目黒區守屋教育會館郷土資料室: 1993, 「東京都目黒區所藏拓本について」『廣開土王碑と古代 日本』, 東京: 學生社.

27) 濱田耕策, 1990, 앞의 논문.

28) 早乙女雅博, 2005, 「東京大學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小拓紙からみた制作年代の考察-」『고구려연구』21. 早乙女雅博・橋本繁, 2013, 「お茶の水女子大學本の調査と小拓紙貼り合わせから見た年代」『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東京: 同成社. 현재 일본학계에서는 ‘資料論’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방법에 의한 탁본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 1면 하단의 경우, 46×45, 혹은 47×46로 나타났다. 2면의 경우 가로는 47~48, 세로는 45~47이 많았다. 3면과 4면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크기였다. 특히 3면과 4면의 소탁지 크기가 비교적 일정하여 그를 기준으로 水谷本の 소탁지 크기를 추정해 보면 47×47의 길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해정본은 全張의 탁본을 잘라서 만든 선장본이어서 소탁지의 상태를 알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拓本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탁지의 이음매를 관찰 할 수 있다. 이를 추적해 보았다. 소탁지의 가로 크기는 알기 어려우나, 세로는 45~47cm 정도였다. 다만 傳斯年圖書館 소장 傳斯年 乙本の 세로 크기는 50cm 전후였으며, 북경대학도서관 C본은 45cm라고 한다. 소탁지의 세로 크기로 보면 水谷本과 해정본은 거의 같은 크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착묵 상태와 먹의 농도

해정본 복원도와 水谷本을 비교한 사진이 【그림 9】이다. 1면 중간 부분의 미착묵 부분이 해정본이 약간 좁아 보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이다. 1면에서 미착묵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비해 보면 거의 같은 양상이다. 특히 하단부 좌측 부분(10~11행의 40~41자 부분)의 미착묵 부분은 그 형태가 거의 같다(【그림 9】 참조). 중간 단의 좌하부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간 부분과 그 중간부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미착묵 부분도 매우 닮아 있다. 상단 부분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간 미착묵 부분도 닮았다. 특히 1행 10자인 ‘基’을 둘러싼 아래 위의 얇은 미착묵 부분도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탁출자가 작업을 할 때 비문 내용과 글자 개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같은 글자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모습이 탁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동일한 곳에 대한 탁출의 모습이 유사하다면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인물이 작업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해정본과 水谷本 제작자는 비문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을까? 주지하다시피 능비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탁본 제작자는 탁공에 불과했다. 비문의 내용을 알고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해정본의 경우 탁출자와 裝潢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책을 만든 사람은 비문의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²⁹⁾ 그런데도 그는 책을 만들 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성책을 했다. 오히려 겹치는 글자까지 충실히 오려 붙였음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다. 장인 정신이 충실히 발휘된 모습이다. 탁본 제작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비문의 내용은 차치하고 그가 가진 솜씨를 발휘하여 열심히 탁본을 만들었을 것이다. 전문가의 솜씨는 결과물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법이다. 해정본과 水谷本은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확인된다. 두 탁본은 같은 솜씨를 가진 사람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탁본을 언뜻 보면 동일한 사람이 제작한 탁본으로 보기 어려운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양 탁본이 가진 번짐의 정도 차이 때문이다. 탁본을 자세히 관찰하면 水谷本

29) 백승옥, 2014, 15쪽.

의 경우 번짐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혜정본에 비해 심하다. 이는 먹의 농도 차이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탁본의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 인상으로 보면 두 탁본은 성격이 전혀 다른 탁본으로 보이는 것이다. 혜정본은 水谷本에 비해 濃墨이다. 그리고 번짐의 정도가 적다. 따라서 글자의 선명도는 혜정본이 양호하다. 그러나 이 차이를 가지고 혜정본이 水谷本 보다 우월한 탁본으로 볼 수는 없다. 淡墨인 水谷本이 가진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획의 섬세한 부분을 보여주기에는 담묵인 水谷本이 혜정본 보다 양호하다. 만약 양 탁본이 동일시기 동일인이 제작한 탁본이라면 이러한 차이는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명확한 글자를 탁출해 내기 위해서는 비면의 상태에 따라 먹의 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濃淡 모두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水谷本은 淡墨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번짐의 정도가 혜정본 보다 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水谷本과 혜정본은 전면적으로 볼 때 농담의 정도가 거의 일정하다. 이로 보아 두 탁본의 제작자는 탁본의 高手로 보인다.

4. 字體 비교

두 탁본의 비교는 탁출된 문자들을 비교해 봄으로써도 양 탁본간의 관계를 추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능비 탁본의 경우 문자 주변의 탁출 상황도 많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혜정본의 경우 잘라서 장황을 한 상태여서 글자의 주변부에 관한 관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혜정본과 水谷本의 첫머리 부분과 ‘國(四+止)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부분의 字體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그림 13-①과 ②】). 그리고 이른바 ‘任那日本府說’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신묘년조 기사 속의 1-9-13字에 대해서도 기타 다른 원석탁본들과 같이 비교해 보고자 한다(【그림 14】). 마지막으로 석회탁본에서 변개된 대표적 글자 몇 자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그림 15】).

【그림 13】의 ①과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水谷本과 혜정본은 거의 동일 탁본처럼 보인다. 글자 부분의 탁출 뿐만 아니라 글자 획이 아닌 곳에 대한 탁출 부분도 닮아 있다. 【그림 13】-②의 왼쪽 하단의 ‘王’(1-4-41)자의 좌하단 부분 흰 점은 글자의 획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탁본에는 동일 지점에 동일 크기로 탁출 되어 있다. 1-1-26-27자인 ‘割卵’의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割’의 오른쪽 바깥 부분에는 아래위로 두 개의 흰 점이 양 탁본에 동일하게 보인다. ‘卵’의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1-9-13字는 석회 탁본에는 ‘海’로 명확히 보이는 글자이다. 그러나 원석탁본에는 식독하기 어려운 글자이다. 혜정본과 水谷本도 모두 읽기 어려운 글자로 탁출되어 있다. 다만 水谷本 보다 혜정본이 좀 더 선명해 보인다. 필자는 이를 ‘泔’으로 읽은 바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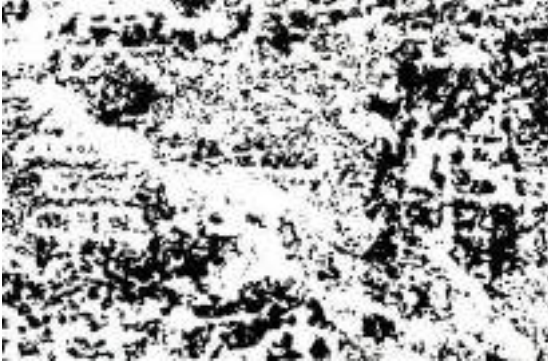
1-3-27자는 원석탁본에는 ‘天’으로 식독되는 글자이다. 석회탁본 제작과정에서 ‘因’으로 變改되었다. 대부분의 石灰拓本에서 ‘因’으로 보인다. 【그림 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앙

30) 백승옥, 2015, 「廣開土太王陵碑文 辛卯年條에 대한 新解釋」『東洋學』5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박물관 선장본에서도 ‘因’으로 되어 있다. 혜정본을 비롯해 청명본과 金子本에는 因으로 변하기 전의 모습이 남아 있다. I-3-41자는 원래 ‘履’ 자이나, 석회 도포로 인해 ‘黃’으로 변해진 글자이다. 혜정본, 청명본, 金子本에서는 ‘履’의 모습이 남아 있으나 석회 탁본인 중앙박물관 선장본에서는 서서히 ‘黃’으로 변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II-8-36자는 원래 ‘軍’이지만 석회 탁본에서는 ‘兵’으로 변개되어 나타난다(이상 【그림 15】 참조).

【그림 13-①】 혜정본과 水谷本の 字體 비교					
水谷本	혜정본	水谷本	혜정본	水谷本	혜정본
					
					
I-4-29~34(孫國 _三 +止上廣開)		I-1-14~19(北夫餘天帝之)		I-1-1~6(惟昔始祖鄒牟)	

【그림 13-②】혜정본과 水谷本の 字體 비교					
水谷本	혜정본	水谷本	혜정본	水谷本	혜정본
					
					
					
I - 4-35~41(土境平安好太王)		I - 1-20~27(子母河伯女郎剖卵)		I - 1-7~13(王之創基也出自)	

【그림 14】 원석탁본에 보이는 I-9-13字와 그 주변 글자들의 모습	
 〈탁본 1〉 부사년 갑본	 〈탁본 2〉 북경대 A본
 〈탁본 3〉 혜정본	 〈탁본 4〉 水谷本
 〈탁본 5〉 북경대 B본	 〈탁본 6〉 북경대 D본

【그림 15】 석회 탁본에서 변개된 글자 비교					
I -3-27(天)					
I -3-41(履)					
II -8-36(軍)					
	靑溟本	金子本	水谷本	惠靜本	中博 선장본

IV. 맺음말

이상 惠靜本과 水谷本 두 탁본을 비교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정본 복원의 결과 한 면 3단으로 모두 12장으로 구성된 탁본이란 점이다. I 면 上段의 경우, 1자부터 14자까지 이르는 범위에 대해 먼저 탁출하였다. 중단은 14자를 겹쳐 탁출하고 27자까지 이른다. 하단은 27자부터 41자에 이르는 부분을 탁출하였다. 2면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탁출하였다. 이렇게 한 면을 3단으로 나누어 탁출한 방식은 水谷本과 같은 방식이었다.

해정본과 水谷本을 비교해 보았을 때, ①初期原石拓本이라는 점, ②한 면 3단 탁출 방식이라는 점, ③ 着墨의 패턴과 개별 글자들의 탁출 상태가 유사한 점, ④탁지의 층수가 2층이라는 점 ⑤ 紙質이 유사한 점 ⑥소탁지의 세로 크기가 47cm로 같다는 점 등에서 두 拓本은 동일시기, 동일인에 의해 拓出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와 검토를 행한다면 탁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武田幸男의 원석탁본 분류에 의하면 水谷本은 A4 유형에 속한다.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해정본과 水谷本은 동일 유형의 탁본이다. 그렇다면 두 탁본 모두 武田의 A4형 탁본으로 볼 수 있다.

武田은 A4 유형의 경우 李雲從이라는 탁공에 의해 제작된 탁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청명본 발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당시 북경에서 파견된 이운종은 청명본을 제작한 인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혜정본과 水谷本, 청명본은 동일 인물, 즉 이운종에 의해 제작된 탁본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필자도 이미 추정할 바가 있었다. 이번의 검토는 이러한 추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명본에 대해서는 그 복원도가 만들어진 예가 없다. 향후 조사를 통해 청명본도 다른 원석탁본들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저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廣開土太王陵碑 拓本- 張明善 탁출』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廣開土太王陵碑 拓本圖錄(國內所藏)』
古瀬奈津子 編, 2013,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東京: 同成社.
吉村武彦 외 3인, 2019, 『明治大學圖書館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 東京: 八木書店.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 『혜정 소장본 廣開土太王碑 원석탁본』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陵碑原石拓本集成』,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 東京堂出版.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省: 吉林人民出版社(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서울: 역민사).
李成市, 2018, 『鬭爭の場としての古代史』, 東京: 岩波書店.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李基東 譯, 1982, 『廣開土王陵碑의 探求』, 서울: 一潮閣).
李進熙, 2003, 『好太王碑研究とその後』, 東京: 青丘文化社.
林基中, 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 出版部.
任世權 李宇泰 編著, 2002 『韓國金石文集成(1)』(韓國國學振興院, 안동)
佐伯有清, 1974, 『研究史 廣開土王碑』, 東京: 吉川弘文館.

2. 논문

- 耿黎, 2016, 「好太王碑拓本分類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稻田奈津子, 2013, 「金光圖書館所藏“初拓好太王碑”と“水谷旧藏精拓本”」,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東京: 同成社.
武田幸男, 2013, 「“石灰拓本”着墨パターン法と“お茶の水女子大學本”」,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東京: 同成社.
다케다 유키오, 2013,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문제」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백승욱, 2009, 「史料로서의 墨本을 통해서 본 광개토왕비 연구의 새 지평 - ‘武田幸男 著,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2009)’ 에 대한 서평」, 『지역과 역사』 25, 부경역사연구소.
백승욱, 2011, 「廣開土太王陵碑 拓本の 編年方法 -연구현황을 中心으로-」 『木簡과文字』 제8호, 한국목간학회.
백승욱, 2014, 「廣開土太王陵碑 拓本 惠靜本の 외형적 특징과 복원」 『혜정 소장본 廣開土太王碑 원석탁본』, 동북아역사재단.
濱田耕策, 1990, 「故足立幸一氏寄贈の京都府立福知山高校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について」, 『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朝鮮の研究』,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 NO.24.
濱田耕策, 2010,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所藏の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の資料的意義」, 『知識は東アジアの海を渡った學習院大學コレクションの世界』,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編.
徐建新, 2013, 「好太王碑拓本の編年方法とお茶の水女子大學本の制作年代」,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東京: 同成社.
徐建新, 2019, 「東アジア學界の廣開土王碑研究史」, 『明治大學圖書館 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 東

京: 八木書店.

서영수, 2012, 「廣開土太王陵碑 原石精榻本 「해정소장본」 공개의 의의와 그 성격」『광개토태왕릉비 원석정답본 공개와 박물관학적 활용방안 -해정소장본 최초공개-』, (사)한국박물관학회, 경희대학교해정박물관 주관 광개토태왕 서거 1600주년 기념 제27회 박물관학 학술대회 자료집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書品』100号; 1977, 『好太王碑考』, 東京: 開明書院.

이정빈, 2015, 「광개토왕릉비 탁본 연구방법의 성과와 과제」『동북아역사논총』49, 동북아역사재단.

長正統, 1981,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拓本の外的研究」『朝鮮學報』99・100輯.

早乙女雅博, 2005, 「東京大學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小拓紙からみた制作年代の考察-」『고구려연구』21.

早乙女雅博・橋本繁, 2013, 「お茶の水女子大學本の調査と小拓紙貼り 合わせから見た年代」『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東京: 同成社.

橫山昭一, 1990, 「目黒區所藏拓本の採拓年代と外的特徴」『目黒區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寫眞集』, 目黒區守屋教育會館郷土資料室.

橫山昭一, 1993, 「東京都目黒區所藏拓本について」『廣開土王碑と古代 日本』, 東京: 學生社.

「廣開土太王陵碑」 탁본 『惠靜本』의 탁본사적 위치

- 『水谷本』과의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토론문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2012년 12월, 광개토대왕비 원석탁본인 『惠靜本』이 세상에 알려지고 어느새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당시 탁본 공개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하고 또한 자료집 제작의 연구책임자였던 저로서는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자료를 다시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발표문을 읽고 제가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5쪽, 주 22)에서 “필자는 전고에서 겹침 拓出字 즉 각 행의 14자와 27자에 대하여, 모두 두 번 탁출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대로 성책되어 진 것으로 보았다(백승옥, 2014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혜정본의 외형적 특징과 복원」 『혜정 소장본 廣開土太王碑 원석탁본』, 동북아역사재단, 14쪽 우하단 문장). 그런데 이번이 검토에서 14자는 그러하지만 27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류를 訂正한다.” 고 하였다.

혜정본의 전첩 상태를 살펴보면, 1면 상단 탁지(東一)에는 각 행 13자까지 온전하게 탁출되고 14자는 하부가 잘린 상태이다. 1면 중단 탁지(東二)에는 14자부터 27자까지 온전하게 채탁되었고, 8행~11행의 28자인 ‘土’, ‘丙’, ‘弥’, ‘△’ 자에서만 하부가 잘린 상태로 탁출되었다. 1면 하단 탁지(東三)에는 각 행 28자부터 41자까지 온전하게 탁출되었다. 2면 상단 탁지(南一)에는 각 행 13자까지 온전하고 14자의 하부가 잘린 상태이고, 중단 탁지(南二)에는 14자부터 27자까지 글자가 온전하게 채탁되었으며, 하단 탁지(南三)에는 각 행 28자부터 41자까지 온전하게 탁출되었다. 따라서 탁공은 처음부터 각 면 상단 1~13자, 중단 14~27자, 하단 28~41자가 탁출될 수 있도록 의도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성책자는 비문의 탁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복된 글자까지 모든 글자를 순서에 따라 오려 붙임으로서 비문의 교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오류를 정정하신다면 27번째 글자가 두 번 탁출이 아니라는 점은 물론 1면 8~11행의 28자들이 중복되어 성책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언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중복된 글자는 제1면에서 각 행의 제14자 즉 ‘北’, ‘臨’, ‘本’, ‘興’, ‘亏’, ‘月’, ‘(祠)’, ‘道’, ‘破’, ‘城’, ‘耶’ 자와 제8~11행 제28자에서 ‘土’, ‘丙’, ‘弥’, ‘△’ 이다. 제2면에서는 1~9행 제14자 ‘加’, ‘城’, ‘△’, ‘男’, ‘十’, ‘太’, ‘云’, ‘貴’, ‘任’ 자로서 모두 24자 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혜정본에 대해 “1면 上段의 경우, 1자부터 14자까지 이르는 범위에 대해 먼저 탁출하였다. 중단은 14자를 겹쳐 탁출하고 27자까지 이른다. 하단은 27자부터 41자에 이르는 부분을 탁출하였다. 2면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탁출하였다.” 고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하단

을 “27자부터” 탁출하였다고 한 것은 오류라고 하였던 부분이 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2. <표2>의 ‘용지’는 ‘소탁지’와 구분되는 개념인지요. 6쪽에서 “수곡본과 혜정본은 모두 기본적으로 두 겹 탁지(二重紙)···수곡본의 경우 3중, 또는 4중으로 된 곳도 있다.”고 하였는데, ‘매수’, ‘층수’와 ‘겹’, ‘~중지(重紙)’ 등 다소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3. 탁지를 만들 때 선지를 겹쳐 붙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겹쳐 붙인 선지는 미리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비면의 상황에 따라 겹쳐 붙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9쪽에서 혜정본에 비해 먹 번짐 현상이 있는 수곡본을 담묵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비면의 상태에 따라 먹의 농도를 조절하여 필요에 따라 ‘농묵’, ‘담묵’의 효과를 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탁본에서 먹 번짐과 담묵의 효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탁본에 사용되는 먹의 농도는 번짐이 없어야 합니다. 먹이 번졌다는 것은 농도가 부족한 것으로 탁본의 농담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혜정본과 수곡본을 비교했을 때 혜정본의 먹색이 고르고 진하게 착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혜정본 제작 시 탁공의 먹 방망이질이 상대적으로 더 정교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입니다.

「集安高句麗碑」의 建立 목적과 守墓制

안정준 (서울시립대학교)

1. 머리말
2.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내용 구성
 - 1) 집안비의 내용 구성
 - 2) 立碑 시기와 비의 성격
3. 수묘제의 운영 방식과 ‘墓上立碑’의 목적
 - 1) 고구려 수묘제의 기본 형태
 - 2) 집안비의 건립 목적
4. 맺음말

1. 머리말

2013년 1월에 「집안고구려비」(이하 집안비)의 발견 소식이 『中國文物報』를 통해 전해진 이후 탁본의 입수를 통한 판독회가 열렸고, 이후에 여러 ‘특집’을 통해 많은 연구논문들이 나왔다. 최초에는 「광개토왕릉비」문(이하 능비문)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했던 수묘제 연구의 진전뿐만 아니라, 4~5세기 고구려사 전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비문에 기록된 수묘제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부터 많은 논란이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제도의 운영 방식과 석비의 효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들도 적지 않다. 이는 집안비의 한정된 내용과 더불어 불확실한 판독안도 한 원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애초에 능비문의 수묘제 내용에 대한 중론이 모아져 있지 않던 상황에서 불완전한 집안비의 내용을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수묘제의 실상을 복원한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연구는 집안비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개토왕대와 장수왕대의 수묘제 형태와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추론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하여 이 주제에 새롭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수묘제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능비와 집안비를 함께 묶어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접근 방법이다. 다만 두 비는 각각 세워진 시기와 건립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비의 내용 구성 방식을 단순히 비교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술상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왕릉의 수묘는 고대부터 동아시아의 역대 왕조들에서 국가적인 관심 속에 행해져왔으며, 특히 漢代 이래로 陵邑·園邑의 조성을 통한 고분 관리 형태는 후대의 한족왕조뿐만 아니라 화북의 5胡 왕조들에도 계승되었다. 고구려의 수묘제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수묘제가 갖는 보편적 성격과 제도적 틀 속에서 기본적인 운영을 검토하는 접근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¹⁾ 최근 집안비가 나온 이후에 중국 고대의 守陵 제도와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면서,²⁾ 고구려의 수묘 관련 법령 문제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었으나, 정작 고구려의 수묘제 운영과 역의 관리·운영을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화북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고구려가 수묘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정비했는지에 대해 이러한 ‘보편적인’ 제도의 틀 속에서 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는 수묘인연호가 기재된 石碑를 실효성 있는 근거로 삼아 장기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다수였다. 다만 그 불변의 고정적인 내용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제도를 운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석비 문서의 효용과 관련해 고구려의 정치·제도와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신라에서 6세기에 제작된 여러 석비의 사례를 참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광개토왕대의 ‘묘상입비’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점들을 염두하는 가운데, 2장에서는 집안비의 내용 구성과 건립시기·비의 성격 문제를, 그리고 3장에서는 수묘인연호의 관리 방식과 더불어 석비에 연호를 새겨서 공시한 실질적인 목적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내용 구성

1) 집안비의 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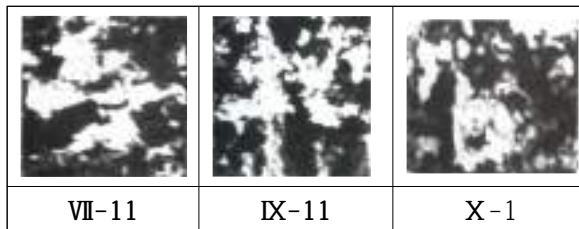
지금까지 「집안고구려비」에 대한 판독회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필자는 『한국고대사연구』 70(2013. 6)에서 제시된 탁본과 더불어, 張福有 編著, 2013, 『集安麻線高句麗碑』(文物出版社)의 탁본사진을 참조하여 개인적으로 판독을 시도해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기존 판독안의 글자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 권정, 2002, 「한·중일 비교를 통해 본 고대 수묘인의 성격」, 『日語日文學研究』 42, 199~210쪽 ; 김락기, 2006, 「高句麗 守墓人의 구분과 立役方式」, 『한국고대사연구』 41, 201~203쪽.

2) 尹在碩, 2013, 「中國古代의 守墓制度」, 『東洋史學研究』 124 ; 김택민, 2013, 「중국 고대 守陵 제도와 율령」, 『史叢』 78.

** 음영 표시는 명확하지 않은 글자들을 표시.

X	IX	VIII	VII	VI	V	IV	III	II	I	
☐	守	☐	☐	☐	☐	☐	☐	☐	☐	1
☐	墓	☐	☐	☐	☐	☐	☐	☐	☐	2
若	之	☐	☐	☐	☐	☐	☐	☐	☐	3
違	民	上	好	☐	☐	☐	☐	子	☐	4
令	不	立	☐	☐	☐	烟	各	河	世	5
者	得	碑	☐	國	王	戶	家	伯	必	6
後	擅	銘	王	追	國	☐	烟	之	授	7
世	買	其	曰	述	岡	劣	戶	孫	天	8
☐	更	烟	自	先	上	☐	以	神	道	9
嗣	相	戶	戊	聖	太	☐	☐	靈	自	10
☐	擅	頭	子	功	王	富	河	祐	承	11
☐	賣	廿	定	勳	☐	☐	流	護	元	12
看	雖	人	律	弥	平	☐	四	蔽	王	13
其	富	名	教	高	☐	轉	時	蔭	始	14
碑	足	以	內	然	太	賣	祭	開	祖	15
文	之	示	發	烈	王	☐	祀	國	鄒	16
与	者	後	令	繼	神	☐	然	辟	牟	17
其	亦	世	更	古	亡	守	而	土	王	18
罪	不	自	脩	人	☐	墓	世	繼	之	19
過	得	今	復	之	興	者	悠	胤	創	20
	其	以	各	慷	東	以	長	相	基	21
	買	後	於	慨	西	銘	烟	承	也	22



※ 판독 사진은 張福有 編著, 『集安麻線高句麗碑』, 文物出版社, 2014를 참고.

다만 위의 판독안에서 몇 가지 보완설명을 하자면, 우선 VII-11은 기존에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午’ 보다는 아래 획이 좌측으로 구부러진 ‘子’ 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주로 ‘轉’ 으로 판독해왔던 IX-11은 왼쪽에 手변이 뚜렷해 보이므로 擅으로 판독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X-1은 그동안 주로 ‘賣’ 로 판독해왔다. 이는 아마도 앞의 ‘買’ 자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부에 一 혹은 ㄴ부 형태가 보이며, 광개토왕릉비에서도 富足之者는 ‘亦不得擅買’ 라고 했을뿐이므로 이를 ‘賣’ 로 단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외형상 ‘官’ 자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탁본들을 더 참고하기 전에는 미상자로 두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하의 논의는 위의 판독안을 근거로 진행하겠다.

일단 「집안고구려비」(이하 집안비)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수묘제의 전개양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며, 「광개토왕릉비문」(이하 능비문)의 수묘인연호조에 언급된 매매금지령과 같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도 보인다. 우선 집안비의 성격 및 내용 구성과 관련해 도입부인 I·II행 내용을 살펴보자.

I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 始祖鄒牟王之創基也

II 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繼胤相承

I 행의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 始祖鄒牟王之創基也”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始祖鄒牟王之創基也’ 이하 글씨가 능비문의 도입부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앞의 ‘必授天道 自承元王’은 이전의 사료에는 보이지 않았던 고구려 건국설화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견해가 다수였다.³⁾

위 견해에 따르면 우선 ‘天道’라는 표현은 유교적 표현으로서 ‘必授天道’는 곧 天命을 받아 다스리는 王道정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문구로 해석된다.⁴⁾ 또한 ‘元王’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이어 등장하는 시조 추모왕과 동일시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가운데, 始祖母(=夫餘神) 혹은 북부여건국자(解慕漱)를 가리킨다고 보거나,⁵⁾ 왕실의 조상신으로 보는 설,⁶⁾ 부여계 세력의 원조로 숭배되는 東明으로 보는 설,⁷⁾ 혹은 앞의 天道와 마찬가지로 漢代 董仲舒의 王權神授說을 표현하기 위한 ‘天帝’의 개념으로 추정하는 설도 있었다.⁸⁾

일단 집안비의 ‘始祖鄒牟王之創基也’ 이하 문구가 능비문에 보이는 건국설화와 비슷한 내용임은 분명하다. 다만 그 앞부분인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도 건국설화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능비문과 집안비의 도입부가 동일하게 건국설화의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현재까지 고구려에서 제작된 석비 가운데 첫머리 문장이 확인되는 것이 능비뿐인 상황에서, 이를 다양한 목적으로 세워졌을 모든 비의 내용구성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始祖 鄒牟王’의 앞에 등장하는 존재인 元王은 ‘王’으로 칭해진 만큼 人格的 존재를 상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4~5세기 고구려에서 확립된 건국설화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존재를 추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명확히 ‘始祖’라고 언급된 鄒牟王의 앞에 또 다시 그 기원이 되는 人格神의 존재가 등장했다는 것은 문맥상 어색한 점이 있다. 그 외에도 맨

3) 조우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0, 164~170쪽 ; 여호규,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0, 84~89쪽

4) 조우연, 2013, 앞의 논문, 164~166쪽 ;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87~88쪽.

5) 조우연, 2013, 앞의 논문, 168~169쪽.

6) 권인한, 2016, 「集安高句麗碑文의 판독과 해석」, 『목간과 문자』 16, 295쪽.

7) 장병진, 2016, 「고구려 출자 의식의 변화와 「集安高句麗碑」의 건국설화」, 『인문과학』 106, 231~232쪽.

8)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87~88쪽 ; 강진원, 2015, 「高句麗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50~51쪽 ; 여호규, 2016, 「韓中日 3國 學界의 集安高句麗碑 研究動向과 課題」, 『동방학지』 177, 154~155쪽.

앞의 ‘世’ 역시 건국설화의 도입부로서 ‘惟剖卵降世’ 등으로 추정하기도 했는데,⁹⁾ 추모왕이 알을 깨고 나온 행위가 첫머리부터 전개되는 것은 부(天帝)모(河伯女郎)의 존재가 앞에 등장하는 능비문의 건국설화 내용과 비교할 때 다소 어색한 점이 있다.

I 행의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 문구 해석과 관련해서 일단 집안비와 능비의 건립 배경이 갖는 차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능비는 父王인 광개토왕의 행적을 추모하고 현창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 비문에서는 立碑 주체인 장수왕의 호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죽은 父王을 중심에 두고 화자의 존재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집안비는 능비와 달리 수묘제에 대한 법령을 제시하거나 혹은 수묘인연호의 목록을 기재하여 공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여기서는 오히려 立碑나 敎令의 주체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석비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왕의 敎令이나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를 기재한 고구려의 석비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건국 이후 고구려의 정치제도와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신라에서 6세기에 제작된 여러 석비의 내용이 참고가 된다. 이 가운데는 새로 정복한 지역 주민들을 敎化하는 목적으로 세웠거나, 혹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신라 중앙에서 내린 판결이나 새로운 법령 내지는 敎令을 공표하는 목적, 혹은 築城築堤 등의 공사에 동원된 주민이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할당한 임무와 책임 문제를 공시하는 목적 등으로 세운 다양한 비들이 발견된다.

○ 5~6세기 신라에서 제작된 石碑의 冒頭 내용

碑名	冒頭의 내용
포항 중성리비	“辛巳  中折盧  …  喙部習智阿干支 沙喙斯德智阿干支敎”
울진 봉평신라비	“甲辰年五月十五日喙部牟郎智寐錦王沙喙部斯夫智葛文王…等 所敎事
포항 냉수리비	“斯羅喙夫智王乃智王此二王敎用(중략)敎耳 癸未年九月廿五日沙喙至都盧葛文王(중략)此七王等共論敎用前世二王敎”
창녕 진흥왕탁경비	“辛巳年二月一日立 寡人幼年”
북한산 진흥왕순수비	“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  之時記”
황초령 진흥왕순수비	“  八月十一癸未眞興太王  管境刊石銘記也”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太昌元年歲次戊子  十一月十一日  興太王巡狩  刊石銘記也”
단양 적성비	“  月中王敎事”
영천 청제비	“丙辰年二月八日”
경주 명활산성비	“辛未年十一月中作城也”
대구 무술오작비 ¹⁰⁾	“戊戌年十一月朔十四日另冬里村高  塢作記之”
경주 남산신성비	“辛亥年二月廿六日南山新城作節如法以作後三年崩破者罪敎事爲聞敎令誓事之”

9)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88쪽 註95 ;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한국고대사연구』 72, 89쪽의 註12.

10) 「무술오작비」의 경우 ‘都唯那’라는 僧職을 가진 승려가 책임자로 나와있으나, 塢를 축조하기 위해 지방민을 동원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역역 동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석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석의 첫머리에 공통적으로 비를 세운 시기, 혹은 立碑(敎令)의 주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언제 公表한 내용인지, 혹은 話者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인지를 밝혀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령, 혹은 敎令 등 주지시켜야 할 내용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의 집안비는 「牟頭婁墓誌」나 능비와는 달리 그 건립 목적이 수묘제에 대해 국왕이 정한 法令을 공표하거나, 혹은 敎令에 의거해 수묘인연호의 목록을 銘記하여 공시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로서는 집안비의 비문 상단에 별도의 題額이나 제기가 있었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I 행의 도입부인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은 건국설화의 일부가 아니라, 비문의 도입부에서 立碑 주체(혹은 시기)를 드러냄으로써 왕명에 의거한 告示임을 드러냈던 문구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I 행 첫머리의 ‘世’는 석비를 세운 주체가 왕위를 계승한 행위(世)나 혹은 그의 재위기(之世)임을 언급했을 것이다. 또한 뒤이은 ‘必授天道 自承元王’이라는 표현은 앞에 언급된 국왕의 존재를 推仰하는 내용의 어구가 아닐까 한다. 즉 ‘元王’의 경우 보통명사로서 ‘大王’ 즉 국왕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 사례가 있으며,¹¹⁾ 前代의 王을 가리키는 의미일 수도 있다.¹²⁾ 그렇다면 위 문구는 ‘필연적으로 天道를 받으셨고, 저절로 元王을 승계하셨다’라고 하여 앞에 등장한 국왕 재위의 정당성, 혹은 그 정통성을 언급한 문구로 풀이할 수 있다.¹³⁾

한편 ‘世’에 들어갈 국왕이 누구인지가 문제인데, 후술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집안비가 광개토왕대에 건립되었고 앞면에는 그의 敎令을 전달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광개토왕의 생시 호칭인 ‘永樂太王世’로 표현하였거나, 혹은 막연히 현재 국왕의 치세기임을 의미하는 ‘惟太王之世’·‘聖太王之世’ 등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한다.¹⁴⁾

그리고 I 행의 ‘始祖鄒牟王’으로부터 이하 내용은 시조 추모왕께서(日月의) 아들이자 河伯의 자손으로서의 신령의 보호와 도움으로 나라를 창업하셨고, 諸王들이 왕위를 이어갔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이미 지적된 것처럼 天孫인 고구려 왕가의 재위가 갖는 정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뒤이어지는 수묘제 시행의 명분을 제시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III 各家烟戶以河流四時祭祀然而世悠長烟

11) “射其元王 中厥目”(『春秋左傳』成公16年)

12) 광개토왕의 父王인 고국양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梁志龍, 2013, 「集安麻线高句麗碑試讀」, 『東北史地』 2013-6, 22쪽).

13) 집안비 I 행 마지막의 ‘也’를 종결사로 보아 첫머리부터 ‘也’까지 이어지는 문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집안비의 문장에는 말미의 매매금지령을 비롯해 명확하게 문장이 종결되는 곳에서도 굳이 종결사를 사용한 곳은 보이지 않는다. ‘始祖鄒牟王之創基也’의 也는 능비문의 동일한 문장처럼 시조의 創業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감탄 내지는 문장을 한 호흡 쉬어가는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14) ‘惟太王之世’로 보거나(耿鐵華, 2013, 「新發見的集安高句麗碑初步研究」, 『사회과학전선』 2013-5, 11쪽), 「모두루묘지」 11행에 보이는 표현인 ‘聖太王之世’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었다(조우연, 2013, 앞의 논문, 162쪽).

- IV 烟戶劣富轉賣守墓者以銘
 V 王國岡上太王平太王神亡興東西
 VI 國追述先聖功勳弥高烈繼古人之慷慨
 VII 好王曰自戊子定律教內發令更脩復各於
 VIII 上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以示後世自今以後

한편 V행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다. 여기에는 ‘王’·‘國岡上太王’·‘平太王’의 3왕이 나열되어 있다. 이 가운데 ‘國岡上太王’은 「모두루묘지」에서 ‘岡上聖太王’ 등으로 지칭된 고국원왕으로 볼 수 있다.¹⁵⁾ 전후의 두 왕이 누구인지는 다소 불명확한데, 앞을 미천왕, 뒤를 소수림왕(혹은 고국양왕·광개토왕)으로 보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¹⁶⁾ 이와 관련해 VII행에 ‘好王’이라는 왕호가 보인다.¹⁷⁾ ‘好王’은 戊子(年)의 定律로 教內發令하여 원상대로 수리[脩(修)復]한 주체로 볼 수 있다. 또한 뒤에는 이어지는 ‘上立碑 銘其烟戶頭廿人名’ 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묘) 근처에 비를 세우고 그 烟戶頭 20인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VIII행의 1~3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일단 (묘) 근처에 비를 세우고 烟戶頭를 銘記한 주체 역시 앞에 언급된 ‘好王’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위의 ‘上立碑 銘其煙戶頭’ 조치는 능비문의 ‘墓上立碑 銘其烟戶’와 동일한 조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¹⁸⁾ VII행에서 보이는 ‘好王’은 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 즉 광개토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V행의 ‘王’·‘國岡上太王’·‘平太王’은 그 이전의 왕들을 가리킨다고 봐야할 것인데, 이에 3왕을 미천왕·고국원왕·소수림왕(혹은 고국양왕)으로 비정해볼 수 있다.¹⁹⁾

한편 앞부분인 III행에는 ‘各家烟戶 以河流 四時祭祀’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수묘인연합의 징발과 이들을 통해 왕릉 제사를 지내는 등 수묘제가 이행되어 왔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역접 접속사인 ‘然而’로 이어지는 내용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世悠) 발생한 수묘제 운영상의 어떤 문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²⁰⁾ 이에 대해 IV행의 ‘富轉賣’라는 표현

15) 林滙, 2013, 「集安麻線高句麗碑小識」, 『東北史地』 2013-3, 15쪽 ; 공석구, 2013, 「『集安高句麗碑』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考察」, 『고구려발해연구』 45, 37~42쪽 ;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80쪽.

16)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 연구자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며, 국내에서도 집안비의 건립을 광개토왕대로 보는지 혹은 장수왕대로 보는지에 따라 의견차가 있다.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여호규, 2016, 앞의 논문, 157~159쪽을 참조.

17) 기존에 VII행의 4~8자를 ‘丁卯歲刊石’로 보는 판독안도 있었다(張福有, 2013, 「集安麻線高句麗碑探綜」, 『社會科學戰線』 2013-5, 18~19쪽). 그러나 4~6의 3글자는 현재로서는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立碑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여호규, 2016, 앞의 논문, 136쪽에 제시된 판독사진을 근거로 볼 때, 이는 ‘好王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8)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78~79쪽 ; 공석구, 2013, 앞의 논문, 43~44쪽 ;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守墓制의 변천」, 『한국사학보』 54, 106~107쪽.

19) V~VI행에 나오는 내용은 대체로 3왕 때 능묘 제사시설의 亡失로 새로운 제사 시설을 세웠다고 보거나(여호규, 2013, 앞의 논문, 91~92쪽), 혹은 새로운 종묘제의 정비 사업이 전개되었음을 기술한 내용으로 보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이성제, 2013, 「集安 高句麗碑로 본 守墓制」, 『한국고대사연구』 70, 198쪽).

으로 미루어 아마도 수묘인 매매와도 관련되는 어떤 사안에 대응하여 ‘守墓者以銘’이라는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IV행에 보이는 ‘銘’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된 조치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이 ‘銘’이 VIII행에 나오는 ‘上立碑 銘其煙戶頭廿人名’과 동일한 조치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능비문의 기록대로라면 이 조치(‘墓上立碑 銘其煙戶’)는 광개토왕의 명에 의해 처음 시행된 것이었으므로 그 전에 煙戶를 石碑에 銘記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V~VIII행에 등장하는 3왕[미천왕·고국원왕·소수림왕(혹은 고국양왕)]과 관련된 내용도 대체로 광개토왕대 이전부터 발생했던 수묘제 운영상의 문제나 그에 대한 조치들을 서술한 것으로서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확인된다.

그렇다면 IV행에 보이는 ‘銘’ 역시 광개토왕대의 조치인 ‘上立碑 銘其煙戶頭廿人名’과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는 별도의 조치로서,²¹⁾ 광개토왕 이전의 왕이 시행했던 ‘銘’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²²⁾ 아마도 수묘인의 매매에 대응하는 어떤 명령을 공표한 행위라고 생각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형태는 알기 어렵다. 이를 통해 집안비가 대체로 수묘제도의 시행과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 시간순으로 기술되었으며, VIII~X 행에 보이는 광개토왕대의 煙戶頭 銘記와 매매금지령 제정이라는 최종적인 敎令 집행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 立碑 시기와 비의 성격

한편 집안비의 立碑 시기와 관련해서는 VII~X 행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VII 好王曰 自戊子定律 敎內發令 更脩復各於

VIII 上立碑 銘其煙戶頭廿人名 以示後世 自今以後

VII행에서 ‘好王’, 즉 광개토왕의 敎內發令의 근거가 되었던 ‘戊子定律’은 前代인 고국양왕 5년(388)의 ‘定律’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³⁾ 고국양왕은 말년에 國社를 건립하고 宗廟를 修建하였는데,²⁴⁾ 광개토왕은 부왕의 수묘 관련 조치(戊子年의 律)를 이어서 수묘제를 정비했던 것이다. 그 일환으로 조상왕들의 묘 주변에 각각 立碑하여 煙戶頭 20人名을 새긴 것은 광개토왕이 최초로 시행한 조치였다.

20) 이성제, 2013, 앞의 논문, 189쪽.

21) 이성제, 2013, 앞의 논문, 190쪽.

22) 武田幸男, 2013, 『集安高句麗二碑の研究に寄せて』, 第9回 総合研究機構研究成果報告会, 128쪽 ; 임기환, 2014, 앞의 논문, 105~106쪽 ;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84쪽.

23) 集安市博物館 編著,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 出版部, 6쪽 ;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83쪽 ;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한국고대사연구』 76, 208쪽.

2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9년 3월조.

한편 집안비에 보이는 ‘烟戶頭’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국의 ‘戶頭’ 표현과 관련하여 개별 연호의 戶主를 가리키는 의미로 보기도 했으며,²⁵⁾ 전체 왕릉의 수묘인연호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혹은 대표자)로 보는 의견,²⁶⁾ 그리고 연호두를 수묘 제도하의 기층관리자로서 제사와 청소 등 활동을 하위에서 조직하는 자일 것으로 본 견해도 있었다.²⁷⁾ 이는 ‘頭’의 의미와 더불어 집안비의 건립시기와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다.

일단 연호두 20인을 전체 수묘인연호의 책임자이자 國烟으로 설정할 경우 광개토왕릉이 새롭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왕대에 국연의 숫자가 최초 20가로 설정되었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²⁸⁾ 또한 烟戶는 곧 家戶와 통용되는 표현인데, ‘烟戶頭’를 전체 수묘인연호의 略稱이자 특정 임무나 직책을 맡은 존재에 대한 명칭으로 보기는 어색한 점도 있다.²⁹⁾ 그렇다면 연호두는 한 왕릉에 배속된 개별 연호의 우두머리, 혹은 대표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³⁰⁾ 특히 20인이라는 숫자는 마치 수묘인연호의 파악 및 관리와 관련해 국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경우 연호두 20인이 담당관의 수묘인 역부의 동원이나 혹은 호적 작성 등에 관여 내지 보조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을 수도 있다. 집안비의 烟戶頭가 갖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VIII 上立碑 銘其烟戶頭廿人名 以示後世 自今以後

IX 守墓之民 不得擅買更相擅賣 雖富足之者 亦不得其買

X 若違令者 後世 看其碑文 与其罪過[2칸 공백]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광개토왕릉비」)

한편 집안비 VIII행의 ‘自今以後’로부터³¹⁾ 비문 말미까지는 수묘인의 매매를 금하는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능비문의 매매금지령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앞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25)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127쪽 ; 공석구, 2013, 앞의 논문, 43쪽 ; 임기환, 2014, 앞의 논문, 113~115쪽.

26) 정호섭, 2013, 앞의 논문, 118~127쪽 ; 이성제, 2013, 앞의 논문, 203쪽.

27) 徐建新, 2013, 「中國新出“集安高句麗碑”試析」, 『東北史地』 2013-3, 28쪽.

28) 임기환, 2014, 앞의 논문, 114쪽.

29)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94쪽.

30) 다만 4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戶主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주로 쓰인 용어는 ‘戶人’이었으며, 戶頭는 『隋書』·『後漢書』 등이 쓰여진 唐代의 용어라는 지적도 있다(정호섭, 2013, 앞의 논문, 119쪽) 고구려가 사용한 ‘연호두’가 중국의 ‘戶頭’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국가가 파악한 개별 家戶의 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연호두의 의미는 후술할 것이다.

31) 집안비와 능비의 매매금지령에서는 공히 ‘自今以後’라는 표현이 있다. 이때 ‘今’을 立碑 시점으로 잡는다면 두비의 매매금지령이 제정된 시점은 각각 광개토왕대와 장수왕대로 차이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임기환은 ‘自今以後’에 대해 각 비의 건립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광개토왕대에 만들어진 동일한 법령에서 인용된 문구라고 보기도 했다(임기환, 2014, 앞의 논문, 115~116쪽). 필자는 두 비에서 나오는 ‘自今以後’는 문맥상 광개토왕대에 시행되었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인 문구라고 생각한다.

문맥상 VII행의 ‘好王’ (광개토왕)이 문장의 주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집안비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묘제 관련 조치는 ‘上立碑 銘其烟戶頭什人名’ 과 매매금지령이며, 이를 제정해 공표한 주체는 광개토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안비의 立碑 시기와 관련하여 두 비의 매매금지령 문구에 차이가 있는 부분, 특히 금령을 위반한 경우(‘若違令者’·‘其有違令’)에 대한 조처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집안비가 능비보다 늦게 세워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집안비에는 ‘後世 嗣 其 碑文을 보고 罪過를 주라’ 고 하였고, 능비문에서는 ‘賣者는 처벌하고, 買人은 하 여금 守墓를 담당하게 하라’ 고 하였다. 이에 대해 능비문의 금령이 상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가운데, 뒤늦게 세워진 집안비의 ‘看其碑文’이라는 표현은 능비문의 금령에 새겨진 처벌 내용을 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³²⁾

그러나 만약 능비문에 적힌 매매금지령이 후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其有違令’ 뒤의 불과 11글자(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를 집안비에서도 그대로 기재하면 그만 이지, 굳이 ‘後世 嗣 看其碑文與其罪過’ 형태의 14자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만약 앞의 ‘後世 嗣 (6자)’가 법령의 내용과 무관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 덧붙였다고 가정하더라도, ‘看其碑文與其罪過’ (8자) 뒤의 2칸이 공백 상태이다. 즉 총10자로 違令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능비문의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11자)를 거의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를 집안비에서 ‘看其碑文與其罪過(2字 공백)’의 형태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매매금지령의 적용과 집행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이 적혀있는 별도의 문서를 근거로 했을 것이다. 집안비와 능비는 각각의 立碑 시점에서 강조하자 하는 내용을 간략한 형태로 주변에 공표·공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졌을 뿐, 후대의 계시물에 중요한 전거로서 활용되었거나 자세한 법령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최초 만들어진 법령이 훗날 보완되면서 나중에 세운 비에서 법령의 내용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제도의 운영 상황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수묘인과 주민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금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집안비에서는 ‘後世 嗣 看其碑文 與其罪過’라고 하였는데, 이는 후세에 매매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능비문의 ‘賣者刑之’와 모순되는 내용은 아니다. 또한 능비문에 ‘買人은 하여금 守墓를 담당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집안비 단계에서 굳이 석비를 통해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뿐, 두 비 사이에 법령 자체가 변화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X 행에 보이는 ‘若違令者 後世 嗣 看其碑文 與其罪過’의 ‘其碑文’은 무엇

32) 孫仁杰, 2013, 『集安高句麗碑文識讀』, 『東北史地』 2013-3, 53쪽; 張福有, 2013, 앞의 글, 18쪽; 김현숙, 201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72, 22~23쪽.

을 가리키는 것일까. 일단 집안비의 문장 내에서 언급되지 않은 별도의 비를 ‘其碑文’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VII행 이하의 내용을 광개토왕이 戊子年의 定律로 教內發令하여 수묘제의 개혁, 즉 ‘묘상입비’와 매매금지령 제정을 차례로 이행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면, 매매금지령의 ‘看其碑文’에 보이는 지시대명사 ‘其’는 광개토왕대에 ‘上立碑 銘其烟戶頭 什人名’한 기록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³³⁾ 즉 ‘看其碑文 與其罪過’는 각 왕릉에 세워진 수묘인연호두 20인명을 기록한 비문을 근거로 그 매매에 대한 ‘罪過’를 부여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의 ‘其碑文’, 즉 왕릉마다 立碑하여 烟戶頭를 銘記한 비가 집안비인지, 혹은 별도의 다른 비를 가리키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우선 집안비를 각 왕릉 근처에 세운 ‘묘상입비’의 하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³⁴⁾ 광개토왕대에 여러 조상왕들의 왕릉 근처에 석비를 세워 수묘인연호를 명기해두었는데, 이때 세운 비들은 집안비와 앞면의 내용이 동일하며, 뒷면에 각 왕릉에 해당하는 수묘인연호두의 인명을 새겼다고 본 것이다.³⁵⁾ 반면 광개토왕대에 집안비를 세운 것은 인정하면서도 X행의 ‘其碑文’은 집안비와는 별도의 비를 상정하기도 한다. 즉 집안비는 ‘묘상입비’의 목적이 아닌, 수묘제의 정비와 매매금지 등의 관련 법령을 공시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이다.³⁶⁾

우선 기존에 집안비=‘묘상입비’설에 대한 주요 반론으로서 집안비가 발견된 지점이 왕릉급인 초대형적석묘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가장 가까운 천추총과도 45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왕릉과 관련된 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³⁷⁾ 그러나 집안비의 하부 형태를 고려할 때 본래 비좌 위에 놓은 상태였을 것이나 주위 300m 지점에서는 비좌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원래 위치에서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 이탈해서 옮겨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집안비가 187.5cm의 크기와 464.5kg의 무게여서 멀리 옮기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천추총-태왕릉-장군총 등 초대형적석총의 분구버팀석들 가운데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는 사실은 1톤이 넘는 거대한 석재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 멀리 이동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³⁸⁾ 즉 집안비의 발견 위치를 근거로 왕릉 인접 여부나 비의 성격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

33) 임기환, 2014, 앞의 논문, 119~120쪽 ;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90~91쪽.

34) 기존 연구에서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守墓碑’·‘教令碑’·‘定律碑’ 등의 용어를 쓰기도 했지만, 종종 연구자별로 각기 다른 이해 속에서 이 용어들을 기재하는 경우가 없는지 의문이다. 굳이 문헌이나 금석문에 나와 있지 않은 용어들을 쓰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도 연구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35)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95쪽.

36) 정호섭, 2013, 앞의 논문, 124~129쪽 ; 임기환, 2014, 앞의 논문, 120~121쪽 ;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90~92쪽.

37) 정호섭, 2013, 앞의 논문, 115~116쪽. 비의 원래 위치와 발견된 지점 사이의 거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集安市博物館,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学出版社, 8쪽).

38) 강현숙, 2014, 「집안고구려비에 대한 고고학적 추론」, 『고구려발해연구』 50, 260~263쪽.

한편 고대사회에서 석비를 세우는 것은 많은 공력이 드는데 앞면의 내용을 공유하는 비들을 국내성 지역에 굳이 여러 기를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며, 전근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개별 연호두(戶主)의 이름을 새겨서 후세에 보인다는 행위가 갖는 비현실성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³⁹⁾ 그러나 6세기 신라에서 築城役과 관련해 착공 당시 공사구간별(작업 분단별)로 세웠던 「경주 남산신성비」의 경우, 지금까지 제1~10비가 발견된 상태이다. 전체 둘레를 2,854보로⁴⁰⁾ 상정하면 현재 추정되는 전체 구간들(작업 분단수)이 200여 개 이상이므로 더 많은 석비가 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남산신성비의 효용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역역 동원과 축성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좁은 구간 내에서도 많은 석비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비들은 앞부분에 공통적으로 공사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문장을 동일하게 기재한 뒤, 각 구간별 인력 동원을 책임진 지방관과 공사 관리자를 비롯해 村 단위 하급실무자의 職名과 이름까지 새겼다.⁴¹⁾ 이는 축성 현장을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는 인부들을 비롯해 하급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축성역에 대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국가의 관리의지를 인지시키려는 용도였다고 생각된다.

광개토왕대에 여러 왕릉별로 立碑한 조처가 수묘역을 담당했던 수묘인들과 그곳을 지나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개토왕의 법령과 국가의 수묘인 관리 의지를 명확하게 인지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한다면, 이를 반드시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으로 선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집안비에서 개별 烟戶頭(戶主)가 비록 높은 지위는 아닐지라도 수묘역 인부의 동원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자 ‘差錯’이라는 현상의 방지를 위해 나름 중요한 관리대상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자료 현황 속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광개토왕이 조상왕들의 능묘 옆에 비를 세웠다는 기록(‘묘상입비’)이 능비문에 보인다는 점, 그리고 집안비가 광개토왕대에 세운 것이 분명하며, 결론부에 그가 ‘上立碑’ 하여 烟戶頭의 인명을 銘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집안비를 광개토왕대에 만든 ‘묘상입비’의 하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 뒷면의 내용은 해당 왕릉의 연호 목록, 즉 수묘인연호두 20인의 人名이 적혀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집안비에서 <烟戶頭 20人名>을 銘記하는 형태와 능비문의 연호목록이 <지역명+國烟看烟別 烟戶數> 형태로 서술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혹자는 광개토왕비의 연호목록과 집안비의 연호두인명을 적은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여, 집안비가 건립 이후에 제도의 변화로 인해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즉 집안비와 능비의 건립 근거가 된 제도의 형

39) 정호섭, 2013, 앞의 논문, 122~123쪽.

40) 『삼국사기』 권4 진평왕 13년조.

41) 李鍾旭, 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14~26쪽 ; 橋本繁, 2018, 「신라 중고기의 지방제도와 축성비」, 『6세기 신라 석비의 세계』, 국립경주박물관, 119~131쪽.

태를 다르게 본 것이다.

그러나 능비문 수묘인연호조에는 분명히 광개토왕이 처음으로 묘상입비 명기연호한 존재였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후에 별도의 수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명+國烟看烟별 烟戶數> 형태의 연호목록을 상부에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문맥상 능비문에서 연호목록을 銘記한 조치는 집안비에서 연호두 20인명을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광개토왕대의 ‘묘상입비 명기연호’ 조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행된 결과로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광개토왕대에 각 왕릉별로 立碑하여 烟戶를 銘記하는 조치가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된 적은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집안비 I~X 행의 내용에 의하면, 먼저 비를 건립한 주체를 밝혔으며, 이후 건국 설화를 통해 왕릉 수묘의 정당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역대 왕들의 수묘제 운영과정과 관련 문제들을 시간순서대로 서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광개토왕대에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뒷면에는 수묘인연호두(戶主) 20인의 人名이 적혀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집안비의 구성 방식은 6세기 신라의 금석문들처럼 비문 전반부에서 국왕의 敎令을 내리게 된 배경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후반부에 관련 조치 및 경고문 등을 제시한 서술 방식과도 비교되는 면이 있다.

3. 수묘제의 운영 방식과 ‘墓上立碑’의 목적

1) 고구려 수묘제의 기본 형태

기존의 연구에서 고구려의 수묘제 운영과 관련해 집안비·능비에 기재된 수묘인연호 내역을 실효성 있는 관리의 근거로 이용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다수였다. 이처럼 석비를 활용한 관리방식은 곧 고구려의 문서행정 체계가 미비했던 근거로서, 목간 혹은 종이문서가 주류를 이루는 관리 형태의 이전 단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석비에 기재된 내용을 수묘제의 운영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근거로 활용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한 연구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석비에 의존한 운영 방식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20인 정도의 人名 혹은 징발 지역명+家戶數 형태로 적힌 限定的이고 可變的인 수 있는 내용을 제도 운영의 주요 근거로 두는 가운데 역역의 장기적인 운영 상황을 상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고구려는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낙랑·대방·요동군 등 중국 군현들의 영역과 주민을 흡수하였고, 화북의 前燕·後燕 등의 국가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행정체계를 정비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왕릉의 수묘가 이루어진 곳은 수도인 국내성 지역이었다. 정착농경민을 통치하는 시스템을 갖춘 고구려가 왕릉 한기 당 불과 수십 家 정도에 불과한 수묘인 集落에 대해 별도의

담당 官署를 통한 상세한 호구 현황 파악과 그 장부 내역을 통한 인력 동원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광개토왕대까지 石碑가 없는 상태에서 최소 수십 년 이상 수묘인을 遷徙시켜 관리하고 수묘역을 운영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능비에서 제기된 ‘烟戶差錯’ 이나 수묘인 매매 등의 문제는 담당관의 증원과 더불어 더욱 상세한 현황 파악을 통한 관리가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집안비와 능비의 연호목록이 갖는 용도와 기능은 철저한 문서행정의 전제 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고구려 수묘제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石碑 이외의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수묘제 형태를 참고해보고자 한다. 중국의 秦漢代 이래의 전통적인 수묘 방식은 고구려와 인접한 4세기의 五胡 왕조들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동아시아 수묘제의 기본적인 원형을 제시하였다. 고구려의 수묘제 역시 중국의 수묘제 형태를 참고하여 그 기본 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수묘제의 전통과 발전 과정을 대략 살펴보고자 한다.

제왕의 陵墓에 대한 守墓의 증거들은 이미 戰國時代의 魏代 유적이나 秦簡 등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 수묘제가 陵墓에 부속된 陵邑을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제사의식 등과 결합된 것은 진시황제가 묻힌 麗山陵과 이에 부속된 麗邑의 조성부터였다고 한다.⁴²⁾ 기원전 212년에 3만명의 주민을 徙民시켜 만든 麗邑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장관인 麗邑令과 더불어 보좌하는 屬官들이 있었고, 제사의례를 담당한 행정관도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 운영 형태는 漢代의 陵邑制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前漢代의 황제릉 옆에 주민들을 遷徙시켜 만든 陵邑은 秦代의 麗邑을 모델로 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전한대에는 전쟁 등으로 황폐해진 京畿(關中) 지역을 강화시키고 흉노 침공과 제후들의 반란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 확보의 목적으로 지방의 高官과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들을 陵邑에 徙居시키는 ‘強幹弱枝’ 정책을 펼쳤다. 이는 지방에서 많은 토지를 점유한 채 貧民을 사역시켜왔던 호족 세력들의 약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처럼 ‘강간약지’ 책으로서 조성된 陵邑에 옮겨진 주민의 규모는 최소 5천여 호에서 5-6만 호에 이르는 대규모로 나타났는데, 陵邑令陵邑丞 등의 관리가 해당 주민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가운데 능묘의 守衛·제사·雜役(청소)에 필요한 인원, 즉 수묘 인원을 능읍민 가운데서 동원하였다. 주로 지방의 호족과 富戶·고위관료와 일반민을 대규모로 이주시켜 능읍을 만드는 ‘강간약지’ 책은 대략 前漢 元帝때에 관중의 인구가 이미 충실해졌고, 지방의 인민을 破業失産하게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⁴³⁾

42) 수묘는 피장자의 지위와 수묘호 규모에 따라 황릉에 부속된 陵邑형, 황족과 그 인척 및 제후, 高爵者의 무덤에 부속된 園邑형, 개인의 무덤에 배속된 私墓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43) 閔斗基, 1957, 「前漢의 陵邑徙民策」, 『歷史學報』 9, 2~23쪽.

그러나 ‘강간약지’ 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수묘인을 사민시켜 황릉을 돌보는 제도는 지속되었다. 『後漢書』百官志에는 후한대에 황제의 능원에 배치한 관리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陵園의 守衛掃除巡視를 주관하는 능원 관리 책임자인 陵園令 1인과 보좌역인 丞, 그리고 능원의 치안을 담당하는 校長, 제사를 주관하는 食官令 1인 등이 나타나있다.⁴⁴⁾ 이들의 직능은 묘장의 수위·제사청소를 중심으로 한 역대의 수묘제 기능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후한대 역시 전한대와 같은 수묘 방식이 이어졌음을 보여준다.⁴⁵⁾ 물론 후한대 능읍의 주민 규모는 전한대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후한대 이후의 수묘 관련 기록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曹魏代의 경우 文帝때 厚葬의 폐해를 없애고자 園邑을 폐지하는 節葬制(222)를 실시했음에도 능묘 옆에 수묘호를 이주시키는 방식의 수묘제는 여전히 지속되었다.⁴⁶⁾ 東吳에서도 南郡太守 呂蒙이 사망하자 그의 집안에 수묘호 300가 내려진 기록이 있다.⁴⁷⁾ 또 4세기 東晉 시기에도 고위 官爵을 받은 자들에게 爵秩의 등급에 따라 수묘호 규모를 최고 70호부터 최하 10호까지 차등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喪葬令이 명문화되어 있었다.⁴⁸⁾ 당시 화북의 五胡 국가들인 後秦·北燕, 그리고 북위로 이어지는 정권에서 황제의 직계조상의 능원에 500가의 수묘호를 배치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漢代 이래의 제도를 계승한 결과로 본다.⁴⁹⁾

요컨대 수묘인을 家戶단위로 징발하여 황제나 황족제후의 능묘 주변에 안치시킨 뒤, 이들로 하여금 요역을 대신해 수묘역을 담당하게 했던 방식은 前漢代 이래로 여러 왕조들에서 계속 이어져왔던 전형적인 수묘제 형태였던 셈이다. 특히 4세기에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北燕에서도 410년에 황제 馮跋이 1년 전에 살해당했던 高雲의 분묘에 園邑 20家を 두어 四時로 供薦하게 했으며,⁵⁰⁾ 長谷에 북부인 500호를 옮겨서 조부의 園邑을 조성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⁵¹⁾ 북연의 園邑 조성을 통한 수묘의 방식은 고분 근방에 民戶를 이주시켜 지정된 무덤의 수묘를 담당하게 했던 형태로서 황제릉의 수묘제 역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家戶 단위의 遷徙를 통해 수묘호 집락을 이루게 한 뒤, 이들을 동원해 능묘를 지속적으로 수묘하게 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고구려의 수묘제 운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단 신대왕 15년(179)에 죽은 國相 明臨答夫에 대해 왕이 정사를 7일간 멈추고, 예를 갖추어 質山에 장사지낸 뒤 수묘 20家を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⁵²⁾

44) “先帝陵 每陵園令各一人 六百石”(本注曰 掌守陵園 案行掃除 丞及校長各一人 ;本注曰 校長 主兵戎盜賊事 先帝陵 每陵食官令各一人 六百石 ; 本注曰 掌管晦時節祭祀)(『後漢書』志第25 百官2).

45) 윤재석, 2013, 앞의 논문 39쪽.

46) “追賜仁父熾諡曰陳穆侯 置守冢十家”(『三國志』卷30 魏書 9 諸夏侯曹傳 第9 曹仁 弟純)

47) “蒙子霸襲爵 與守冢三百家 復田五十頃”(『三國志』卷54 吳書9 周瑜魯肅呂蒙傳第9 呂蒙)

48) “守冢戶 三公有爵者七十戶至十戶 各有差”(張鵬一撰, 徐清廉校補, 『晉令輯存』喪葬令第17).

49) 관련 내용은 윤재석, 2013, 앞의 논문 40~44쪽을 주로 참고.

50) “義熙六年 跋下書曰 昔高祖爲義帝舉哀 天下歸其仁 吾與高雲義則君臣 恩踰兄弟 其以禮葬雲及其妻子 立雲廟於葦町 置園邑二十家 四時供薦”(『晉書』卷125 載記 第25 馮跋).

51) “遣其太常丞劉軒 徙北部人五百戶于長谷 爲祖父園邑”(『晉書』卷125 載記 第25 馮跋).

52) 『삼국사기』고구려본기 新大王 15年.

명림답부는 신대왕의 즉위와 漢軍을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릉에 준하는 수묘 방식을 적용한 사례로 생각되는데,⁵³⁾ 이처럼 ‘置守墓家’ 형태의 기록은 주민 遷徙를 통한 수묘호 집락의 형성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수묘제를 표현했던 기록들과 다르지 않다. 또한 집안비와 능비에서도 각 지역별로 遷徙된 연호(家戶) 단위의 수묘인과 이들의 장기적 유지를 의도했던 敎令의 내용이 보인다. 즉 2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고구려 수묘제의 기본 제도 형태가 주민 遷徙와 이들을 동원해 수묘역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고구려의 수묘인이 담당했던 직무에 대해서도 능비문에서는 ‘守墓’·‘洒掃’, 집안비에서는 ‘四時祭祀’·‘守墓’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秦漢代 이래의 수묘제 직무인 守衛祭禮·청소(雜役)와 별 차이가 없다. 즉 遷徙된 주민들을 동원하여 비슷한 형태의 직무를 담당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중국왕조와 고구려 수묘제가 상당히 유사한 틀 속에서 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왕조와 고구려의 수묘제가 갖는 공통점, 즉 집단적 사민을 통해 수묘인 집락이 형성된다는 점과 수묘인이 담당했던 역의 직무가 비슷했다는 점 등은 수묘인에 대한 사회적·법제적 처우와 평상시의 관할 방식에 대해서도 비교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漢代 이래로 陵邑民에 대한 행정지배와 일반 군현민에 대한 통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능읍은 전한 元帝때인 永光 4년(기원전 40)이전까지 太常에 직속되어 있었을 뿐, 이후에는 수도 長安을 중심으로 한 三輔에 각기 분속되어 일반 행정구역처럼 관리되었다. 능읍에는 상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주되었는데, 일반 평민들이 다수를 이루었다.⁵⁴⁾ 이들은 徭役을 대신하여 수묘역에 동원되었으며, 원칙적으로 田租와 인두세(算賦·口賦) 등을 일반 縣民과 동일하게 납부하였다.⁵⁵⁾ 또한 능읍은 능의 관리와 제사만 하는 신성한 지역이 아니라, 능읍민들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졌고, 타지 출신의 상인도 활동하는 등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었다. 즉 행정적 지배형태와 주민의 존재양태가 일반 현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⁵⁶⁾

그렇다면 4~5세기 당시 고구려의 수묘인들에 대한 법적인 처우는 어떠했으며, 이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수묘인은 어디까지나 家戶 단위로 파악 및 유지·관리되며 自己經理가 인정되는 존재였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⁵⁷⁾ 다만 수묘인이 징발된 지역이 광개토왕대 혹은 그 이전의 복속지(新來韓穢舊民)로 나타나는 등 피복속민 출신이라는 점, 수묘인의 매매가 이

53) 김창석, 2015, 「고구려 守墓法의 제정 경위와 布告 방식」, 『동방학지』 169, 83쪽.

54) 중국에서 국가가 공적으로 사민시켜 형성한 陵邑과 園邑의 구성원들은 唐初 이전까지 주로 일반 良人 신분이었다(神野清一, 1986, 『律令國家と賤民』 吉川弘文館, 115쪽; 尹在碩, 2013, 「中國古代的 守墓制度」, 『東洋史學研究』 124, 48~51쪽).

55) 巴新生, 1985, 「西漢陵縣小考」, 『天津師大學報』 1985-3, 53쪽.

56) 전한대 陵邑의 행정구조와 문서행정 방식 및 능읍민의 존재 형태가 일반민과 별단 다를 바 없었다(尹在碩, 2013, 「中國古代的 守墓制度」, 『東洋史學研究』 124, 45~48쪽).

57) 金錫亨, 1974, 「三國時代の良人農民」, 『古代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95~96쪽.

루어지기도 했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사회적 성격을 일반 良人 보다 낮게 보는 주장도 있었다.⁵⁸⁾

4~5세기 당시 고구려 수묘인의 사회적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규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능비문과 집안비에 의하면 국가가 遷徙시킨 수묘인연호의 장기적인 생활·주거 유지를 의도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집안비와 능비문의 매매금지령은 수묘제가 개시되던 때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응하여 후대에 제정된 것이다. 국가의 공적인 역할을 부담하는 수묘인 집단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상황 변화에 의해 매매되는 존재로 轉化되기도 했던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면 제도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음이 자각되었던 후대에 와서야 비로소(‘自今以後’) 매매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것이다.⁵⁹⁾

또한 능비문과 집안비의 매매금지령은 수묘인 이외의 제3의 존재인 ‘富足之者’를 언급하고 있다. 수묘인과 외부인(‘부족지자’)과의 왕래와 모종의 거래를 상정할 수 있다면, 고구려의 수묘인 거주지는 다른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된 폐쇄적인 제한구역이 아닌, 중국의 陵邑처럼 농·상업 등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며 여러 형태의 거래가 허용되었던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自今以後’로 시작되는 매매금지령은 이러한 기존의 자유로운 왕래와 거래의 일단을 제한한 조치였던 것이다. 인신의 매매(自賣 포함)는 일반 양인의 거주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만큼 수묘인의 신분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수묘인이 본거지에서 遷徙되었고 移轉의 자유가 없는 비자유민이라는 점만으로 이들을 일반민과 별도의 지배가 이루어졌던 존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중국의 陵邑과 園邑에 거주했던 주민들 역시 국가의 명령에 의해 이주되었고, 함부로 移轉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행정적 지배는 일반 縣民의 지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고구려에서 수도인 국내성으로 遷徙되어 온 수묘인들 역시 일반민으로서 대우받았다면, 이들도 마땅히 稅役의 수취 대상으로서 파악되었을 것이며, 수묘역 역시 徭役을 대체한 형태로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마땅히 균평한 조세 수취와 역의 부과를 위해 평소에 담당 관리가 각 가호 내의 구체적인 구성원 현황(성별, 연령 등)과 人丁數의 변동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을 것이며, 이는 종이나 목간 형태의 장부를 통해 관리되었을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수묘제 기록에서 중국의 수묘제 관련 기록들과 보이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徙民의 규모이다. 前漢代의 경우 황제의 능에 부속된 陵邑에 최소 5천여 호 이상의 많은 인구가 遷徙되었다. 물론 전한대의 대규모 사민은 關中 지역에 인구를 집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高官과 호족들을 대거 遷徙시켰던 정책(‘강간약지’책) 때문이었고, 이 제도의 폐지 이후 농업의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대 北朝나 五胡의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여전히 황제나 제후의 능묘에 수백 가 규모의 수묘호를 두는 경우들이 보인다.

58) 김현숙,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한국사연구』 65, 24~34쪽.

59) 손영종, 1986,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수묘인연호』의 계급적 성격과 립역방식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6-3 ; (재수록)2001,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중심, 106쪽

반면에 고구려의 수묘호 규모는 매우 작다. 집안비에 적힌 ‘烟戶頭什人名’에서 20이라는 숫자는 신대왕 15년(179)에 죽은 國相 明臨答夫의 수묘 20家,⁶⁰⁾ 그리고 능비문에서 장수왕이 최초 징발하려했던 國烟 20과 동일한 숫자이다. 이를 한 왕릉에 배속된 전체 연호수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면, 고구려는 179년부터 410년까지 대략 230여 년 동안 20호 규모의 연호를 두어서 왕릉을 수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던 셈이다. 즉 개별 왕릉의 수위·청소·제사 업무를 담당할 인원을 정기적으로 동원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중국의 황제릉뿐만 아니라 제후의 무덤을 위해 만들어진 園邑의 구성원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숫자이다. 다만 고구려는 국내성 지역의 강화나 지방 토착세력의 약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내성 지역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農地가 적어서 많은 주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이주된 수묘인의 규모가 적었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 밖에 서로 인접해 있던 왕릉들의 현황 역시 전체 守衛 인원의 수요가 적었던 한 요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20호가 단일 가족으로만 구성된 自然戶일 경우에 한 번에 최대 징발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男丁 기준)을 크게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연호의 경우 매년 구성원의 나이 변동과 기타 문제로 인해 징발 가능한 전체 人丁數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심한 경우 한 왕릉에서 징발 가능한 대상이 20인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이 정도 인원으로 수위·청소·제사에 필요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⁶¹⁾ 만약 부족할 경우 인근의 다른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임시로 동원했다고 가정해볼 수도 있지만, 다른 왕릉 역시 자연호 20가를 기준으로 충분한 인원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데다, 능비문의 ‘烟戶差錯’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함부로 다른 왕릉의 수묘인 동원을 대안으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연호두 20인이라는 숫자도 문제이다. 이들은 개별 호의 대표자로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관리 의지를 내비친 대상이었으며, 평소에 담당관의 호적 조사나 수묘 인부의 동원 등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인원이 고정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호주의 숫자는 20인으로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20호가 자연호라고 한다면 20인의 연호두 인원이 계속 유지되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수 있다.

이 20호가 정기적으로 수위·청소·제사 업무에 일정한 인원을 공급할 수 있었고, 연호두 인원도 20으로 상시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이 20烟戶는 인위적으로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즉 부역이나 공물의 부과징수 등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편제된 戶(課戶)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수묘역의 동원을 위한 편성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이때의 20烟戶는 人丁數를 기준

60) 신대왕대에 국상 명립답부의 공훈을 고려해 수묘인 배정도 왕릉급 대우를 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왕릉의 수묘인원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1) 집안비에는 ‘四時祭祀’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1년에 4회만 제사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닌, 제사 일만을 묶어서 표현한 것으로서 더 잦은 제사가 베풀어졌을 가능성도 있다(여호규).

으로 편성되었다고 추정해보고자 한다.⁶²⁾

그렇다면 烟戶頭 20인은 여러 자연호들을 묶어서 편성된 課戶의 대표자를 의미할 것이다. 이 課戶의 존재는 고구려가 평소에 수묘인 집락의 家戶別 口數는 물론 그 내부의 동원 가능한 課丁과 구성원들의 성별·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였고, 이를 근거로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동원을 위한 인위적인 편제가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세한 문서행정의 상황을 전제로 왕릉 인근에 석비를 건립하여 烟戶頭의 人名 혹은 수묘인의 징발지와 연호수 등의 간략한 내역을 銘記한 조치가 갖는 효용 및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집안비의 건립 목적

능비에서는 광개토왕이 조상왕들의 능묘마다 비를 세우고 연호를 銘記한 배경을 연호의 ‘差錯’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差錯이 정확히 어떤 형태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이를 수묘역 수행시 순서상의 착오나 노동조의 담당 능에 대한 역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착종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⁶³⁾ 능비와 집안비에 보이는 연호목록의 내용은 지역명+國烟看烟別 烟戶數 혹은 烟戶頭(戶主)의 人名이므로 수묘역 수행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差錯’ 문제는 舊民의 ‘轉當羸劣’ 문제처럼 광개토왕대에 와서야 조치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닌, 오랜 운영과정에서의 나타난 제도적 이완 현상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특정 왕릉의 수묘인 숫자 감소로 인해 다른 왕릉의 수묘인을 임의로 역에 동원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소속 왕릉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나 추정해본다. 또한 수묘인의 ‘賣買’ 문제 역시 기존에 방지됐던 매매가 세월이 흐르면서 수묘인 숫자의 점진적인 감소로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 광개토왕대에 그 심각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 집안비에서는 연호두 20인명이 銘記된 내역을 보고(‘看其碑文’) 위반한 자에게 罪過를 주라는 문구가 있다. 즉 ‘차착’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한 내용이 수묘인의 매매를 방지하는 근거도 된다는 점이다. 차착과 매매는 분명 다른 종류의 위반 사항일텐데도 불구하고, 석비에 수묘인과 관련된 모종의 내용을 銘記함으로써 모두 방지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안비와 능비에 각각 銘記된 기록은 매우 소략한 데다 각각 형태도 다르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정작 어떻게 연호의 差錯을 방지하고 수묘인의 매매를 방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두 비에 기록된 연호 관련 내용이 수묘인 관리의 근거로서의 실효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들이 다수였다. 즉 석비의 연호목록을 근거로 한 장기적인 제도 운영

62) 신라가 551년에 세운 「단양적성비」의 「更赤城烟去使之」구절과 관련해서도 ‘更赤城烟’을 적성을 쫓으로 지키는 烟戶, 즉 적성의 更烟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능비문의 ‘烟’과 비교한 사례가 있다(鄭求福, 1978, 「丹陽新羅赤城碑 內容에 대한 一考」, 『史學誌』 12, 126쪽). 다만 이때의 ‘更’은 更烟의 의미 보다는 무사어인 ‘다시’로 해석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적성연’의 사례를 집안비·능비의 烟戶와 함부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63)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6쪽.

가능성을 상정한 것이다.⁶⁴⁾ 그러나 아래의 기록들은 과연 연호목록이 실효성 있는 수묘인의 관리 근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욱 더 의문이 들게 한다.

VIII 上立碑 銘其烟戶頭什人名 以示後世 自今以後

IX 守墓之民 不得擅買更相擅賣 雖富足之者 亦不得其買

X 若違令者 後世 看其碑文 与其罪過

위 VIII행에는 연호두 20인명을 銘記한 뒤 ‘以示後世’ 하라고 하였다. 즉 연호두 20인을 銘記한 석비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보여질 것을 고려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X 행에서는 ‘後世’, ‘嗣’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후대에 ‘연호두 인명이 銘記된 석비(‘其碑文’)'를 보고 위반자에게 罪過를 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된 것처럼 烟戶頭(戶主)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모두 생존해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비문에 적힌 내용 자체가 후대의 수묘인 관리대장으로서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연호두의 인명만 새길 경우 當代에 烟戶頭를 매매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흘러 연호두가 교체돼버리면 의미가 없게 되며, 특히 연호 내에 있는 연호두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이 매매되는 것을 관리할 근거도 될 수 없다.

능비의 연호목록도 <지역명+國烟看烟別 烟戶數> 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다. 혹자는 이것이 출신지와 국연·간연의 구분을 통한 관리대장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출신이 다른 수묘인 간의 혼인과 출산, 分家 등에 따라 A지역 출신의 戶數가 증가하거나 혹은 廢家되어 소멸하는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출신지의 구분을 통한 고정적 관리가 과연 ‘후세’ 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관리대장으로서 효율적인 구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연호두 20인명이나 지역명+國烟看烟別 烟戶數는 立碑 당시의 현황을 보여줄 뿐이며, 그 이후의 관리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조처는 문서행정의 정비와 더불어 관리·감독의 강화였다고 생각된다. 고구려는 이미 遷徙된 수묘인 집단의 호구 상황에 대한 상세한 파악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개별 가호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파악을 기반으로 課戶의 설정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면, 석비의 연호목록에 적힌 단편적인 내역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逆行하거나 방해가 되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64) 이러한 전제로 수묘인 관리의 제도적 형태가 변경될 경우 관리 효용이 없어진 집안비를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홍승우, 2013, 앞의 논문, 110~112쪽; 임기환, 2014, 앞의 논문, 118~120쪽;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한국고대사연구』 76, 233쪽; 김창석, 2014, 앞의 논문, 94쪽). 또한 능비의 건립 이후 석비를 통해 인민들에게 포고하는 방식은 종결되었고, 이후 수묘인연호에 대한 내용은 종이나 목간 형태의 문서로 담당 관리에 관리되는 형태로 전환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김창석, 2015, 앞의 논문, 94쪽).

그렇다면 광개토왕대에 갑자기 이처럼 석비를 활용하게 했던 것은 종이(목독) 문서가 갖는 기능과는 다른, 현장에의 공사·공표라는 기능과 상징성에 비중을 두는 가운데 검토해야 할 것이다. 王命에 의거해 수묘인 관련 내역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현장의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동시에,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를 常時 천명함으로써 지금뿐 아니라 ‘후대’에도 벌어질 수 있는 제도적 이완까지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 아니었을까.⁶⁵⁾

이러한 석비 건립과 수묘인 관련 목록의 銘記와 관련해 신라의 「南山新城碑」의 사례를 참고해 보고자 한다. 591년 2월에 남산신성 築城役의 시작 단계에 구간별로 세운 이 비는 집안비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力役 동원 및 공사 책임과 관련된 비로서 축성역이 시작되는 착공 시점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러 개의 석비가 동일한 목적으로 공사 구간(작업 분단)별로 세워졌는데, 3년 내에 성이 붕괴될 경우 죄를 받는다는 동일한 서약문을 공유하고 있으며, 작업 구간의 거리, 구간별 인부의 징발 책임자(道使·邏頭)와 하위 작업관리자(匠尺·工尺·文尺)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⁶⁶⁾ 아마도 立碑 당시에 인부를 징발한 관리와 작업 책임자들, 그리고 인부들의 서약이 이루어지는 의식(ceremony)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산신성비」의 내용은 그 자체로 지속적인 관리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석비에 立碑 당시의 현황들을 적는데 더 치중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비에는 해당 村 역부들의 축성 담당구간(거리)이 寸단위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⁶⁷⁾ 이는 전체 거리에서 작업 분단의 인원수를 고려해 산술적으로 나눈 ‘계획상’의 수치(형식적 의미)로서,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을 진행하거나 작업을 마쳤을 당시에는 일정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⁶⁸⁾ 지형의 험준함이나 참여한 역부들의 역량 등 착공시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축성역이 몇 달 정도 지속되는 과정에서 郡村 단위의 하위 관리자(匠尺·工尺·文尺) 중 일부도 불의의 사고나 기타 사유로 인해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축성 경험이 있는 신라 조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들을 예단하지 못해서 석비에 미리 구체적인 수치와 관리자 명단을 새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석비에 적힌 것 이외의 내용들, 즉 관리자 이하의 역부 개개인 명단과 숫자, 그들의 작업 일수 등은 별도의 문서로 관리되고 있었을 것이다.⁶⁹⁾ 만약 축성 담당거리나 작업 책임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갱

65) 고구려가 수묘인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한 것은 석비가 아닌 호적 등의 장부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어도 광개토왕비의 연호목록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새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홍승우, 2013, 앞의 논문, 111쪽 註70). 다만 이 글에서도 집안비의 연호목록은 여전히 인명 기재를 근거로 한 관리 용도로 상정하고 있다.

66) 秦弘燮, 1965,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 『歷史學報』 26 ; 李鍾旭, 1974, 앞의 논문.

67) 현재까지 발견된 「남산신성비」 제1~10비 가운데 역부가 동원된 村(里)名과 受作거리가 보이는 사례는 제1비(阿良村, 11보 3척 8촌), 제2비(阿大兮村, 7보 4척), 제3비(喙部 主刀里, 21보 1촌), 제9비(伊同城, 6보)이다.

68) 하일식, 1993, 「6세기 말 신라의 역역 동원 체계」, 『역사와 현실』 10, 217~218쪽.

69) 공사가 진행되었던 남산신성 인근에는 공사의 준공과 관련된 별도의 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준공시에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明活山城碑」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5일의 공사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신과 관리 역시 목간이나 종이문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장에 세워둔 석비 자체가 관리자 명단과 축성 담당구간 등을 ‘고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남산신성비」의 용도는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약문 낭독과 함께 계획상의 공사구간(거리), 그리고 현장의 관리자 명단 등을 공시함으로써 국가의 엄격한 관리 의사를 알리는 동시에 현장 작업자들(독자)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즉 그 자체로 사후 관리의 근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 銘記된 내용에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석비의 내용을 수정하는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발견된 남산신성비 제1~10비에서 축성 공사구간(거리)이나 담당자의 명단을 수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국가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石碑를 활용했던 다양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서, 능비와 집안비에 수묘인 연호목록을 銘記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생각된다.

이미 4세기 후반~5세기 초반 당시의 고구려 역시 이전부터 문서행정을 통해 왕릉에 遷徙된 수묘인들에 대한 家戶별 구성원의 숫자와 성별·연령 등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수묘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장부’로서의 석비 문서가 필요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그렇다면 두 비의 연호목록은 왕명에 의해 立碑 당시의 수묘인연호 내역을 銘記하여 공시하고, 수묘인을 비롯해 담당 관리, 연호두 20인 등의 참여 하에 일종의 서약 의식을 치르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가가 이들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할 것임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용도라고 봐야할 것이다.⁷⁰⁾

한편 王命에 의거해 두 비에 새겨진 연호목록은 국가의 관리 의지를 공표하는 용도 이외에도 최초의 공문서로서 이후 추가적으로 작성되는 관리문서들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용도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아래의 매매금지령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自今以後 守墓之民 不得擅買 更相擅賣 雖富足之者 亦不得其買 若違令者 後世 嗣 看其碑文 与其罪過(집안비)

집안비에서는 광개토왕의 명으로 연호두 20人名을 적은 내용을 ‘以示後世’ 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뒤이은 매매금지령에서는 “만약 령을 위반한 자는 後世에 嗣 그 碑文을 보고 罪過를 준다”는 내용이 나온다. 불과 20인의 연호두(戶主) 명단만으로 수묘인연호 구성원들의 매매

70) 고구려에서 후한 이래의 石碑 문화를 숙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규수형비의 시각적 효과와 용도를 참작하여 집안비(‘묘상입비’)를 제작했다고 본 견해도 주목된다. 규수형비를 택한 것은 아마도 수묘인들에게 광개토왕의 敎諭를 인지시키고 이를 지킬 것을 맹서하도록 하는 용도였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김병준, 2017, 「‘시각 문서’에서 ‘시각 석비’로」, 『목간과 문자』 18, 132~133쪽). 능비의 경우에는 규수형이 아니지만, 이는 광개토왕의 흔적을 드러내고 동시에 수묘인 연호목록을 공시(‘묘상입비’)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춘 비였기에 광개토왕대의 ‘묘상입비’를 목적으로 한 비들과는 별개의 형태로 제작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간이 흐른 뒤에 연호두(호주) 20인이 사망하거나 교체된 상황에서도 이것이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문서행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발생하는 매매나 각종 부정행위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설사 적발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매매된 수묘인 당사자가 사망했고 그 자식이 노비가 돼 있는 경우, 혹은 수묘인을 매입한 당사자가 죽고 그 후손이 수묘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호 구성원에 대한 名簿 파악 이외에도 장부가 갱신된 이후에 先작성된 명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石碑에 소략한 형태의 장부를 王命에 의거해 銘記한 조처는 이를 근거로 국가가 이전 관리 대장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과 더불어 향후에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공표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立碑 시점에 銘記한 공문서가 후대의 수묘인 매매 행위를 소급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의미로서 “後世에 嗣嗣 그 碑文을 보고 罪過를 준다”는 문구를 적은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한편 집안비와 능비의 연호목록이 각각 <烟戶頭 20人名>을 銘記하는 형태와 <지역명+國烟看烟別 烟戶數> 형태로 각각 차이를 보이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보통 그 원인에 대해 광개토왕대의 ‘묘상입비’ 제도가 능비를 작성할 단계에 이르러 폐지 내지 변경되었다는 입장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즉 기존에 연호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이 이후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능비 단계에서는 <지역명+國烟看烟別 烟戶數>를 새기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본 것이다.⁷¹⁾

그러나 이 역시 왜 지역명+연호수의 기재 방식이 더 나은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능비문에는 분명히 광개토왕이 처음으로 ‘묘상입비 명기연호’ 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추가(수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능비에 새겨진 <지역명+國烟看烟別 烟戶數> 형태의 연호목록은 집안비와 같은 ‘묘상입비 명기연호’ 제도에 의거해 銘記되었다고 보는 해석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제도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두 비의 연호목록이 각기 다른 형태로 표기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연호목록이 지속적인 관리대장으로서 효용을 갖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두 비가 새겨질 당시의 상황 차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개토왕은 이전 여러 조상왕릉의 수묘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차착이나 매매 현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한 뒤에 각 왕릉에 立碑하고 연호를 銘記했을 것이다(‘墓上立碑 銘記烟戶’). 그렇다면 이때 수묘인연호의 정비는 기존의 각 왕릉의 수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것인데, 이들은 이미 국내성 지역으로 遷徙되어서 수묘를 담당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즉 立碑된 시점에 새롭게 징발되어온 자들이 아니었

71) 공석구, 2013, 앞의 논문, 49쪽 ;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110~111쪽.

다.

이때 조성된 지 이미 수십 년 이상이 지난 왕릉에 배속된 수묘인들은 광개토왕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에 걸쳐 국내성에 거주하면서 수묘를 담당해온 이들도 있었을 것인데, 수묘인들 간의 혼인으로 인해 여러 지역 출신들이 섞이기도 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대가 끊겨 廢家되는 경우도 발생했을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시점에 발생했던 많은 변화로 인해 수묘인들이 최초에 국내성으로 遷徙되기 이전의 출신 지역명은 설사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광개토왕대의 立碑 시점에 인위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課戶의 대표자로서 담당관의 호적 파악에도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수묘역 인부 동원의 최말단 실무자 역할을 하기도 했던 연호두(호주)의 명단을 공시하는 것이 국가의 행정적인 역량과 수묘인연호의 현황을 한정된 공간 속에서 내보이는데 더 적절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결과가 바로 집안비에 연호두 20인명을 銘記한 내역일 것이다.

반면에 능비의 연호목록은 집안비의 건립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일단 능비에 보이는 414년 9월 29일은 능묘를 모두 완성한 뒤에 葬送을 마친 시점일 것이다.⁷²⁾ 그런데 이때 장송 절차 이외에도 陪塚과 祭臺의 설치, 樹木 심기, 수묘인 배정 등 왕릉의 정비와 수묘 관련 조치들이 추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연 능비에 들어갈 문구가 확정된 시점에 광개토왕릉에 배정된 수묘인연호를 국내성으로 遷徙하는 작업까지 모두 완료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국내성에 安置된 수묘인들을 인위적으로 편성한 課戶가 설정되고, 그 烟戶頭(호주)의 지정까지 마무리되었는지 여부는 분명히 알 수 없다.⁷³⁾

만약 연호목록이 향후 제도운영과 관련한 주요 관리 대장이자 일정한 항목과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만 하는 장부 성격이었다면 능비에 들어갈 문구는 당연히 위의 조치들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기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것처럼 집안비와 능비의 연호목록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대장으로서의 의미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課戶의 편성과 이를 통한 정상적인 수묘역 동원은 立碑 시점에 비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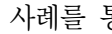
이처럼 立碑 당시에 수묘와 관련 체계적인 정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광개토왕릉의 수묘인연호 전체를 일괄할 수 있는 자료로서 비면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公示할 수 있는 前단계의 자료는 지역별로 수묘인연호를 징발했던 내역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는 집안비에 적힌 내역과 마찬가지로 왕명에 의거해 銘記된 최초의 관리 장부 내역으로서 이후 문서로 작성되는 공적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국가의 수묘인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상징적인 용도로 봐야할 것이다. 즉 능비의 立碑 당시 국가가 지니고 있던 지역별 差定 명부를 연호목록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광개토왕대의 ‘묘상입비’ 제도가 의도했던 소기의

72)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능비문)

73) 배종과 제대 설치, 수묘인 배정 등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 최종 立碑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주보돈, 2016, 『廣開土王碑와 長壽王』, 『목간과 문자』 16, 47~48쪽).

목적에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집안비가 곧 광개토왕대에 세운 ‘묘상입비’의 하나라는 입장에서 이 비의 성격과 내용에 접근하였다. 집안비는 수묘제에 대해 국왕이 정한 法令을 공표하고, 敕令에 의거해 수묘인연호의 목록을 銘記하여 공시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국왕의 敕令을 공시하였던 新羅碑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도입부인 I 행의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은 건국설화의 일부가 아니라, 立碑(敕令)의 주체인 광개토왕의 존재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높다.

집안비의 내용은 대체로 기존 수묘제도의 시행과 문제점들을 기술하는 가운데, 광개토왕대의 烟戶頭 銘記와 매매금지령 제정이라는 최종적인 敕令 집행이 이루어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즉 역대 왕들의 수묘제 운영과정과 관련 문제들을 시간순서대로 서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광개토왕대에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현재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뒷면에는 수묘인연호두(戶主) 20인의 人名이 적혀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고구려 수묘제의 기본적인 형태와 관련해 당시 중국 진·한대 이래의 수묘제 형태를 참고하였다. 고구려 수묘제의 기본 형태는 家戶 단위의 遷徙를 통해 수묘호 집락을 이루게 한 뒤, 이들을 동원해 능묘를 지속적으로 수묘하게 하는 중국의 수묘제 방식과 비교된다고 보았다. 또한 고구려의 수묘인이 담당했던 직무(수위·청소·제사)도 秦漢代 이래의 수묘제 직무[守衛祭禮·청소(雜役)]와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위와 같은 징발 방식과 직무상의 유사점을 고려할 때, 고구려의 수묘인들도 중국 陵邑의 수묘인들처럼 稅役의 수취 대상으로서 파악되었을 것이며, 마땅히 균평한 조세 수취와 역의 부과를 위해 평소에 담당 관리가 각 가호 내의 구체적인 구성원 현황(성별, 연령 등)과 人丁數의 변동 현황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를 근거로 집안비의 烟戶頭 20인은 여러 自然戶들을 묶어서 인위적으로 편성된 課戶의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고구려가 왕릉 인근에 석비를 건립하여 烟戶頭의 人名 혹은 수묘인의 징발지와 연호수 등의 간략한 내역을 銘記한 것의 효용은 위와 같은 상세한 문서행정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두 비에 기록된 연호 관련 내용이 수묘인 관리의 근거로서의 실효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들이 다수였으나, 석비에 적힌 단편적인 내역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逆行하거나 방해가 되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6세기 신라의 「南山新城碑」 사례를 참고한 결과, 집안비·능비에 銘記된 연호목록은 王命에 의해 立碑 당시의 수묘인연호 내역을 銘記하여 공시함으로써 향후에도 국가가 이들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할 것임을 천명한 ‘상징적인’ 용도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石碑에 소략한 형태의 장부

를 銘記한 조처는 국가가 立碑 이후의 수묘인 관리대장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써 ‘후세’의 위한 사항에 대해 소급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수묘제가 갖는 보편적 형태와 그 기반이 되었던 철저한 문서행정이 고구려 수묘제 운영의 특징이라고 보았으며, 중국에서 보이지 않은 수묘제 관련 석비의 효용과 관련해서는 신라의 사례를 통해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여러 시론적인 주장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논증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集安高句麗碑」의 建立 목적과 守墓制」 토론문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정준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안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판독안을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판독문을 선택한 다음, 수묘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집안비의 건립목적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왕조의 수묘제 시행 양상 및 신라의 立碑 사례를 참조하여 고구려 수묘인들도 문서행정에 기초하여 稅役의 수취 대상으로 파악되었고, 집안비에 수묘인 명부를 명기한 것은 수묘인 관리대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간과했던 측면을 새롭게 밝혔다는 점에서 안 선생님의 발표는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안 선생님께서는 新羅碑의 사례를 참조하여 집안비 1행 서두의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을 立碑(敎令)의 주체인 광개토왕의 존재를 표기한 명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기존에 제기되지 않았던 신설인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 안 선생님께서는 고구려 비석 가운데 서두에 건국설화를 기술한 사례는 <광개토왕릉비>뿐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지하듯이 <모두루묘지>도 비석은 아니지만 묘지로 가장 서두에 건국설화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문의 서두에 건국설화를 기술한 사례는 <광개토왕릉비>뿐이라는 논거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 이 구절의 ‘必授天道’는 <續日本記> 권40 환무천황 연력9년조에 인용된 고구려 건국설화의 ‘天帝授籙’이라는 표현에 상응하며, ‘自承元王’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즉위년조의 ‘我方承景命, 欲啓元基’라는 표현과 상응합니다. 시조가 天命을 받아 開國한 사실을 기술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광개토왕의 존재를 표기한 명문으로 이해하려면 ‘天道’나 ‘元王’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 선생님께서는 ‘元王’을 ‘大王’이나 ‘前代の王’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비 5행에 ‘태왕’이 나오며, <광개토왕릉비>에는 ‘전대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先王’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널리 통용되지 않던 ‘元王’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태왕’이나 ‘전대의 왕’을 지칭했다고 볼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 집안비 1행은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로 판독됩니다. 1행의 가장 마지막에 ‘也’라는 종결사가 쓰였는데, 문장구성상 1행 전체의 종결사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안 선생님처럼 ‘□□□□世必授天道自承元王’ 구절은 광개토왕의 존재를 표현한 것이고, ‘始祖鄒牟王之創基也’ 구절만 건국설화를 기술한 것으로 보려면, 건국설화 다음에 종결사를 표기했다는 점에서 ‘□□□□世必授天道自承元王’ 구절 다음에도 이어지는 건국설화 부분과 구분하기 위한 종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 중국 진·한대 이래의 수묘제와 비교하여 고구려의 수묘인도 중국 陵邑의 수묘인들처럼 稅役의 수취 대상으로서 파악되었고, 균평한 조세 수취와 역의 부과를 위해 평소에 담당 관리가 각 가호 현황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면 고구려 수묘인들은 수묘역 이외에 다른 조세와 역역도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 그렇지만 고구려 수묘인과 중국 능읍의 수묘인을 단순 비교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국 능읍에는 수만호의 수묘인이 천사되어 그야말로 陵邑을 이루었던데 비해, 집안비만 놓고 본다면 고구려는 각 왕릉당 20호가 수묘역을 수행했다고 파악됩니다. 고구려의 수묘인이 담당했던 수묘역이 중국 능읍의 수묘인에 비해 훨씬 과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 수묘인들이 일반 농민과 동일하게 수묘역 이외의 각종 조세와 역역도 부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안 선생님께서서는 역대 왕릉에 배치했다는 20烟戶를 부역이나 공물의 부과징수 등을 목적으로 여러 자연호를 묶어 ‘인위적’으로 편제한 課戶로 파악한 다음, 烟戶頭 20인은 이러한 課戶의 대표자라고 보았습니다. 신라촌락문서의 孔烟이 복수의 자연호로 구성된 사실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묘인연호를 인위적으로 편제한 과호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 먼저 고구려가 수묘인연호를 어느 시점에 편호했는지 궁금합니다. <광개토왕릉비>의 기술로 보아 광개토왕대에 이미 여러 정복지역에서 수묘인연호를 징발하는 역역동원체계를 정비했다고 파악됩니다. 이 경우 각 지역에서 수묘인연호를 차출할 당시 이미 편호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 도성인 국내성으로 차출한 다음 편호한 것인지요?

- 그렇다면 <광개토왕릉비> 수묘인연호조에 기술된 각 지역별 수묘인연호는 인위적으로 편성된 課戶인지 自然戶인지도 궁금해집니다. 만약 課戶라면 왜 國烟과 看烟 등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편호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4. 집안비의 입비 목적과 관련해 안 선생님께서서는 수묘인연호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 수묘인 관리대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 등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저도 집

안비가 수묘인연호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립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 그렇지만 수묘인 관리대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집안비를 건립했다는 견해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안선생님의 견해대로 당시 문서행정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집안비가 건립된 것이라면, 수묘인 관리대장은 행정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었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이미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행정문서에 별도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비석을 건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집안비는 律과 令에 입각하여 수묘제를 재정비하고, 수묘인 매매금지 등 더욱 엄격한 관리를 위해 건립했다고 보입니다. 집안비 등 각 수묘비의 뒷면에 수묘인 명단을 새긴 것은 수묘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지 이를 통해 수묘인 관리대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과한 해석이 아닐까요?

空

백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안기의 정치적 성격

장미애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1. 머리말
2. 「사리봉안기」 연구의 주요 쟁점과 「사리봉안기」 검토
3. 무왕 후반~의자왕 초반 政局과 「사리봉안기」의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2009년 1월 14일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1층 최하단 심주석 심주석 상면에서 사리공이 발견되었다. 이 사리공에서는 모두 5층위로 구성된 사리장엄이 발견되었으며, 1층위 중앙에 위치한 金銅製舍利外壺의 남측 벽면에서 金製舍利奉安記(이하 「사리봉안기」)가 발견되었다.¹⁾ 이후 같은 해 1월 19일 문화재청에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²⁾ 사리봉안기의 내용이 일반인에 공개되었다.

익산 미륵사는 『三國遺事』 武王條의 내용을 통해 선화공주의 발원으로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사찰이었다. 그러나 2009년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의 내용은 그간 알려져 있던 것과는 달리 ‘沙宅積德의 딸’ 인 백제 왕후에 의해 창건이 발원되었다고 전하고 있어 백제사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연구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2009년 1월 처음 사리봉안기의 내용이 알려진 직후부터 2009년 한 해에만 5차례에 걸친 학술발표회가 열렸다.³⁾ 하나의 연구주제로 한 해에 이렇듯 많은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1) 배병선·조은경·김현용, 2009,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수습조사 및 성과」 『목간과 문자』 3, 185~189쪽.

2) 문화재청 보도자료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백제 사리장엄(舍利莊嚴) 발견” (2009. 01. 19)

3) 2009년 미륵사 사리봉안기와 관련한 학술발표회로는 한국사사상학회 학술발표회(2009. 03. 14), 신라학회·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익산미륵사지 출토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 (2009. 03. 2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학술회의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2009. 04. 24~25), 고려사학회 미륵사지사리장엄 출토기념 학술회 “익산 백제 미륵사지의 재발견” (2009. 05. 16),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제4회국내학술회의 “미륵사 사리장엄 연구의 쟁점과 전망” (2009. 09. 26) 등이 있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차례에 걸친 학술대회 및 다수의 연구 논문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봉안기」와 관련한 논쟁은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삼국유사』 무왕조와 「사리봉안기」의 기록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리봉안기」와 관련한 연구를 종합·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리봉안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무왕~의자왕 대 전반기까지의 정국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사리봉안기」의 의미를 살피고자 하는 필자의 생각이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연구에 또 하나의 견해를 엮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리봉안기」가 발견된 지 11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망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무왕~의자왕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작으나마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사리봉안기」 연구의 주요 쟁점과 「사리봉안기」 검토

1) 「사리봉안기」 발견 이후 연구의 주요 쟁점

미륵사는 오랜 기간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창건 배경, 창건 시기, 창건 주체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다만, 『삼국유사』 무왕조 내용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미륵사 창건의 주체와 시기 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사리봉안기」가 발견되자 연구자들은 미륵사 창건의 주체와 시기 등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리봉안기」가 발견된 이후에도 미륵사의 창건 시기 및 주체 등과 관련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서는 우선 2009년 「사리봉안기」가 공개된 이후 전개된 논쟁을 창건 주체 및 시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이어질 「사리봉안기」 논의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사리봉안기」 발견 이후 미륵사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창건 주체에 대한 문제였다. 미륵사의 창건 주체와 관련한 기록은 『삼국유사』 무왕조에 전하는 선화공주의 발원에 의해 미륵사가 창건되었다는 내용이 유일하였으나, 그 내용이 설화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서 선화공주의 성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⁴⁾ 「사리봉안기」의 발견 이후 창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다.

4) 김주성 역시 「사리봉안기」 출토 이후의 제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삼국유사』 무왕조를 순수한 설화로 접근할 것인가 사실의 논리로 접근할 것인가, 혹은 사실을 반영하는 설화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주성, 2009,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 출토에 따른 제설의 검토」 『東國史學』 46, 32~33쪽).

미륵사의 창건이 무왕 대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미륵사의 창건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미륵사 창건은 「사리봉안기」에 기록된 사택왕후가 유일하다고 보는 관점이며,⁵⁾ 다른 하나는 창건 주체가 여럿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전자의 경우 「사리봉안기」 발견 이후 「사리봉안기」에 기록된 사택왕후가 유일한 발원자로서 淨財를 희사하여 미륵사를 창건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매우 거세다.

「사리봉안기」의 발견 이후 『삼국유사』에 기록된 선화공주의 발원에 의해 미륵사가 창건되었다는 기존의 견해가 부정당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미륵사 창건과 관련하여서는 사택왕후 외에 다양한 창건주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들도 있다.⁶⁾ 이들 견해에서는 사택왕후가 미륵사 창건의 한 주체였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나 『삼국유사』의 기록과 미륵사의 창건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서탑에서 발견된 금판에 기록된 人名의 예 등을 통해 다양한 세력들이 미륵사 창건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륵사 창건에 다양한 세력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 주목할 점은 창건의 주체로서 무왕을 강조하는 점이 있다. 다만 무왕이 창건을 주도한 시점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먼저 창건 초기에는 『삼국유사』에 이른바 선화공주로 기록된 세력에 의해 창건이 주도되었다가 무왕 후반기에 와서 사씨 세력과의 제휴를 통해 무왕의 주도하에 미륵사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⁷⁾ 이와는 달리 창건 초창기에는 무왕이 주도하였으나 무왕 후반기에 와서는 사택 왕후를 대표로 하는 사씨 세력에 의해 미륵사 건립이 주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도 있다.⁸⁾ 이러한 견해들은 약간의 시기적 차이를 보이나 미륵사 건립에 무왕의 역할

5) 김상현(a), 2009,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7; 김상현(b), 2009,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 사리장엄 彌勒寺의 再照明』, 마한백제문화연구소·백제학회; 김주성, 2009,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 출토에 따른 제설의 검토」 『동국사학』 47; 이용현, 2009, 「미륵사 건립과 사택씨」 『신라사학보』 17; 신종원, 2011, 「사리봉안기를 통해 본 『삼국유사』 무왕조의 이해」 『익산 미륵사와 백제』, 일지사; 김영심, 2013, 「舍利器 銘文을 통해 본 백제 사비시기 국왕과 귀족세력의 권력관계」 『한국사연구』 163.

6) 김수태, 2009, 「백제 무왕대의 미륵사 서탑 사리 봉안」 『신라사학보』 16; 박현숙, 2009, 「百濟 武王의 益山 경영과 彌勒寺」 『한국사학보』 36; 정재윤, 2009, 「彌勒寺 舍利奉安記를 통해 본 武王·義慈王代의 政治的 動向」 『한국사학보』 37; 노중국, 2010,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장미애, 2012,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변화와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85;崔鈺植, 2012, 「彌勒寺 創建의 歷史的 背景」 『한국사연구』 159; 강조원, 2015, 「백제 무왕대의 정국변화와 미륵사 조영」 『백제문화』 54

7) 김수태는 무왕에 의해 서탑에 사리가 봉안함으로써 통합을 강조했으며, 이는 미륵사의 초기 창건을 주도했던 익산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중요성도 함께 말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09, 앞의 논문, 37-38 쪽).

8) 최연식의 경우 『삼국사기』 법왕조에 기록된 왕흥사를 『삼국유사』 무왕조에 기록된 미륵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미륵사는 법왕에 의해 창건되기 시작한 혜왕계 왕실의 원찰로서 무왕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무왕 후반에는 무왕이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국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왕후에 의해 서원과 동원의 건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2012, 앞의 논문, 3-28쪽). 한편 박현숙의 경우 『삼국유사』 무왕조에 전하는 미륵사 창건의 주체는 무왕으로서, 무왕이 아막성 전투의 패전 이후 적극적으로 익산을 경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미륵사 창건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즉, 미륵사 창건은 무왕의 발원에 의해 시작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후 639년 연로한 무왕의 무병장수를 위해 왕후가 서탑 창건을 발원하면서 「사리봉안기」가 남게 된 것으로서

을 강조함으로써 익산경영과 함께 미륵사를 강화된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미륵사 창건과 관련한 두 기록인 『삼국유사』 무왕조와 「사리불안기」에 대한 합리적 해석에 중점을 두고 미륵사 창건의 주체를 설명하는 견해들도 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미륵사 창건 연기 설호를 통해 볼 때 미륵삼존불의 출현을 동기로 3원 3탑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 최초의 기획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택왕후의 발원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서탑이 완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무왕 후반기 정국 운영을 주도할 새로운 동력으로서 강력한 후원자인 사씨 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사씨 세력과 무왕의 타협 속에서 사택왕후가 익산 세력에 의해 추진된 미륵사 건립을 적극 수용하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표적이다.⁹⁾ 이와 함께 중원과 동·서원의 조영 주체를 달리 보면서 미륵사의 초창은 익산 재지 출신의 선화왕비에 추진되어 무왕 20년을 전후한 시점에 완성되었으며, 무왕 후반기에 사택왕후를 중심으로 한 사씨 세력이 동원과 서원을 조영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⁰⁾

이상에서 「사리불안기」의 발견 이후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제 중 하나였던 미륵사 창건의 주체 문제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들 논의는 「사리불안기」에 기록된 사택왕후 한 사람만을 미륵사 창건의 주체로 볼 것인가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대별되고 있다. 이는 미륵사의 창건 시기와도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삼국유사』 무왕조에 전하는 미륵사의 또 다른 이름인 王興寺가¹¹⁾ 『三國史記』에서는 法王2년(600)에 창건이 시작되어¹²⁾ 무왕35년(634)에 완성된¹³⁾ 것으로 전하고 있는 한편,¹⁴⁾ 왕흥사 사리감의 발견으로 왕흥사가 위덕왕24년(577)에 창건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많은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미륵사의 조영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들로는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있다. 미륵사지의 발굴 성과와 미륵사지 출토 인각와를 바탕으로 미륵사가 장기간에 걸쳐 조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미륵사지에 대한 토층조사를 통해 중원 회랑 조영 후 서탑지

이를 통해 볼 때 미륵사는 왕실의 원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세력들을 기반으로 익산에 이궁을 건설하고 미륵사 창건을 이끌어낸 실질적 주체는 무왕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009, 앞의 논문, 344~348쪽). 한편 전해빈의 경우 639년 무렵 의자가 무왕을 대신해 미륵사 완공을 주도하였고 이때 의자왕의 왕후 세력인 사씨 세력이 서탑 건립에 참여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2016, 「彌勒寺 舍利奉安記를 통해 본 義慈王과 沙氏세력」 『한국고대사탐구』 22, 223쪽, 주122). 이는 국왕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미륵사를 조영하는 데 있어 639년을 기점으로 무왕에서 의자왕으로 그 조영 주체가 변화하였다고 설명하는 점, 사택왕후를 무왕의 왕후가 아닌 의자왕의 왕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 정재윤, 2009, 앞의 논문, 39~49쪽.

10) 노중국, 2010, 앞의 책, 436~441쪽; 강종원, 2015, 앞의 논문, 294~304쪽. 노중국은 미륵사에서 발견된 간지명 인각와를 근거로 중원의 완공 시점을 629년으로 비정하였다.

11) 『三國遺事』卷2, 紀異2 武王 “...乃法像彌勒三會殿・塔・廊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 <国史云王興寺.> ...”

12)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法王 “二年春正月, 創王興寺, 度僧三十人.”

13)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三十五年春二月, 王興寺成. 其寺臨水, 彩飾壯麗. 王每乘舟, 入寺行香.”

14) 최연식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왕흥사를 『삼국유사』의 미륵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634년 왕흥사[미륵사]의 완성은 중원이 완성된 것을 기록한 것이며 「사리불안기」에 보이는 639년은 서탑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원의 경우 640년 이후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2012, 앞의 논문, 3~13쪽).

에서 대지를 성토하고 굴광 기단을 축조하였으며, 서탑 조영 이후 석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조 변경이 동탑에서 나타나고 있어 미륵사는 중원 지역의 조성→서탑의 조영(639)→동원 석탑의 조성의 순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⁵⁾ 한편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부여식 수막새가 미륵사지 초창가람의 흔적인지 수리를 위해 사용한 기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륵사 창건은 부여식 수막새의 편년 기점인 600~620년 무렵에 기획되고 조성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륵사식 수막새가 발견되는 630년 무렵에는 대규모의 건축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639년 서탑에 사리가 봉안되고, 을사년(645)으로 편년되는 지지명 인각와가 다량 발견되는 것을 통해 볼 때 통해 불 때 완성은 의자왕 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⁶⁾

이렇듯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륵사의 조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임을 주장한 연구들과 함께 무왕 대 정치 흐름을 바탕으로 미륵사 조영 시기를 추론한 연구도 이어졌다. 이는 미륵사의 초창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견해가 나뉘는데, 무왕 초기부터 미륵사 조영이 시작되었다는 견해와 무왕 재위 기간 중 특정 시점에 조영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신라와의 아막성 전투 패배 직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서 익산이 경영을 시작하면서 미륵사 역시 조영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와¹⁷⁾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무왕 즉위 후 머지않은 시점에 창건이 시작되어 무왕 20년을 전후한 시점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¹⁸⁾ 있다. 이와는 달리 미륵사의 초창이 618년 가잠성을 신라에 빼앗긴 익산세력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하여¹⁹⁾ 무왕 31년(630)의 사비궁 중수와 33년(632) 의자의 태자 책봉을 계기로 무왕을 중심으로 한 만민의 참여로 변화하였을 것으로²⁰⁾ 본 견해도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 미륵사의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그 조영 주체가 누구였는가와 상관없이 대체로 오랜 기간 동안 조영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²¹⁾ 이는 백제사상 최대로 볼 수 있는 미륵사의 규모와 미륵사가 위치한 익산지역이 무왕~의자왕 대에 걸쳐 가지는 역

15) 梁正錫, 2009, 「彌勒寺址 塔址의 調査過程에 대한 檢討」 『한국사학보』 36.

16) 김선기, 2009, 「地支銘 印刻瓦를 통해서 본 미륵사 창건과 몇 가지 문제」 『대발견 사리장엄 彌勒寺의 再照明』, 마한백제문화연구소·백제학회, 102쪽; 2011, 「익산지역의 백제 사지」 『익산 미륵사와 백제』, 일지사, 247~254쪽. 한편 노중국은 간지명 인각와가 丁亥·己丑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정해년부터 기와가 본격적으로 덮이기 시작하여 기축년(629)에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중원의 금당이 완공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10년 뒤인 639년에 서금당과 서탑이 완공되었을 것으로 보았다(2010, 앞의 책, 441쪽). 김주성 역시 노중국의 견해를 바탕으로 629년 중원 금당이 완공되고 639년 서탑의 사리봉안 의식이 거행되면서 그후 어느 시점에 서탑이 완공되었을 것으로 보았다(김주성, 2009, 앞의 논문 42쪽).

17) 박현숙, 2009, 앞의 논문, 342~343쪽.

18) 강종원, 2015, 앞의 논문, 296쪽.

19) 김수태, 2010,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백제문화』 42, 81쪽.

20) 김수태, 2009, 앞의 논문, 34~38쪽.

21) 후보돈 역시 미륵사의 창건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창건 발의에서 완성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리가 봉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주보돈, 2012, 「彌勒寺址 출토 舍利奉安記와 백제의王妃」 『백제학보』 7). 다만 이러한 여러 견해들과는 달리 사택왕후가 ‘造立’ 하였다는 가람을 서원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으며(김상현(a), 2009, 앞의 논문, 26쪽), 가람은 금당·강당·송당·중문·회랑·탑·석등 등의 건물은 물론 한아의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 경내 도량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사리가 봉안된 639년 시점에 미륵사가 낙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김상현(b), 2009, 앞의 논문, 145~148쪽) 있다.

사적·정치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리봉안기」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무왕 후반~의자왕 대 이르는 정국 동향과 관련 하여 「사리봉안기」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

2) 「사리봉안기」 검토

「사리봉안기」에는 앞면에 9글자씩 11줄, 뒷면의 경우 11줄 중 첫줄 10자, 마지막 두 줄 각 8자와 4자로 모두 193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리봉안기」의 앞, 뒷면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보존처리 후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한 몇 글자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판독이 가능할 정도였다.²²⁾ 다음은 판독 후 원문에 대한 해석이다.

A- 가만히 생각건대, 法王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根機에 따라 赴感하시고, 중생에 응하여 몸을 드러내신 것은 마치 물 가운데 비치는 달과 같았다. 이 때문에 王宮에 의탁해 태어나시어 娑羅雙樹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8斛의 舍利를 남겨 三千大千世界를 이익 되게 하셨다. 마침내 [사리가] 五色으로 빛나고 일곱 번을 繞匝하니 그 신통한 변화가 불가사의하였다.

우리 百濟王后께서는 佐平 沙宅積德의 딸로서 오랜 세월[曠劫] 동안 善因을 심으시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勝報]를 받으셨다. [왕후께서는] 萬民을 보살피 기르시고, 三寶의 棟樑이 되셨다. 때문에 ①삼가 깨끗한 재물을 희사하시어 伽藍을 세우고 ②己亥年 正月 29일 사리를 奉迎하셨다.

원하옵건대 세세토록 공양하여 영원토록 다함이 없이 이 善根으로써 우러러 大王 陛下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굳고, 王位[寶曆]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 위로는 正法을 넓히고 아래로는 蒼生을 교화함을 돕게 하소서.

또 원하옵건대 왕후께서는[卽身] 마음이 水鏡과 같아 法界를 비추니 항상 밝고, 몸은 금강과 같아 虛空같이 不滅하시어 七世를 영원토록 모두 福利를 받고 모든 중생이 佛道를 이루게 하소서.²³⁾

「사리봉안기」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처의 功德과 사리의 영험함에 대한 찬미, 두 번째는 백제왕후의 재물 희사를 통한 가람의 조영과 사리 봉안, 세

22) 배병선·조은경·김현용, 2009, 앞의 논문, 189쪽.

23) 이상의 해석문은 김상현의 해석문을(2009(a), 앞의 논문, 18쪽) 참고하여 일부 수정한 것이다. 아래는 해석문에 따라 「사리봉안기」의 판독문을 단락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竊以法王出世, 隨機赴感, 應物現身, 如水中月. 是以託生王宮, 示滅雙樹, 遺形八斛, 利益三千. 遂使光耀五色, 行遶七遍, 神通變化, 不可思議.

我百濟王后, 佐平沙宅積德女, 種善因於曠劫, 受勝報於今生, 撫育萬民, 棟樑三寶. 故能謹捨淨財, 造立伽藍, 以己亥年正月廿九日, 奉迎舍利.

願使世世供養, 劫劫無盡, 用此善根, 仰資 大王陛下, 年壽與山岳齊固, 寶曆共天地同久, 上弘正法, 下化蒼生. 又願王后卽身, 心同水鏡, 照法界而恒明, 身若金剛, 等虛空而不滅, 七世久遠, 並蒙福利, 凡是有心, 俱成佛道.

번째는 대왕폐하와 왕비에 대한 발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리봉안기」의 내용 구성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사택적덕의 딸인 백제왕후가 기록된 두 번째 부분과 사리 봉안 이후의 발원 내용을 기록한 세 번째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미륵사 창건의 주체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후자는 미륵사 창건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가람을 조성한 주체로서 백제왕후가 기록되어 있으며(A-㉓), 己亥年에 사리를 봉안하고 있음이(A-㉔) 이어서 기록되고 있다. 이 부분은 미륵사의 창건 주체 및 창건 시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A-㉓과 A-㉔에 기록된 가람을 조성한 것[造立伽藍]과 사리를 봉안한 것[奉迎舍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를 가지고 별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²⁴⁾ 이에 따르면 두 행위가 함께 일어난 일이라면 ‘己亥年正月廿日’이라는 시점을 기록한 부분이 적어도 가람을 조성하였다는 구절 앞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에서 가람을 창건하고 사리를 봉안하였음을 기록한 두 先例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①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丁亥, 妹兄公主供養舍利.²⁵⁾

② 丁酉年二月十五日, 百濟王昌爲亡王子立刹, 本舍利二枚, 葬時神化爲三.²⁶⁾

B-①과 ②는 6세기 이후 백제 왕실에서 사리를 봉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사리가 봉안된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②의 경우 기록된 내용은 소략하지만 내용 구성에서 발원자, 발원 시기, 사찰과 사리의 봉안 시기, 발원의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리봉안기」의 전체 내용 구성과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앞서 살펴본 「사리봉안기」의 두 번째 부분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 있다. 즉, B-②에 따르면 사찰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는 행위의 시점을 문장의 가장 앞에 둠으로써 두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리봉안기」에서는 ‘造立伽藍’ 한 행위에 뒤이어 ‘奉迎舍利’ 한 행위의 시점을 기록한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사리봉안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분명한 사실은 639년에 淨財를 회사한 사택왕후에 의해 사리가 봉안되었다는 사실에 국한된다는²⁷⁾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만으로 639년에 사택왕후에 의해 미륵사 전체가 창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24) 김영수, 「사리봉안기의 출현과 「서동요」 해석의 시각」 『익산 미륵사와 백제』, 일지사, 97쪽; 주보돈, 2012, 앞의 논문, 39쪽.

25)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 명문

26) 부여 왕흥사지 출토 청동제사리함 명문

27) 주보돈 역시 기해년이 사리를 봉안하고 탑을 만든 해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만으로 미륵사 전체를 같은 해에 조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639년은 사리봉안의 해라고만 한정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2012, 앞의 논문, 37쪽).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사리봉안기」의 세 번째 내용 부분인 사리 봉안에 따른 발원의 부분이다. 이는 두 번째 부분에서 사택왕후가 淨財를 회사하여 가람을 세우고, 사리를 봉영한 뒤에 발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무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왕폐하와 관련한 내용은 의례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거나²⁸⁾ 사원 건립과 사리 봉안에서 대왕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음을 들어 부차적이고 형식적으로 묘사되는 데 그쳤음을 지적하기도 한다.²⁹⁾ 또는 국왕과 왕후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점에서 미륵사를 왕실의 원찰로 보면서도 이와 동시에 왕가인 부여씨와 귀족 사택씨의 영원을 기원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⁰⁾

「사리봉안기」의 내용 왕후의 淨財의 회사를 통한 가람 조영과 사리 봉안, 그에 따른 발원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사리봉안의 전 과정에서 왕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다시 생각한다면 왕후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가람의 조영과 사리 봉안을 통한 발원 대상에 대왕에 대한 발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람의 조영과 사리 봉안의 주체는 왕후 1인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뒤에 이어지는 발원의 대상에는 대왕과 왕후가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륵사는 왕실의 원찰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종교적 聖物을 정치적 선전물로 사용하는 것은 역사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사리 역시 부처의 열반 후 남은 신체의 일부라는 점에서 불교 최고의 성물로 여겨졌으며, 사리를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사리를 정치적 선전물로 이용할 때 대규모의 조형물을 제작하고 의례를 동원하였다.³²⁾ 이러한 조형물 제작과 의례의 과정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함과 동시에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는 기회로 이용한 것이다.³³⁾ 이는 미륵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리봉안기」에 따르면 가람의 조영이 이루어진 이후 사리가 봉안되고 있다. 이 사리를 봉안하는 의식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리봉안기」가 발견된 사리공 안에서 ‘中部德率支受施金一兩’과 시주자의 이름이 새겨진 3점을 비롯하여 금제소형판이 22점 발견되었고, 이외에도 은제관식, 칼, 원형합, 구슬 등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³⁴⁾ 특히 금제소형판에 새겨진 내용을 통해 보면 사비 도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석탑의 사리봉안 의식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³⁵⁾

28) 전해빈, 2016, 앞의 논문, 192쪽.

29) 최연식, 2012, 앞의 논문, 25쪽. 정재윤의 경우 사택왕후가 대왕폐하의 장수를 기원한 것은 이 시기 정권이 의자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견제의 의미라고 하고 있다. 미륵사의 조영이 무왕과 사씨 세력의 타협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사택왕후를 중심으로 한 사씨 세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왕은 부차적 존재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9, 앞의 논문, 49-52쪽).

30) 이용현, 2009, 앞의 논문, 72쪽; 박현숙, 2009, 앞의 논문, 347쪽.

31) 오명지, 2015, 「中國 歷代 王朝의 舍利奉安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7쪽.

32) 주경미, 2003, 「中國 古代 皇室發願 佛舍利莊嚴의 정치적 성격」 『東洋學』 33, 378쪽.

33) 오명지, 2015, 위의 논문, 2쪽.

34) 배병선·조은경·김현용, 2009, 앞의 논문, 193-201쪽.

35) 배병선·조은경·김현용, 2009, 앞의 논문, 193쪽.

앞서 언급하였듯 모든 사리의 봉안 과정이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면, 사리공 안에서 발견된 금제소형판에 기록된 사람들 역시 이러한 정치적 상징 의식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사리를 봉안의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리봉안기」의 내용에서 발원의 첫 번째 대상이 대왕폐하였다는 점은 대왕과 관련한 내용이 의례적 삽입되었다거나 혹은 대왕의 역할이 수동적이었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욱이 왕후의 안녕을 염원하는 것이 왕후의 출신 세력인 사씨 세력의 영원을 비는 것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³⁶⁾

또한 「사리봉안기」의 발원 내용에 따르면 대왕과 왕후의 안녕과 함께 대왕은 ‘위로는 正法을 넓히고 아래로는 蒼生을 교화’ 하며, 왕후와 함께 ‘모든 중생이 佛道を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역시 의례적 표현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경우 국가의 통치에 있어서 대왕과 왕후의 역할을 나누어 각각의 역할에 맞는 통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대왕의 경우 직접적 통치 행위로서 正法에 의한 통치와 교화를 시행하며, 왕후는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대왕과 왕후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며, 미륵사는 왕실의 원찰을 넘어 국가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면 「사리봉안기」의 내용은 639년 시점에 왕후의 공덕에 의해 건립된 가람에 사리를 봉안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대왕폐하와 왕후의 안녕과 그들에 의한 통치의 영원을 기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리봉안기」가 작성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미륵사의 창건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다음 장에서는 무왕 후반~의자왕 즉위를 전후한 시점까지 정국을 살펴봄으로써 미륵사 창건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 무왕 후반~의자왕 초반 政局과 「사리봉안기」의 의미

미륵사 서탑에 사리가 봉안된 639년 무왕이 薨去하기 2년 전이다. 이러한 시점에 「사리봉안기」에는 가람의 조성과 사리 봉안 과정에서 무왕의 역할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는 반면, ‘大

36) 이와 관련하여서는 ‘七世久遠’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이를 ‘七世의 부모’ (김상현(b), 2009, 앞의 논문, 143쪽) 혹은 ‘7세의 부모와 먼 과거의 친속들’ (최연식, 2012, 22쪽)으로 해석하여 사리 봉안의 공덕을 과거의 부모로부터 찾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사리 봉안을 통해 福利를 받아야 할 존재는 왕후 하나가 아닌 먼 과거의 부모로부터 현재 왕후의 부모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며, 이는 곧 왕후만이 아닌 왕후의 출신 세력까지 발원의 대상을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七世를 7번의 轉生을 의미하는 ‘七生’으로 보고, 「사리봉안기」에 기록된 발원의 내용은 사리를 봉안하는 왕후의 공덕을 칭송하고 왕후가 그 공덕으로 인해 果報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란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임혜경, 2015, 「彌勒寺址 出土 文字資料」 『한국고대문자자료연구 백제(상)-지역별-』, 주류성, 378쪽 주17). 「사리봉안기」에 기록에 왕후가 오랜기간 善因을 쌓았다던가 淨財의 회사를 통해 가람을 건립하고 사리를 봉안했다는 등의 내용을 ‘七世久遠’의 주체 역시 왕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발원의 대상 역시 사씨 세력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 왕후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王陛下’로 표현된 무왕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는 점은 무왕 대 후반기 정국의 동향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한 관점을 노출시켰다. 이는 무왕 대 후반 이후 무왕의 왕권과 관련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리봉안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왕 후반~의자왕 즉위를 전후한 시점까지 백제의 정국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의자가 태자로 책봉되는 632년을 전후하여 의자왕이 즉위하여 이른바 ‘親衛政變’으로 일컬어지는 교기를 비롯한 유력 정치 세력의 추방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정치적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리봉안기」의 내용이 품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무왕 후반기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의자의 태자 책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의자의 태자 책봉을 전후한 시기 무왕 대 주요한 사건을 전하는 기사이다.

C-① 31년(630) 봄 2월에 사비의 궁전을 중수하였다. 왕이 熊津城으로 갔다. 여름에 가뭄이 들어 사비의 궁전을 중수하는 일을 중지하였다. 가을 7월 왕이 웅진에서 돌아왔다.³⁷⁾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② 33년(632) 봄 정월 元子 義慈를 太子로 책봉하였다.³⁸⁾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③ (33년; 632) 왕이 生草의 들판에서 사냥하였다.³⁹⁾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④ 35년(634) 봄 2월에 왕흥사가 완성되었다. 그 절은 강가에 있었으며 채색과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왕이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⁴⁰⁾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⑤ (36년; 635)3월에 왕이 측근 신하들을 데리고 沙泚河 북쪽 포구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포구의 양쪽 언덕에 기암괴석이 서있고, 그 사이에 진기한 화초가 있어 마치 그림 같았다. 왕이 술을 마시고 몹시 즐거워하여, 거문고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자 수행한 자들도 여러 번 춤을 추었다. 당시 사람들이 그곳을 大王浦라고 불렀다.⁴¹⁾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⑥ (37년; 636) 가을 8월에 왕이 望海樓에서 群臣에게 잔치를 베풀었다.⁴²⁾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⑦ 39년(638) 봄 3월에 왕이 嬪御들과 함께 큰 못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⁴³⁾ (『三國史記』 권

37) 三十一年, 春二月, 重修泗泚之宮. 王幸熊津城. 夏旱, 停泗泚之役. 秋七月, 王至自熊津.

38) 三十三年, 春正月, 封元子義慈爲太子.

39) 王田于生草之原.

40) 三十五年春二月, 王興寺成. 其寺臨水, 彩飾壯麗. 王每乘舟, 入寺行香.

41) 三月, 王率左右臣寮, 遊燕於泗泚河北浦. 兩岸奇巖怪石錯立, 間以奇花異草, 如畫圖. 王飲酒極歡, 鼓琴自歌, 從者屢舞. 時人謂其地爲大王浦.

42) 秋八月, 燕羣臣於望海樓.

43) 九年, 春三月, 王與嬪御泛舟大池.

27, 百濟本紀5 武王)

C-①~⑦은 의자의 태자 책봉을 전후하여 백제 내부, 특히 무왕의 행적을 알려주는 주요한 기록들이다. 이에 따르면 의자가 태자로 책봉되는 632년(무왕33) 이후 무왕은 사냥이나 佛事, 宴會 등을 제외한 특별한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무왕이 집권 후반기에 들어 정치 일선에 물러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⁴⁴⁾ 그러나 이것이 곧 무왕의 정치적 쇠퇴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무왕 대 주요 정치적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對신라전의 전개이고, 다른 하나는 수·당과의 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왕 24년을 기점으로 신라와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무왕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정국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⁴⁵⁾ 그리고 이러한 정국의 운영은 의자왕의 즉위 후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C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무왕의 국내에서의 행적에서 佛事나 宴會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무왕의 정치적 쇠퇴 혹은 정치 일선에서의 후퇴로 비춰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왕의 행적을 전후하여서는 기존과 같이 대신라전과 당과의 교섭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무왕 후반기에 보이는 불사나 연회 역시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소 억측일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대신라전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사와 연회가 가능했다는 것은 무왕의 왕권이 충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C-⑤에 보이는 ‘대왕포’라는 지명과 「사리봉안기」의 ‘대왕폐하’라는 칭호이다.

C-⑤의 ‘대왕포’와 「사리봉안기」의 ‘대왕폐하’라는 칭호를 통해 볼 때 이 시기 무왕은 ‘대왕’으로 호칭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무왕이 대왕으로 칭해진 것을 태자인 의자에 의한 국정 운영이 현실화되면서 무왕이 上王으로서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⁴⁶⁾ 그러나 백제뿐 아니라 고구려 광개토왕이 생전에 ‘永樂太王’으로 불렸으며,⁴⁷⁾ 신라의 법흥왕이 ‘聖法興太王’이라고 불리는⁴⁸⁾ 등 생전에 활발한 활동을 하던 왕에 대한 ‘대왕’ 칭호를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있는 上王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점이 있다. 오히려 무왕에 대한 ‘대왕’ 칭호는 당시 사람들이 무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왕 중·후반에 6좌평의 설치를 통해 이 시기에 보다 강화된 왕권을 설명한 견해가 주목된다.⁴⁹⁾

44) 姜種元, 2011, 「百濟 武王의 太子 冊封과 王權의 變動」 『백제연구』 54, 157~169쪽; 최연식, 2012, 앞의 논문, 26~27쪽; 전해빈, 2015, 앞의 논문, 208쪽; 강종원, 2016, 앞의 논문, 300쪽; 노중국, 2018, 『백제정치사』, 일조각, 471쪽.

45) 장미애, 2012, 앞의 논문, 237쪽.

46) 강종원, 2011, 앞의 논문, 160쪽.

47) 「廣開土王碑」 “...遷至十七世孫國置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二九登祚, 號爲永樂太王....”

48) 울주천전리각석 乙卯銘 “乙卯年八月四日聖法興太王節道人比丘僧安及以沙彌僧首乃至居智伐村衆士□人等見記”

이에 따르면 기존 정사암회의를 구성하는 최고결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좌평이 관료화되면서 22부사의 상위 조직으로서 행정관료적 성격의 6좌평으로 변모함으로써 왕권과 22부사 사이의 매개자로서 역할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는 정사암회의에 소속된 좌평들을 관료화시킴으로서 국정 전반이 아닌 특정 직무에 종사시킴으로서 왕권에 대립되는 존재가 아닌 왕권에 종속되는 성격으로 변모시켰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⁵⁰⁾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이 가능했다는 것은 무왕 후반기에도 왕권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무왕 후반기 정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자의 태자 책봉은 백제의 대외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 세력의 변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에는 무왕의 의지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624년을 전후하여 백제의 대신라전이 본격화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무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02년(무왕3) 백제는 4만의 大兵으로 신라 아막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⁵²⁾ 이후 617년까지 신라에 대한 백제의 공격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백제가 신라와의 잠정적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⁵³⁾ 보인다. 이 시기는 隋의 통일 이후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수와 교섭하는 한편, 고구려에 대한 견제에 힘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사료가 주목된다.

D-① (45년; 598) 왕이 수나라가 요동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듣고 사신을 파견하여 표문을 바치고, 軍道가 되기를 요청하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년에 고구려가 조공을 바치지

49) 정동준, 2013,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274-286쪽.

50) 정사암회의를 귀족평의체제의 합의제적 전통의 유제이면서 22부사 성립 이전에는 행정조직 전체, 성립 이후에는 외관 전체를 통솔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가(정동준, 2013, 위의 책, 171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만, 좌평이 일종의 귀족회의인 정사암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시기 이러한 귀족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좌평의 역할을 국가 행정 조직 체계 내에 편제시킴으로써 왕권에 귀속된 관료적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했다면, 이는 무왕 대 왕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51) 남정호 역시 의자의 태자 책봉으로 무왕이 현실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섰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이 무왕의 왕권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의자가 국정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왕의 태자로서 국정을 위임받은 것으로 최종 결정은 무왕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남정호, 2016, 『백제 사비시대 후기의 정국 변화』, 학연문화사, 164-165쪽).

52)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三年, 秋八月, 王出兵, 圍新羅阿莫山城[一名母山城]. 羅王眞平遣精騎數千拒戰之, 我兵失利而還. 新羅築小陁・畏石・泉山・甕岑四城, 侵逼我疆境. 王怒令佐平解讎.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乾品・武殷, 帥衆拒戰. 解讎不利, 引軍退於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 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子貴山大言曰, “吾嘗受教於師曰, “士當軍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教乎.” 以馬授父, 即與小將箒項, 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讎僅免, 單馬以歸.”

53) 이에 대해 김수태는 익산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대신라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로 인한 익산 지역의 피해가 심화되면서 익산 세력이 신라와의 대립보다는 우호를 주장하면서 신라와의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설명하였다(김수태, 2010, 앞의 논문, 80-81쪽), 그러나 신라와의 전쟁으로 인한 익산 지역의 인적·물적 피해가 곧 백제의 대외 정책의 방향을 선회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당시 백제의 대외 정책의 방향은 백제 내부의 정세와 함께 백제를 둘러싼 諸國의 동향과 아울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외 정책의 방향의 추이는 백제 내부 정치 세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않고 신하로서의 예절을 갖추지 않았기에 장군들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케 하였는데, 高元의 신하들이 겁을 내며 잘못을 시인하기에 내가 이미 용서하였으니 그들을 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우리 사신을 후대하여 돌려보냈다. 고구려가 그 일을 모두 알고 군사를 보내 우리 국경을 침략하였다.⁵⁴⁾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 ② 8년(607) 봄 3월 扞率 燕文進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게 하였다. 또한 佐平 王孝隣을 보내 공물을 바치면서 고구려를 치자고 요청하였다. 煬帝가 이를 허락하고 고구려의 동정을 살피라고 하였다. 8년 여름 5월 고구려가 松山城을 공격하다가 함락시키지 못하고 다시 石頭城을 습격하여 남녀 3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⁵⁵⁾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D-①은 무왕 대의 일은 아니나 무왕 전반기까지 이어지는 백제의 대외 정책과 일관되어 있다. D-①·②에 따르면 백제는 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고구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수의 건국 이후 요서를 둘러싸고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⁵⁶⁾ 이 과정에서 백제의 수에 대한 고구려 공격 요청은 고구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공격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백제가 왜 이러한 위협을 감수하고 수에 고구려 공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백제의 대신라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백제의 주요한 적대국은 신라였다고 할 수 있다.⁵⁷⁾ 다만, 신라와의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예상되는 고구려의 군사 행동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백제의 수를 통한 고구려에 대한 견제는 이를 염두에 둔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백제의 행동은 오히려 고구려의 공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⁸⁾ 이러한 고구려의 공격은 백제의 대신라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의 의도와는 달리 수를 통한 고구려 견제가 실질적 효과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고구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자 475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한 한성 함락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

54) 王聞隋興遼東之役，遣使奉表，請爲軍道。帝下詔曰，“往歲高句麗不供職貢，無人臣禮，故命將討之，高元君臣恐懼，畏服歸罪，朕已赦之，不可致伐。”厚我使者而還之。高句麗頗知其事，以兵侵掠國境。

55) 八年，春三月，遣扞率燕文進，入隋朝貢。又遣佐平王孝隣，入貢兼請討高句麗。煬帝許之，令覘高句麗動靜。夏五月，高句麗來攻松山城，不下，移襲石頭城，虜男女三千而歸。

56) 이정빈, 2018, 『고구려-수 전쟁』, 주류성.

57) 장미애, 2019,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 정책과 백제-신라 관계의 추이」 『사림』 68, 189~190쪽.

58) 다만, 이때 이루어지는 고구려의 공격은 475년 장수왕의 한성 함락과 같은 대대적인 공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598년, 607년의 공격은 각각 백제의 변경에 대한 공격, 송산성·석두성에 대한 공격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수와의 대립이 격화되어 가던 상황에서 고구려 역시 이전과 같이 백제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시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고구려는 수를 통해 자신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백제의 시도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정도에서 백제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기 보다는 방어를 위한 노력에 더 힘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602년 전투에서의 대패로 인한 후유증도 신라에 대한 공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만든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⁹⁾ 무왕은 아막산성에 대한 공격이 실패한 뒤 신라가 小陀, 畏石, 泉山, 甕岑을 쌓고 백제의 변경을 침입한 데 대한 반격으로 좌평 解讎에게 4만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신라를 공격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백제군은 대패하고 해수만이 겨우 단신으로 돌아왔다. 이 전투에서 4만이라는 대규모의 병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백제는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⁶⁰⁾ 관산성 전투에서 대략 3만의 병사를 잃었던 백제가 이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생각할 때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백제에서 약 10여 년 간 대외 전쟁이 거의 없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⁶¹⁾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무왕 전반기에는 고구려와의 관계, 아막성 전투에서의 대패 등이 요인이 되어 신라와의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무왕 전반기에는 대신라 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띠고 있었던 세력이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⁶²⁾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554년 이후 백제의 주요한 적대국이 신라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백제의 신라에 대한 소극적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던 고구려와의 관계 변화와 602년 전투에서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면 신라에 대한 공격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었다.

고구려와 수의 관계는 598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과 이에 대한 수의 대응 이후 607년까지 대체로 和義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었다.⁶³⁾ 607년 8월 수 煬帝가 동돌궐 순행 중 啓民可汗의 장막에서 고구려 사신을 맞닥뜨린 사건은⁶⁴⁾ 이후 고구려와 수의 관계에서 변화가 노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612년, 고구려와 수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614년 8월 4일 수 양제가 회군하면서 사실상 종료되었다. 113만 3,800명의 병사를 동원한 수의 피해도 컸으나 이를 막아내야 했던 고구려의 피해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후에도 수 양제의 고구려 공격 의지가 지속되고 있었던 만큼 고구려는 수의 재침에

59) 박종욱, 2013, 「602년 阿莫城 戰鬪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9, 202쪽.

60) 김주성, 1990, 「百濟 泗泚時代 政治史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2쪽.

61) 602년~624년까지 백제의 전쟁 상황을 살펴보면, 백제에 의한 선제공격은 611년 신라 가잠성 공격, 616년 신라 모산성 공격, 623년 신라 늑로현 공격까지 총 3차례에 그친다. 624년 이후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의 전쟁은 대부분 백제의 선제 공격에 의한 것이었던 것(장미애, 2012, 앞의 논문, 237쪽; 박종욱, 2013, 위의 논문, 205쪽)과 비교할 경우 이는 매우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62) 이와 관련하여 신라와의 공존을 주장한 이들이 선화공주로 대표되는 익산 세력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참고 된다(김수태, 2010, 앞의 논문, 76~80; 장미애, 2010, 「무왕의 세력기반으로서 익산의 위상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0, 184쪽).

63) 이정빈, 2018, 앞의 책, 127~138쪽.

64)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十八年, 初煬帝之幸啓民帳也, 我使者在啓民所. 啓民不敢隱, 與之見帝.…”

대비하면서 전후수습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⁶⁵⁾ 이러한 상황은 백제에게 고구려의 공격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⁶⁶⁾

또한 백제는 602년 이후 신라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605년 각산성을 쌓았다는⁶⁷⁾ 기록이 참고 된다. 각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임실 성미산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출토된 五部銘 인각와 등을 바탕으로 성미산성이 백제 사비시기 주요 관방시설로 추정된다고 한다.⁶⁸⁾ 백제가 임실 방면에 성을 쌓았다는 것은 아막성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섬진강以西 지역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백제의 이러한 대신라 방어선은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할 때 전진기지로써의 역할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가 대신라전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가고 있었다. 이는 623년 늑로현에 대한 공격과 연이어 速肅을 비롯한 6城을 함락시킴으로써⁷⁰⁾ 신라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백제의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는 곧이어 백제 내부의 정국 구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624년 이후 무왕 대에 백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1] 624~641년 주요 인물과 활동 내용

시기	이름	주요 활동 내용
627(무왕28)	沙乞	신라 서부 변경의 두 성을 함락시키고 남녀 300명을 포로로 잡음
627(무왕28)	福信	왕의 조카. 당에 사신으로 파견
631(무왕32/舒明3)	豐章	백제왕 의자에 의해 왜에 質로 파견
636(무왕37)	于召	신라 독산성 공격. 옥문곡에서 신라 장군 關川에게 사로잡힘

65) 이정빈, 2018, 앞의 책, 220쪽.

66)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611년(무왕12) 백제에서 수에 國智牟를 보낸 일이다. 이때 백제에서는 수의 고구려에 대한 행군 일자를 묻고 수에서는 席律을 보내 무왕과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隋煬帝將征高句麗, 王使國智牟入請軍期, 帝悅厚加賞錫, 遣尚書起部郎席律, 來與王相謀.). 그런데 이전 백제가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이후 고구려가 백제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던 것과는 달리 고구려는 백제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와의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백제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여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7)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六年春二月, 築角山城.”

68) 박종욱, 2013, 위의 논문, 203쪽.

69) 한편 611년 8월에 백제는 赤嶺城을 쌓고 있는데(秋八月, 築赤嶺城.), 적암성의 위치가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적암성을 쌓기 전 611년 2월에는 백제가 수의 고구려 행군 기일을 묻고 있으며, 그 직후인 10월에는 신라 가잠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있다. 이때 백제가 함락한 가잠성이 대체로 안성시 죽산면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는 점(김태식, 1997,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 백제연구소, 77쪽; 김병남, 2002, 「백제 무왕대의 영역 확대와 그 의의」 『한국상고사학보』 38, 62~63쪽; 김주성, 2009, 「백제 무왕의 대야성 진출 기도」 『백제연구』 49, 43쪽)을 통해 볼 때 백제가 611년 8월에 쌓은 적암성은 고구려에 대한 방비와 신라 가잠성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이 이상 적암성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는 어렵다.

70)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25年) 冬十月, 攻新羅速含·櫻岑·歧岑·烽岑·旗懸·冗柵等六城, 取之.”

624년~641년까지 백제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 중 이름이 명확히 기재된 인물은 [표1]과 같이 4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2명은 신라와의 전쟁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1]에 따르면 624년 이후 벌어진 신라와의 전쟁 중 가장 먼저 그 이름이 기록된 이가 將軍 沙乞이었다. 대부분의 전쟁 기사에서 장수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사건의 이름이 특기된 것은 주목되는 바가 아닐 수 없다.⁷¹⁾

627년 사건의 등장에 대해 이 시기에 사씨 세력의 활동이 본격화하였을 것으로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⁷²⁾ 특히 이때 사건의 등장과 관련하여 사씨 세력이 무왕 후반기 신라와의 전쟁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신라전의 본격화와 함께 사건의 신라전에서의 활약이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리봉안기」에 따르면 사택왕후의 아버지인 沙宅積德은 백제 최고 관등인 佐平이었다. 신라전에서 사건의 활약, 사택왕후와 ‘좌평’ 사택적덕의 존재 등은 무왕 후반기에 사씨 세력의 백제 중앙 정치의 중심 세력을 부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왕 후반기 정치적 변동에서 또 주목되는 이로는 의자왕이 있다. 의자왕은 632년(무왕33)에 태자에 책봉되면서 정치 일선에 등장하였다. 다음은 의자왕이 태자로 책봉까지 5년 동안 백제 내부의 사정을 전하는 사료이다.

- E-① 28년(627) 가을 7월 왕이 장군 沙乞에게 명하여 신라 서부 변경의 두 성을 함락시키고, 남녀 3백여 명을 사로잡았다. 왕이 신라가 侵奪한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크게 군사를 일으켜 웅진에 주둔하였다. 신라왕 眞平이 그것을 듣고 唐에 사신을 보내 위급함을 말하였다. 왕이 그것을 듣고 중지하였다.⁷³⁾(『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 ② (28년; 627) 8월에 왕이 조카 福信을 당에 보내 조공하니, 태종이 백제와 신라가 대대로 원수를 맺어 서로 자주 침공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조서를 보내 말했다.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 ③ 31년(630) 봄 2월에 사비의 궁전을 중수하였다. 왕이 熊津城으로 갔다. 여름에 가뭄이 들어 사비의 궁전을 중수하는 일을 중지하였다. 가을 7월 왕이 웅진에서 돌아왔다.⁷⁴⁾(『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71) 무왕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624년 이전의 기록에서도 백제와 신라의 전쟁에서 활동한 장수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616년(무왕17) 母山城을 공격한 咄奇가 유일하다. 그런데 백기가 참전한 모산성 전투가 이루어진 616년은 이 시기를 즈음하여 백제 주변의 정세가 신라에 대한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백기 역시 무왕 전반기의 신라에 대한 우호적 입장의 정치 세력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2) 김수태, 2010, 앞의 논문, 83쪽; 강종원, 2011, 앞의 논문, 153쪽; 장미애, 2012, 앞의 논문, 231쪽; 김영심, 2013, 앞의 논문, 28쪽; 남정호, 2016, 앞의 책, 168쪽.

73) 二十八年秋七月, 王命將軍沙乞, 拔新羅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 出屯於熊津. 羅王眞平聞之, 遣使告急於唐. 王聞之, 乃止.

74) 三十一年春二月, 重修泗泚之宮. 王幸熊津城. 夏旱, 停泗泚之役. 秋七月, 王至自熊津.

④ (3년; 631) 3월 庚申초하루 백제왕 義慈가 왕자 豐章을 들여보내 質로 삼았다.⁷⁵⁾ (『日本書紀』卷23, 舒明天皇)

⑤ 33년(632) 봄 정월 元子인 의자를 太子로 책봉하였다.⁷⁶⁾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632년 의자의 태자 책봉은 그가 무왕의 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의자를 태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⁷⁷⁾ 의자의 태자 책봉 당시 나이가 이미 40대⁷⁸⁾ 혹은 그에 가까운 나이였을 것이라는 점,⁷⁹⁾ 무왕의 재위 후반기에 가서야 태자에 책봉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의자의 태자 책봉 과정에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E-④에서 풍장을 質로 파견한 주체가 ‘백제왕 의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⁸⁰⁾ 무왕의 재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왕을 의자로 기록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만, 무왕 후반기 정치 세력의 변동 속에서 의자가 태자로 책봉되고 직전의 상황이라는 점을 통해 볼 경우 아직 태자로 책봉되지는 않았으나 의자가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오해가 E-④와 같은 기록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⁸¹⁾

의자의 태자 책봉은 의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자의 태자 책봉을 전후하여 사씨 세력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⁸²⁾ 의자와 사씨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씨 세력의 활동과 함께 의자의 태자 책봉 직전 사비궁의 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E-③) 역시 어느 정도 사씨 세력과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왕 대는 미륵사와 제석사, 왕궁의 조영과 같이 익산에 대한 경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사비궁에 대한 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씨의 세력 기반을 사비지역으로 추정하는 견해를⁸³⁾ 참고한다면 무왕이 사비지역에 대한 준비를

75) 三月庚申朔 百濟王義慈入王子豐璋爲質

76) 三十三年春正月, 封元子義慈爲太子.

77) 金壽泰, 1992, 「百濟 義慈王代의 政治變動」 『한국고대사연구』 5, 59-62; 강종원, 2011, 앞의 논문, 147-152쪽; 장미애, 2012, 앞의 논문, 227-230쪽; 남정호, 2016, 앞의 책, 166-170쪽; 노중국, 2018, 앞의 책, 476-480쪽.

78) 남정호, 2016, 앞의 책, 189쪽.

79) 강종원은 태자책봉 당시 의자의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추정하였다(강종원, 2011, dmlvdl 논문, 149쪽).

80) 諸說에 대해서는 남정호, 2016, 앞의 책, 189-190쪽 주9 참고.

81) 장미애, 2012, 앞의 논문, 230쪽.

82) 필자는 이미 의자의 태자 책봉이 사씨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한 바가 있다(장미애, 2012, 앞의 논문, 231-232쪽).

83)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186쪽. 사비지역을 사씨의 세력 근거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문동석, 2007, 『백제 지배세력 연구』, 해안, 193쪽). 사비로의 천도가 재지세력과의 이해 관계에서 벗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씨 혹은 목씨 등의 역할이 컸을

통해 사씨 세력과 그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자의 태자 책봉에 있어서 사씨가 의자의 지지기반이었다는 점 외에 보다 중요한 것은 무왕의 의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왕 후반기까지 왕권은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자의 태자 책봉이 늦었던 점은 무왕이 당시 정치 세력 사이의 대립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태자의 책봉이 후계 구도를 안정시킴으로써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태자를 중심으로 세력 집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무왕에게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여러 왕비 소생을 중심으로 태자에 대항하는 정치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⁸⁴⁾ 때문에 무왕은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태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무왕 후반기에 들어 의자를 태자로 책봉하였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자왕이 가지고 있었던 대외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의자왕의 즉위 직후 대외 정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삼국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의자왕 즉위 초반기인 의자왕5년(645)까지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의자왕 초반 대외 정책

연대	주요 내용
641	8월 당에 사신 파견
642	2월 당에 사신 파견
	7월 親征을 통해 신라 獼猴城 등 40여 성 함락
	8월 장군 尹忠을 보내 대야성 공격
643	1월 당에 사신 파견
	11월 고구려와 화친. 고구려와 함께 신라 당항성 공격
644	1월 당에 사신 파견
	9월 김유신이 침입하여 7성을 빼앗음
645	5월 당의 고구려 공격에 신라가 참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신라를 습격하여 7성 획득

[표3]을 통해 보면 의자왕의 즉위 직후 5년 동안의 대외 정책 방향은 크게 당과의 교섭과 신라에 대한 공세, 두 가지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44년 9월 김유신의 7성 攻取를 제외하면 모두 백제의 선제공격이었다는 점을 통해 의자왕 초반 신라에 대한 공세가 매우 거세게 이

것이라고 하는 점을 통해 본다면(양기석, 2007, 「백제의 사비천도와 그 배경」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59-63쪽; 정재운, 「사비 천도의 배경과 시행 과정에 대한 고찰」 『선사와 고대』 55, 59쪽) 사비 천도 이후 사씨 세력은 사비지역을 근거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84) 고구려에서는 안원왕 사후 中夫人과 小夫人의 아들을 둘러싸고 麤群과 細群의 대립이 있었으며, 의자왕 대에도 隆과 孝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사이의 대립이 있었다. 특히 융의 경우 의자왕4년(644) 태자로 책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가 태자로 기록되기도 하는 등 의자왕 대 태자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관련 연구는 윤진석, 2011, 「백제멸망기 ‘태자’ 문제의 재검토」 『지역과 역사』 29, 124~129쪽 참고).

투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자왕 초반기의 대신라 정책은 무왕 후반기의 그것을 계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⁸⁵⁾

이와 같은 의자왕 초반기의 대외 정책 방향을 무왕 대 의자의 태자 책봉과 관련하여 생각할 경우 무왕은 의자가 자신의 대외 정책을 계승할 인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자를 후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⁸⁶⁾ 이러한 무왕의 결정에는 의자를 지지하고 있던 사씨 세력의 대신라전의 참전이라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왜 사택왕후가 미륵사 조영에 참여하였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는 미륵사의 상징성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륵사를 왕실의 원찰 혹은 왕실과 사씨 세력의 영원을 염원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미륵사가 가지는 상징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미륵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다. 이는 미륵사 서탑의 사리공에서 발견된 금제소형판 등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미륵사의 조영은 왕실을 넘어 백제 국가 전체의 영원을 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미륵사 조영의 주체는 선화 혹은 사택왕후 등이 아닌 무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왕은 이를 통해 백제의 국력을 결집시키고 보다 강력한 국가로의 발돋움을 기원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리봉안기」에 무왕의 치세가 영원하고 정법으로 통치되어 창생이 교화되기를 기원한 것과 왕후가 만민을 불도를 이루도록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록된 것은 왕과 왕후에 의한 백제 국가의 온전한 통치의 영원을 담아낸 것이었다. 익산이 사씨 세력과 이렇다 할 친연성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택왕후가 미륵사의 조영에 동참한 것은 무왕을 중심으로 한 미륵사 조영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4. 맺음말

2009년 미륵사지 서탑에서 「사리봉안기」가 발견되면서 학계에서는 미륵사의 창건 배경을 비롯하여 무왕 대 백제사에서 정치·불교의 단면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창건 주체와 시기를 비롯하여 미륵사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미륵사 창건 연기 설화의 내용이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일정 부분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 미륵사의 조영과 관련한 정치·사회적 배경의 복잡함 등

85) 장미애, 2012, 앞의 논문, 237쪽.

86) 무왕 역시 즉위 직후 아막산성 공격을 명하는 것을 통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신라에 대해 攻勢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관산성에서의 패전은 3만의 병사를 잃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聖王의 죽음에 주는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백제 왕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설욕해야 하는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무왕 역시 이러한 백제 왕실의 기본적 입장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신라에 대한 공세가 소강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자 무왕은 다시 신라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사리봉안기」의 내용만으로는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리봉안기」를 통해 639년 왕후의 공덕으로 서탑에 사리를 봉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왕 폐하와 왕후의 안녕과 그들에 의한 통치의 영원을 기원하였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사리봉안기」는 당대 백제인들이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백제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리봉안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륵사가 창건되고 사리가 봉안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무왕 대, 특히 무왕 후반~의자왕 초반에 대한 백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왕은 재위 기간 내내 ‘대왕’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아막산성 전투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대신라전을 본격화 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의자를 태자로 책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자의 태자 책봉은 무왕의 의지와 함께 당시 의자를 지지했던 사씨 세력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라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사씨 세력은 무왕 후반기부터 의자왕 때까지 백제 중앙 정치에서 중심 세력으로 활약하였다. 이러한 사씨 세력의 활동 가운데 미륵사 조영에의 참여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택왕후의 미륵사 조영에의 참여는 미륵사가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미륵사는 왕실의 원찰을 넘어 강력한 백제국의 상징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미륵사 조영의 실질적 주체는 무왕이었으며, 사택왕후를 비롯하여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공에서 발견된 금제소형관 등에 기록된 다양한 사람들은 이러한 무왕의 뜻에 호응하여 미륵사의 조영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왕은 이를 통해 백제의 국력을 결집시키고, 보다 강력한 백제의 건설을 기원하였을 것이다. 무왕 대 후반 이후 지속된 대신라전에서의 우위는 이러한 무왕의 바람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안기의 정치적 성격」 토론문

박현숙 (고려대학교)

2009년 1월 14일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해체조사 현장에서 사리기 세트와 金製舍利奉安記, 銀製冠飾, 각종 구슬 등 사리장엄 유물 700여점이 출토됨으로써, 백제 무왕 시기는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2009년에만 5차례의 학술회의가 열렸고,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리봉안기의 주인공이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의 딸 백제왕후로 밝혀짐으로써,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다기화 되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산적해 놓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늘의 발표는 기대와 우려의 마음이 교차한다. 그 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해 줄까 하는 기대와,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이다. 발표자의 주요 논지는 토론자의 선행연구(2009년 논문)와 일맥상통하지만, 논증과정이나 소소한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큰 논쟁점은 없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발표문의 충실성

발표문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선행연구사 정리이다. 그런데 선행연구가 충분히 정리된 것 같지 않다. (예를 들면, 미륵사가 오랜 기간 조영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토론자가 이미 2009년 논문에서 황룡사의 사례를 들면서 ‘미륵사 조영은 무왕 즉위 3년 이후 시작되어 동탑까지 축성되는 미륵사의 완공은 무왕 재위 기간을 넘은 의자왕대의 어느 시점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용이 없다.) 또한 이 발표가 연구사 정리 논문이 아니라면, 2장이 본문이 된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기반해서 논지를 전개한 2장에서 정작 선행연구에 대한 각주가 충실하지 않다. 따라서 2장에서도 선행연구에 대한 각주를 충실히 달 필요가 있으며, 2장이 본문인 만큼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성하였으면 한다.

2. 《삼국유사》 기이 武(康)王 조에 대한 해석

이 발표문에서는 선화공주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데, 《삼국유사》 무왕조, 특히 선화공주의 실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3. 논지의 일관성

발표문 6쪽에서 ‘639년에 사택왕후에 의해 미륵사 전체가 창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7쪽에서는 ‘왕후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가람의 조영과 사리 봉안’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미륵사 조영 기간을 길게 보는 선행연구에서는 건립 주체를 여럿으로 보면서, 사택왕후에 의해 조성된 것은 가람이 아니라 서탑으로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사택왕후에 의해 건립된 가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결론에서 ‘사택왕후를 비롯한 사택씨 등 여러 사람들이 무왕의 뜻에 호응하여 미륵사의 조영에 참여한 것’이라는 해석과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4. 무왕 후반기를 보는 시선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무왕 후반기, 특히 재위 33년(632년)에 의자를 태자 책봉한 이후 무왕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것이지 무왕의 권력이 정치적으로 쇠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발표문 9쪽에서 발표자는 이것을 ‘무왕의 정치적 쇠퇴로 볼 수 없다며, 여전히 무왕의 왕권이 강했다.’는 것을 논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이 발표문의 주요 논지로 보인다.

그런데, 1) 무왕 후반기에 왕권이 강했음에 대한 논지로 든 사례들은 무왕 33년 이전의 사례(무왕 8년의 수와의 교섭, 무왕 24년의 대신라전)들이다. 무왕은 재위 기간만 41년으로, 무왕의 재위 시 나이가 18세~20세 정도라고 하면 무왕 재위 33년은 50세가 넘는 나이로 당시로는 고령이었다. 따라서 무왕 후반기는 고령인 무왕이 정치적으로 쇠락한 것이 아니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숭불하고 연회를 행한 것이라고 보는 기존의 견해들이 타당해 보인다.

2) 발표자는 무왕 중,후반에 6좌평 설치를 통해 무왕이 왕권을 강화했다는 설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좌평제 설치를 성왕대로 소급해 보기도 하지만, 무왕대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좌평제를 무왕대로 본다면 《삼국사기》에 기초한 백제 한성·웅진시대사는 다시 쓰여 져야 한다. 당장 발표문의 11쪽 사료 D-② 《삼국사기》 무왕 8년(607)년 조를 보면, ‘수나라에 좌평 양효린을 파견하고 있다.’ 이미 무왕 8년에 좌평이 대중관계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무왕 중,후반에 좌평제가 실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무왕 후반기의 왕권 강화를 설명하는 논지로서는 의미를 상실한다.

무왕 후반기의 왕권강화를 논증하기 위해 발표문 11~13쪽에서는 무왕 전시기의 왕권 강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문 제목이 <사리불안기>의 정치적 성격 고찰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639년 즈음한 무왕 후반기를 왕권 강화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으면 한다.

5. 사씨 세력과 의자의 관계

발표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의자의 지지기반으로 사씨를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씨가 의자의 지지세력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일본서기》 황극천황 원년(642) 조에는 ‘백제에서 작년에 좌평 사택적덕이 죽었고, 국왕의 어머니가 죽었고, 또 아우 왕자의 아들 교기와 누이동생 4명, 내좌평 등 40여명이 섬으로 추방되었다.’는 의자왕 초기의 정변 내용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사택왕후와 의자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발표자는 결론에서 ‘미륵사 조영의 주체는 선화 혹은 사택왕후 등이 아닌 무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무왕은 이를 통해 백제의 국력을 결집시키고 보다 강력한 백제의 건설을 지원하였을 것이며, 무왕대 후반 이후 지속된 대신라전에서의 우위는 이러한 왕의 바람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 하였다. 이는 토론자가 2009년 논문에서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인물로는 선화공주·백제 왕후, 그리고 사택씨 세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후원세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미륵사 창건을 이끌어 낸 주체는 武王이라고 생각된다. …… 무왕 후기에 벌어진 신라전에서 백제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왕의 익산경영과 미륵사 창건은 미륵불국의 이상을 실현하고 국력을 통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지은 것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지 의문이 든다.

空

임나관련 금석문의 재검토

-任那 草拔과 金官國의 역사적 성격

최연식 (동국대학교)

1. 머리말
2. 임나(任那) 초발(草拔)과 금관국(金官國)의 시조 수로(首露)
3. 금관국의 본래 근거지는 김해였는가
4. 금관국(金官國)과 초팔해(草八兮)
5. 맺음말

1. 머리말

임나(任那)는 고대 한반도에 존재했던 주요한 정치세력의 하나로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문헌에 보이고 있지만, 현재 학계의 임나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는 임나에 관한 기록들이 대단히 단편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자료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20세기 전반에 일본제국주의 입장에서 이뤄진 임나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의식과 경계감도 임나에 대한 연구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대의 기록으로 볼 때 임나는 한반도 남부의 주요한 정치세력이었고, 멸망 이후에도 유민들이 상당한 귀속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임나에 대한 연구는 가야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한데,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라도 임나의 실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임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본래 김해에 있던 금관국(金官國)의 이칭(異稱)이었다가 후대에는 경상도 서부지역의 이른 바 ‘가야연맹’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신라말기에 찬술된 승려의 비문에서 금관국 왕실을 임나의 왕족으로 일컬은 내용과 6세기 중엽 신라에 의해 멸망된 대가야 등의 ‘가야’ 지역 정치세력들을 임나의 총칭이라

고 이야기한 『일본서기』의 내용²⁾을 종합한 것으로, 이러한 이해는 임나를 가야사의 일부로 파악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자료 중 임나와 금관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신라말기의 금석문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이해되고 있는 것과 다른 시각에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금석문 자료에 담긴 임나와 금관국 관련 내용 중 일부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임나와 금관국에 대해 금석문의 필자가 이야기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해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해당 금석문의 임나 관련 기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임나와 금관국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임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가야에 대한 이해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임나(任那) 초발(草拔)과 금관국(金官國)의 시조 수로(首露)

924년 4월 경남 창원의 선종사찰 봉림사(鳳林寺)에 건립되었던 (현재는 서울 국립박물관 야외 전시장 소재)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이하 <진경대사비>)는 몇 개 안되는 국내의 임나 관련 문자자료 중에서도 임나와 김유신 집안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즉, 923년에 경명왕(景明王)이 찬술한 이 <진경대사비>에서는 진경대사 심희(審希)의 가계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속성(俗姓)이 신김(新金) 씨이고, 그 선조는 임나의 왕족이며, 원조(遠祖)는 흥무대왕(興武大王) 곧 김유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김유신 계통이 본래 임나 왕족의 후손이며, 신라 사회에서 김씨 왕족과 구별되는 신김(新金) 씨로 일컬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기록에는 이밖에도 임나 및 김유신의 가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초발’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되지 못하였다. 해당 구절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대사의 휘(諱)는 심희(審希)이고, 속성은 신김(新金) 씨이다. 그 조상은 임나(任那)의 왕족이고 초발(草拔)의 성지(聖枝)였는데, 항상 이웃의 군대에 고통받아 우리나라(=신라)에 투항하였다. 원조(遠祖)인 흥무대왕(興武大王, 김유신)은 오산(鰲山, 경주 남산)과 접수(鰈水, 동해)의 정기를 받아 문부(文符)를 잡고 재상의 집안에서 태어나 무략(武略)을 가지고 왕실을 높이 받들었다.³⁾

1)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 자세한 내용은 1장의 내용 참조.

2) 『日本書紀』 19 欽明天皇 “廿三年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 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 合十國.”

3) 景明王 찬술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 “大師, 諱審希, 俗姓新金氏. 其先, 任那王族・草拔聖枝, 每苦隣兵投於我國. 遠祖興武大王, 鰲山稟氣 鰈水騰精, 握文符而出自相庭 携武略而高扶王室.”

위 문장에서 ‘임나(任那)의 왕족이고 초발(草拔)의 성지(聖枝)[任那王族·草拔聖枝]’라는 구절은 진경대사의 조상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임나의 왕족’과 ‘초발의 성지’가 대구(對句)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두 문구가 다 같이 주목되어야 하지만 기존에는 앞의 ‘임나의 왕족’에만 주목하고 뒤의 ‘초발의 성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초발의 성지’가 ‘임나의 왕족’과 대구라는 점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임나 왕족으로 초발성지가’⁴⁾ ‘임나의 왕족이다. 풀에서 싱스러운 가지를 뽑았으나’⁵⁾ ‘임나의 왕족으로, 처음에는 빼어난 왕의 자손이었는데’⁶⁾ ‘임나의 왕족으로, 거친 풀밭에서 싱스러운 가지가 빼어났다’⁷⁾ 등으로 모두 앞의 ‘임나왕족’과 뒤의 ‘초발성지’를 연관 짓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뒤의 ‘초발성지’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채 애매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문장은 전형적인 변려문(駢麗文)으로서, 다음과 같이 전체가 대구를 이루고 있다.

大師，諱審希·俗姓新金氏。

其先，任那王族·草拔聖枝，每苦隣兵·投於我國。

遠祖興武大王，鼇山稟氣·鰈水騰精，握文符而出自相庭·携武略而高扶王室。

세 단락이 각기 주어진 대사(大師), 기선(其先), 원조흥무대왕(遠祖興武大王) 뒤의 구절을 대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任那王族·草拔聖枝’도 대구로 이해되어야 하며, 해석도 ‘임나의 왕족이고 초발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구이므로 내용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즉, 임나와 초발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뒤의 왕족과 성지는 신성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구의 경우에는 상호 교차하여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임나·초발의 왕족이자 성지’라고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임나와 초발은 상호 공통된 무엇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초발의 성지’는 무엇일까. 뒤의 성지가 신성한 후예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초발은 조상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인물이나 부족, 집단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뒤의 원조(遠祖)를 고려하면, 그보다 앞에 서술된 초발은 원조에 선행하는 존재로서 시조나 소속 집단(의 출자)에 해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초발은 임나의 시조나 아니면 김유신 가계의 출자(出自)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출자 집단도 특정한 시조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초발은 임나의 시조 혹은 그와 관련되는 집단을

4) 올림픽준비단(1987), 『서울금석문대관』, 서울특별시, 46쪽.

5)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1992), 『역주한국고대금석문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23쪽.

6) 이지관(1993),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신라편), 349쪽.

7) 김태식 외(2004), 『역주 가야사료집성 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37쪽.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초발은 임나 왕족의 후예인 진경대사의 시조나 출자집단으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진경대사의 원조인 김유신의 경우에도 초발은 시조나 출자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김유신의 시조는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首露王)이다. 따라서 위의 기록이 타당하다면 초발과 수로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초발과 수로는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초발(草拔)과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로 바꾸면 수로(首露)와 의미가 상통하는 사실이 주목된다. 즉, 잘 알려진 것처럼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의하면 수로는 하늘에서 구지 봉으로 내려 온 여섯 개의 알 중에 ‘처음으로 나타나서[始現]’ 수로(首露)라고 이름하였다고 하는데,⁸⁾ 초발(草拔)을 발음이 같은 초발(初發)로 바꾸면 이는 ‘처음 나타나다’는 뜻으로서 수로(首露)와 의미가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일치는 우연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두 단어가 일정한 관련을 갖는 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양자는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서로 다른 호칭, 곧 동의이음(同義異音)이었다고 생각된다.

초발과 수로가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후대에는 수로가 널리 알려졌지만, 자료들의 선후 관계로 볼 때는 초발을 언급하고 있는 <진경대사비>가 수로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여타의 자료들보다 선행하고 있다. <진경대사비>는 신라말인 924년(경명왕 8)에 찬술된 반면 수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현전하는 자료들은 모두 고려시대 이후에 찬술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대가야와 금관국의 시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신라말 최치원의 기록에도 수로에 대한 언급은 없다.⁹⁾ 적어도 현존하는 자료로 볼 때에는 초발이 수로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김유신 사후 곧바로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김유신의 비문¹⁰⁾과 그의 현손이 찬술한 행록을¹¹⁾ 참조하고 있는 『삼국사기』의 김유신 열전에서도 김유신의 조상을 수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¹²⁾ 당시에는 이미 김유신의 시조를 수로라고 이야기하는 전승이 확립된 시기였으므로, 비문과 행록에 수로가 언급되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8) 『三國遺事』 紀異第二 「駕洛國記」 “唯紫繩自天垂而着地，尋繩之下，乃見紅幅裏金合子，開而視之，有黃金卵六圓如日者，衆人悉皆驚喜，俱伸百拜。… 翌日平明，衆庶復相聚集，開合而六卵化爲童子，容貌甚偉，仍坐於床，衆庶拜賀，盡恭敬止。日日而大，踰十餘晨昏，身長九尺則殷之天乙，顏如龍焉則漢之高祖，眉之八彩則有唐之高，眼之重瞳則有虞之舜。其於月望日卽位也，始現故諱首露。…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郡 建置沿革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生大伽倻王惱室朱日 金冠國王惱室青裔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歧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俱荒誕，不可信。” 최치원의 釋利貞傳에서의 인용은 밑줄 친 ‘伽倻山神正見母主，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生大伽倻王惱室朱日 金冠國王惱室青裔二人，’ 부분이다.

10) 『三國史記』 권43 열전 金庾信下 “大王聞訃震慟，贈賻彩帛一千匹·租二千石，以供喪事，給軍樂鼓吹一百人，出葬于金山原，命有司立碑，以紀功名，又定入民戶，以守墓焉。”

11) 『三國史記』 권43 열전 金庾信下 “庾信玄孫 新羅執事郎長淸，作行錄十卷，行於世。頗多釀辭，故刪落之，取其可書者，爲之傳。”

12) 『三國史記』 권41 열전 金庾信上 “金庾信，王京人也。十二世祖首露，不知何許人也。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登龜峯，望駕洛九村，遂至其地開國，號曰伽耶，後改爲金官國。其子孫相承，至九世孫仇玄，或云仇次休，於庾信爲曾祖。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故姓金。庾信碑亦云，軒轅之裔，少昊之胤，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同姓也。”

두 단어의 성격으로 볼 때에도 초발이 수로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초발(草拔)이 변형된 초발(初發)을 같은 의미의 보다 고상한 표현인 수로(首露)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단어의 변화 양상이지만 원래 있던 수로(首露)를 굳이 초발(初發)로 바꾼 후 이를 그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초발(草拔)로 변형시킨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유신 가계의 시조는 본래는 초발로 불리었는데 후대에 보다 고상하고 신비한 의미를 담아서 - 초발(初發)을 거쳐 - 수로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토착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가 처음에는 토착어의 발음에 맞는 한자를 임의로 붙였다가 이후 비슷한 발음이면서 한자로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글자로 바꾸고, 이후에 이를 다시 보다 고상하고 우아한 단어로 바뀌는 변화 양상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토착 지명의 변화 양상에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도동화(刀冬火)는 통일신라 때 도동(道同)으로 바뀌었다가 후에 영주(永州)가 되었고,¹³⁾ 수이홀(首爾忽)도 통일신라에서 수성(戌城)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수안(守安)이 되었고,¹⁴⁾ 빈굴(賓屈) 역시 빈성(斌城)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인의(仁義)가 되었다.¹⁵⁾ 평진현(平珍峴)이 편협(偏嶮)을 거쳐 운암현(雲巖)이 된 것¹⁶⁾이나 파부리(波夫里)가 부리(富里)를 거쳐 복성(福城)이 된 것¹⁷⁾, 비사현(比史縣)이 백주현(栢舟縣)을 거쳐 태강현(泰江縣)이 된 것¹⁸⁾ 등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발이 수로보다 선행하는 것이고, 수로는 초발의 변형체인 초발(初發)에 의거한 것이라면, 『가락국기』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하늘에서 여섯 개의 알이 내려오고 그 중 알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인물이 왕이 되었다는 전승은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초발(草拔)이 초발(初發)로 바뀐 이후에 비로소 출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수로라는 이름은 대가야 시조 전승에 나오는 이진아시(伊珍阿豉)나 뇌질주일(惱室朱日), 뇌질청예(惱室靑裔)¹⁹⁾ 등은 물론 고구려의 주몽(朱蒙)이나 신라의 혁거세(赫居世) 등과 비교해도 매우 세련된 한자 이름이다. 한자 및 한문에 대한 이해가 널리 퍼진 이후에야 이런 이름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13) 『三國史記』 권34 雜志3 地理1 “道同縣, 本刀冬火縣, 景德王改名. 今合屬永州.”

14) 『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2 “戌城縣, 本高句麗首余忽, 景德王改名. 今守安縣.”

15) 『三國史記』 권36 雜志5 地理3 “斌城縣, 本百濟賓屈縣, 景德王改名. 今仁義縣.”

16) 『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2 “偏嶮縣, 本高句麗平珍峴縣, 景德王改名. 今雲巖縣.”

17) 『三國史記』 권36 雜志5 地理3 “富里縣, 本百濟波夫里郡, 景德王改名. 今福城縣.”

18) 『三國史記』 권36 雜志5 地理3 “栢舟縣, 本百濟比史縣, 景德王改名. 今泰江縣.”

19) 『三國史記』 권34 雜志3 地理1 “高靈郡, 本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豉王 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九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縣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 金冠國王惱室靑裔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稱.”

3. 금관국의 본래 근거지는 김해였는가

앞 장에서는 「진경대사비」의 내용을 토대로 김유신 가계 나아가 금관국의 시조가 본래는 수로가 아니라 초발이라는 존재였음을 이야기하였는데, 여기에서 나아가 김유신의 가계 및 금관국의 본래 근거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김유신 가계의 출신국인 금관국을 김해에 있던 가야국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관국과 관련된 사료 중에는 그렇게 보기에 어려운 내용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관국을 김해의 가야국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게 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금관국에 관한 기록들 및 그에 기초한 후대의 지리지 자료들이다.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 영토를 다투다 왕에게 와서 결정해줄기를 청하였다. 왕이 어려워하다가 **금관국(金官國) 수로왕**이 나이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여 불러 물었다. 수로왕이 의견을 내어 다투는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²⁰⁾

금관국주(金官國主) 김구해(金仇亥)가 왕비 및 세 아들[큰아들은 노종(奴宗), 둘째는 무덕(武德), 막내는 무력(武力)이다]과 함께 나라 창고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예로 대우하여 높은 등급의 지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하였다. 아들 무력은 벼슬하여 각간에 이르렀다.²¹⁾

김해소경(金海小京)은 옛 **금관국(金官國)**이다. [혹은 **가락국(伽落國)**이라고도 하고, **가야(伽耶)**라고도 한다.] 시조 수로왕에서부터 10세(世)인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 양(梁)나라 중대통(中大通) 4년(532), 신라 법흥왕 19년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여, 그 땅을 금관군(金官郡)으로 삼았다. 문무왕 20년인 영룡(永隆) 원년(680)에 소경(小京)으로 하였다. 경덕왕이 이름을 김해(小)경으로 바꾸었다. 지금(=고려)은 **금주(金州)**이다.²²⁾

김유신(金庾信)은 왕경(王京) 사람이다. **12세조인 수로(首露)**는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후한 건무(建武) 18년(42) 임인에 구봉(龜峰)에 올라 **가락(駕洛)** 9촌을 둘러보고 드디어 그 땅으로 가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伽耶)**라고 하였다. 후에는 **금관국(金官國)**이라고 바꾸

20)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 婆娑尼師今 “(23년 8월)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2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法興王 “(19년)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22) 『三國史記』 권34 雜志3 地理1 “金海小京, 古**金官國**(一云伽落國, 一云伽耶), 自始祖首露王至十世仇亥王, 以梁中大通四年, 新羅法興王十九年, 率百姓來降, 以其地爲**金官郡**. 文武王二十年, 永隆元年, 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

었다. 그 자손이 계승하여 9세손 구해(仇亥)[혹은 구차휴(仇次休)라고 한다]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이 김유신의 증조부가 된다. 신라 사람이 스스로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金)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김유신의 비에서도 또한 헌원(軒轅)과 소호(少昊)의 후예라고 하였으니 남가야(南加耶)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姓)이다.²³⁾

또 『본조사략(本朝史略)』에서 말하기를 “태조 천복(天福) 5년(940) 경자에 5가야의 이름을 바꾸었으니, 첫째는 금관(金官)[김해부이다], 둘째는 고령(古寧)[가리현(加利縣)이다], 셋째는 비화(非火)[지금의 창녕(昌寧)이다. 고령(高靈)의 잘못으로 생각된다.]이고, 나머지 둘은 아라(阿羅)와 성산(星山)[아라와 성산의 위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아라는 함안, 성산은 경산)과 같다. 성산은 혹은 벽진(碧珍) 가야라고도 한다.]이다.”²⁴⁾

금관(金官) 호계사(虎溪寺)의 파사석탑(婆娑石塔)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金官國)이었을 때에 세조 수로왕의 왕비인 허황후(許皇后)[이름은 황옥(黃玉)이다]가 동한 건무 24년(48) 갑신에 서역의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싣고 온 것이다. …… 금관국은 또한 가락국(駕洛國)이라고도 하였다. 자세한 것은 본기(本記)에 실려 있다.²⁵⁾

금주(金州)는 본래 가락국(駕洛國)이다. 신라 유리왕(儒理王) 18년에 …… 금상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해와 같이 둥근 금색의 알이 있었다. …… 다음날 상자를 열어보니 한 동자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나이는 열다섯 살 쯤 되어 보이는데 용모가 매우 훌륭하였다. … 받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니 이 사람이 수로왕이었다. 나라의 이름을 가락(駕洛)이라고 하고 또 가야(伽倻)라고도 하였다. 후에 고쳐서 금관국(金官國)이라고 하였다. …… 수로왕 이후에 … 구해왕(仇亥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491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었다. 신라 법흥왕이 (구해왕의) 항복을 받아 객례(客禮)로 대우하고 그 나라를 식읍(食邑)으로 하고 금관군(金官郡)이라고 하였다. 문무왕이 금관소경(金官小京)을 두었고, 경덕왕이 김해소경(金海小京)이라고 하였다.²⁶⁾

23) 『三國史記』 권41 열전1 金庾信 上 “金庾信, 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峰,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加耶, 後改爲金官國. 其子孫相承, 至九世孫仇亥, 或云仇次休, 於庾信爲曾祖.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庾信碑亦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同姓也.”

24) 『三國遺事』 紀異第二 「駕洛國記」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古寧(爲加利縣) 三非火(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阿羅, 星山(同前. 星山或作碧伽耶)”

25) 『三國遺事』 塔像第四 「金官城婆娑石塔」 “金官虎溪寺婆娑石塔者. 昔此邑爲金官國時. 世祖首露王之妃, 許皇后名黃玉. 以東漢建武二十四年甲申. 自西域阿踰陀國所載來. … 金官國亦名駕洛國. 具載本記.”

26)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金州本駕洛國. 新羅儒理王十八年 駕洛之長我刁干汝刁干彼刁干等九人 率其民禊飲 望見龜旨峯有非常聲氣 就視之 有金槁 自天而降 中有金色卵圓如日輪. 九人拜而神之奉置我刁干家. 翼日九人咸會開槁而視 有一童子剖殼而生 年可十五 容貌甚偉 衆皆拜賀盡禮. 童子日就岐嶷 歷十餘日身長九尺. 是月望九人遂奉以爲主即首露王也. 國號駕洛又稱伽倻 後改爲金官國. 四境 東至黃山江 東北至伽倻山 西南際大海 西北界智異山. 卽位一百五十八年薨 至九代孫仇亥齋國祭寶物降于新羅. 自首露王以後 居登王麻品王居叱彌王伊尸品

위의 기록들에서는 한결같이 금관국은 김해에 있던 가야 혹은 가락국의 별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금관국은 처음 건국된 이후 줄곧 김해에 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김해의 신라시대 청호인 금관군 및 금관소경은 이 지역에 있던 금관국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 의거하여 금관국이 곧 김해에 있던 가야(가락국)이었고, 이 금관국은 수로왕에 의해 개창된 이후 이 지역에서 발전하다가 김유신의 조부인 구해왕 때에 신라에 항복하여 신라의 군현이 되었고 그 왕족은 경주로 옮겨가 신라의 귀족이 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8세기 초기에 편찬된 『일본서기』의 내용 중에는 이러한 금관국과 김해의 가야(가락국)의 동일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금관국과 김해의 가야(가라)를 서로 다른 나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멸망 시기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계체천황) 21년(527) 여름 6월 갑오(3일), 오우미노게나노오미(近江毛野臣)이 무리 6만을 이끌고 임나(任那)에 가서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南加羅)와 탁기탄(喙己呑)을 다시 일으켜 임나에 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치쿠시(筑紫, 규슈 북부지역)의 국조(國造)인 이와이(磐井)는 몰래 반역을 도모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이와이에게 뇌물을 주어 게나노오미의 군대를 막도록 권하였다. 이에 이와이는 히노쿠니(火國, 규슈 서부지역)와 도요쿠니(豊國, 규슈 동부지역)를 장악하여 중앙정부와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밖으로는 바닷길을 열어 고려, 백제, 신라, 임나 등의 조공선을 끌어들이고, 안으로는 임나(에 가려는) 게나노오미의 군대를 막았다.²⁷⁾

(계체천황 23년, 529) 이 달(=3월)에 오우미노 게나노오미(近江毛野臣)를 안라(安羅)에 보내 신라에게 남가라(南加羅)와 탁기탄(喙己呑)을 다시 일으키도록 권하게 하였다. 백제는 장군군(將軍君) 윤귀(尹貴)와 마나갑배(麻那甲背) 마로(麻鹵) 등으로 하여금 안라에 가서 조칙을 받들게 했다. 신라는 번국(蕃國)의 관가(官家)를 멸망시킨 것을 걱정하여 대인(大人)을 보내지 않고 부지나마례(夫智奈麻禮)와 해나마례(奚奈麻禮) 등으로 하여금 안라에 가서 조칙을 받들게 했다.²⁸⁾

王坐知王吹希王銓知王鉗知王至仇亥王[亥三國遺事駕洛國記作衝] 有國凡四百九十一年 新羅法興王 既受降待以客禮 以其國爲食邑 號金官郡. 文武王置金官小京 景德王爲金海小京.”

27)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廿一年夏六月壬辰朔甲午 近江毛野臣 率衆六萬 欲住任那 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 喙己呑 而合任那 於是 筑紫國造磐井 陰謀叛逆 猶預經年 恐事難成 恒伺間隙 新羅知是 密行貨賂于磐井所 而勸防遏毛野臣軍 於是 磐井掩據火豐二國 勿使修職 外邀海路 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年貢職船 內遮遣任那毛野臣軍.”

28)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勸新羅 更建南加羅・喙己呑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鹵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新羅 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 往赴安

(계체천황 23년, 529) 여름 4월 무자(7일), 임나왕(任那王) 기능말다(己能末多) 간기(干岐)가 조회하러 와서[기능말다(己能末多)는 아마도 아리스등(阿利斯等)일 것이다.] 오오토모노 오오 무라지(大伴大連) 가나무라(金村)에게 “바다 밖의 여러 번국들은 태중천황(胎中天皇, 오진(應神)천황)이 내관가(內官家)를 설치한 때부터 본토(本土)를 버리지 않도록 그 땅을 정해준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어서입니다. **지금 신라는 원래 내려준 영역을 어기고 자주 경계를 넘어 침략해 옵니다.** 청컨대 천황께 아뢰어 신(臣)의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오오토모노 오오무라지는 요청한대로 아뢰었다.²⁹⁾

(계체천황 23년, 529) 이 달(=4월)에 사신을 시켜 기능말다 간기를 보내고, 아울러 **임나에 있는 오우미노 게나노오미(近江毛野臣)에게 (기능말다 간기가) 아뢴 바를 알아보고, (신라와 임나가) 서로 의심하는 것을 화해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에 게나노오미는 웅천(熊川)에 주둔하면서[어떤 책에는 임나의 구사모라(久斯牟羅)에 머물렀다고 한다]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불러 모았다. 신라왕 사리지(佐利遲)는 구지포례(久遲布禮)를 보냈고[어떤 책에는 구례 이사지우나사마리(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라고 한다], 백제는 은솔(恩率) 미등리(彌騰利)를 보내 게나노오미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고 두 왕이 직접 오지 않았다. 게나노오미는 크게 화를 내며 두 나라 사신을 꾸짖으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道)이다. [어떤 책에는 큰 나무의 끝은 큰 나무로 잇고, 작은 나무의 끝은 작은 나무로 잇는다고 하였다] 왜 두 나라의 왕이 직접 와서 천황의 명령을 받지 않고 가벼이 사신을 보내는가. 이제 비록 너희 왕이 스스로 와서 명령을 받겠다 하더라도 나는 명령을 전하지 않고 반드시 쫓아가서 물리칠 것이다. 구지포례와 은솔 미등리는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각기 돌아가 왕을 불러오라.” 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다시 그 상신(上臣) 이질부례지(利叱夫禮智) 간기(干岐)로 하여금[신라에서는 대신을 상신이라 한다. 어떤 책에는 이질부례지(伊叱夫禮智) 나말(奈末)이라 하였다]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명령을 듣고자 하였다. 게나노오미는 멀리서 무기를 든 무리 수천 명을 보고서 웅천(熊川)에서 나와 임나의 기질기리성(己叱己利城)으로 들어갔다. 이질부례지 간기는 다다라원(多多羅原)에 머물며 공경하여(감히?) 돌아가지 않고 석 달을 기다리며 자주 명령을 듣기를 청했지만 (게나노오미는) 끝내 전하러 하지 않았다. 이질부례지가 거느린 사졸들이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다가 게나노오미의 종자인 가와치노 우마카이노오비토(河內馬飼首) 미카리(御狩)와 마주쳤다. 미카리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 숨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주먹을 쥐고 멀리서 치는 시늉을 하였다. 얻어먹는 사

羅 式聽詔勅.”

29)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夏四月壬午朔戊子 任那王己能末多干岐來朝言(己能末多者 蓋阿利斯等也) 啓大伴大連金村曰 夫海表諸蕃 自胎中天皇 置內官家 不棄本土 因封其地 良有以也 今新羅 違元所賜封限 數越境以來 侵 請 秦天皇 救助臣國 大伴大連 依乞秦聞.”

람들이 보고서 “석 달을 삼가 기다리며 명령을 듣고자 했으나 아직도 전하러 하지 않고, 명령을 들으러 온 사신을 괴롭히니, 곧 상신을 속여서 죽이려는 것을 알겠다.” 고 하고, 곧 본 것을 모두 상신에게 아뢰었다. 상신은 4개 촌(村, スキ)[금관(金官)·배벌(背伐)·안다(安多)·위타(委陀)가 4개 촌이다. 어떤 책에는 다다라(多多羅)·수나라(須那羅)·와다(和多)·비지(費智)를 4개 촌이라 하였]을 노략질하여 (그곳의) 사람과 물건을 다 가지고 본국으로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다다라 등의 4개 촌이 노략질 당한 것은 게나노오미의 잘못이라고 하였다.³⁰⁾

(추고천황 8년, 600) 이 해에 사카이베노오미(境部臣)를 대장군으로 하고, 호즈미노오미(穗積臣)를 부장군으로 삼아[들 다 이름이 누락 되었다] 만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임나를 도와 신라를 치도록 하였다. 이에 곧바로 신라를 향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신라에 이르러 다섯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이에 신라왕이 두려워하여 흰 기를 들고 장군의 깃발 아래에 이르러 서서 다다라(多多羅)·소나라(素奈羅)·불지귀(弗知鬼)·위타(委陀)·남가라(南迦羅)·아라라(阿羅羅)의 여섯 성을 떼어 주며 항복을 청하였다.³¹⁾

위의 인용문들에서 보듯 『일본서기』 「계체천황기(繼體天皇紀)」에서는 계체천황 21년(527) 6월에 신라에 멸망한 남가라(南加羅)와 탁기탄(喑己呑) 등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파견한 군대가 구슈 북부에서 발생한 이와이(磐井)의 난으로 1년 반 이상 지체되어 계체 천황 23년(529) 3월에 안라에 도착하였고, 이후 안라에 주둔하며 신라와 협상하였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같은 해 4월에는 신라 군대가 임나의 금관(金官)·배벌(背伐)·안다(安多)·위타(委陀) [혹은 다다라(多多羅)·수나라(須那羅)·와다(和多)·비지(費智)] 등의 4개 촌(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김해의 가야로 추정되는 남가라는 이미 527년 6월 이전에 멸망한 반면 금관국은 529년 4월에 신라에 공격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자를 동일한 정치세력으로 보기는 힘들다. 『일

30)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是月 遣使送己能末多干岐 并詔在任那近江毛野臣 推問所秦 和解相疑 於是 毛野臣次于熊川(一本云 次于任那久斯牟羅) 召集新羅·百濟二國之王 新羅王佐利遲遣久遲布禮(一本云 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 百濟遣恩率彌騰利 赴集毛野臣所 而二王不自來參 毛野臣大怒 責問二國使云 以小事大 天之道也(一本云 大木端者以大木續之 小木端者以小木續之) 何故二國之王 不躬來集受天皇勅 輕遣使乎 今縱汝王 自來聞勅 吾不肯勅 必追逐退 久遲布禮·恩率彌騰利 心懷怖畏 各歸召王 由是 新羅改遣其上臣伊叱夫禮智干岐 新羅 以大臣爲上臣(一本云 伊叱夫禮知奈末) 率衆三千 來請聽勅 毛野臣 遙見兵仗圍繞 衆數千人 自熊川 入任那已叱利城伊叱夫禮智干岐 次于多多羅原 不敬歸待三月 頻請聞勅 終不肯宣 伊叱夫禮智所將士卒等 於聚落乞食 相過毛野臣僂人河內馬飼首御狩 御狩入隱他門 待乞者過 捲手遙擊 乞者見云 謹待三月 佇聞勅旨 尚不肯宣 惱聽勅使 乃知欺誑 誅戮上臣矣 乃以所見 具述上臣 上臣抄掠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 是爲四村. 一本云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 盡將人物 入其本國 或曰 多多羅等四村之所掠者 毛野臣之過也.”

31) 『日本書紀』 권22 推古紀 “是歲 命境部臣爲大將軍 以穗積臣爲副將軍竝闕名 則將萬餘衆 爲任那擊新羅 於是 直指新羅 以泛海往之 乃到于新羅 攻五城而拔 於是 新羅王 惶之舉白旗 到于將軍之麾下而立 割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迦羅·阿羅羅六城 以請服 時將軍共議曰 新羅知罪服之 強擊不可 則奏上 爰天皇更遣難波吉師神於新羅 復遣難波吉士木蓮子於任那 竝檢校事狀 爰新羅·任那 二國遣使貢調 仍奏表之曰 天上有神 地有天皇 除是二神 何亦有畏乎 自今以後 不有相攻 且不乾船舵 每歲必朝 則遣使以召還將軍 將軍等至自新羅 卽新羅亦侵任那.”

본서기』의 다른 곳에서도 남가라와 탁기탄 등의 멸망을 529년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로 서술하고 있다. 즉, 흙명 2년(541)년 7월에 백제의 성(명)왕이 당시 안라에 있던 일본 사신들(임나일본부)에게 일본의 천황이 남가라와 탁기탄 등을 세우라고 명령한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신라가 듣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³²⁾ 이로 보면 『일본서기』에서는 남가라의 멸망과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늦어도 520년대 전반기에는 시작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³⁾

한편 「추고천황기(推古天皇紀)」에서도 추고천황 8년(600)에 일본이 임나를 구원하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였을 때 신라가 다다라(多多羅)·소나라(素奈羅)·불지귀(弗知鬼)·위타(委陀)·남가라(南迦羅)·아라라(阿羅羅)의 여섯 성을 떼어 주며 항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 다다라·소나라·불지귀·위타는 529년 4월에 신라에 정복당한 4개 촌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도 금관국(=소나라)과 남가라는 별개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서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금관국이 김해에 있던 (남)가라(=가야)의 별칭으로 동일한 정치세력이라는 이해는 성립되기 힘들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위의 『일본서기』의 기사들을 정확하지 못한 후대 편찬자의 창작으로 보고서, 그 선후관계에 대해 특별히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527년의 6월 및 529년 3월의 기사에 나타난 내용은 실제로는 529년 4월의 기사에 기록된 내용보다 이후의 일로 보고 있다.³⁴⁾ 즉, 529년 4월의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라의 금관 등 4촌 정복이 바로 남가라를 비롯한 경남 남부지역을 장악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527년의 6월 및 529년 3월의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남가라 등을 복국하려는 시도는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신라가 남가라와 별도의 금관국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양자는 동일한 정치세력인데 다만 그 사실이 전승 과정에서 남가라와 금관국이라는 두 개의 정치세력을 정복한 것으로 잘못 기록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위의 『일본서기』 기록들을 부정확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 기사들의 내용이 금관국과 (남)가야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한국측의 자료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내용에 과장과 오류가

32) 『日本書紀』 권19 欽明紀 “(二年) 秋七月 … 聖明王 謂任那日本府曰, … 天皇 以詔勸 勸立南加羅喙己吞 非但數十年, 而新羅一不聽命 亦卿所知.”

33) 같은 欽明 2년(541) 2월의 백제에서 열린 이른 바 ‘제1차 임나부흥회의’에 관한 기록에서는 성(명)왕이 ‘신라에 속아 천황을 분노하게 하고 임나를 원통하게 한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깊이 참회한다’고 자책하고 있는데(『日本書紀』 권19 欽明紀 “二年 夏四月 …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早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 而今被誑新羅, 使天皇忿怒 而任那憤恨, 寡人之過也 我深懲悔.”), 기사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참회하는 일은 바로 백제가 남가라와 탁기탄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신라에 정복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라가 멸망한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는 7월의 기사와 함께 보면, 『일본서기』에서는 남가라와 탁기탄 등의 멸망을 성(명)왕(재위 523-554) 재위 초기에 있었던 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사기』에서는 법흥왕 11년(524) 9월에 ‘남쪽 국경을 순행하며 땅을 넓혔다고 기록하고 있다.(『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法興王 “十一年 秋九月, 王出巡南境, 拓地 加耶國王來會.”)

34) 末松保和[1956], 『任那興亡史』, 135-138쪽에서 그러한 견해가 제시된 이후 대부분의 연구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많은 『일본서기』의 내용보다는 금관국의 후손들에 의해 정리된 한국측 자료를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서, 그에 어긋나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한국측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히 취사선택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8세기 전반기의 기록이고, 임나에 관한 전승은 이후 일본 왕실과 지배층에서 지속적으로 기억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전승에서 신라가 임나의 영역을 침범한 최초의 사건인 남가라와 탁기탄 등의 멸망에 관해 그와 같이 부정확하고 선후가 뒤바뀐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529년 3월의 계나노오미의 임나 파견은 신라에게 빼앗긴 지역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신라의 남가라 등의 정벌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배치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서, 중요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이처럼 뒤바뀌어서 전승되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 『일본서기』의 내용에 과장과 부정확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과장과 부정확함은 대부분 일본 왕실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성이 의심스러운 설화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다. 일본 왕실의 입장에서 볼 때 신라에 의한 남가라와 탁기탄 등의 탈취는 일본 왕실의 실패를 드러내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실인데, 이러한 실패담을 굳이 중복하여 두 개의 사건으로 기록하거나, 실제 사실보다 더 일찍 발생한 것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서기』의 서술은 그 나름대로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체계에서 신라의 남가라와 금관국 탈취를 별개의 사건이 아닌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일본서기』 기사들의 내용을 존중한다면 금관국과 남가라는 본래 서로 다른 정치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측 자료에는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의 금관(국) 정복 관련 기사에서 신라가 금관(국) 등의 ‘사람과 물건을 다 가지고 본국(=신라)으로 들어갔다(盡將人物 入其本國)’는 구절이 주목된다. 사람을 다 가지고(=데리고) 신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당시의 금관(국) 등에 대한 정복이 일시적인 약탈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을 모두 신라 내부로 옮겨 살게 하는 사민(徙民)의 성격을 띠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도 구해왕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率百姓來降)’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금관(국)의 항복이 본래 근거지에 머물면서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본래 근거지를 떠나서 신라 지역으로 옮겨온 것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금관(국) 사람들은 신라에 정복당한 이후에 자신들의 근거지를 떠나 신라 지역으로 사민되었는데, 그들이 사민된 지역이 바로 김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금관국이 김해의 (남)가라(가야)와 동일시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혹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을 그들이 본래 살던 김해 지역에서 신라 내지로 옮겨 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금관(국) 사람들은 김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게 되어, 이후에 김해 지역이 금관군이 되고 김유신 집안의 근거지로 간주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사민, 특히 해당 지역민 전체의 사민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고구려민들을 집단

적으로 당나라 내지(內地)로 옮긴 사례와 같이 위협의 소지가 있는 피정복 집단에 대해 그들의 근거지를 소멸시켜 그 정치적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지만, 한나라에 복속한 흉노 세력들이 다른 흉노 및 적대적 유목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나라와 가까운 지역으로 옮긴 사례와 같이 복속 집단이 주변의 적대적인 정치세력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관(국)의 사민은 그 지배층이 신라의 지배층에 순조롭게 편입된 것을 고려하면 전자가 아닌 후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즉 금관(국) 사람들은 정복자에 의해 억지로 신라 지역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에 따라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을 찾아 신라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진경대사비」의 ‘(그 조상들이) 항상 이웃의 군대에 고통받아 우리나라(=신라)에 투항하였다.(每苦隣兵, 投於我國)’는 서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일본서기』에서는 신라가 금관(국) 등을 약탈하였다고[抄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라의 보호를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투항하였던 것이다.

신라로 사민된 금관(국)의 구성원 중 구해왕 일가를 비롯한 최고지배층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수도의 주민이 특별한 신분으로 존중되던 고대 사회에서 복속한 정치세력의 주민 모두가 수도에 거주하게 되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이들은 수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었을 텐데 원래의 신라 영토가 아닌 새로 정복한 남가라 지역은 이들의 거주지로서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외부의 집단을 신라 본래의 영역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점령되어 아직 반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자발적으로 귀순한 순종적인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에서도 이민족을 집단적으로 사민할 경우 중국 본토와 외부 세력의 경계지대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서 금관(국)의 신라 복속 시기가 각기 532년과 529년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사민이라는 중간 과정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먼저 529년에 금관(국)의 구성원들이 모두 김해로 사민되었다가, 이후 그들 중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선발을 거쳐 532년에 신라의 지배층으로 인정되어 수도 경주 지역으로 다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선발의 배경에 구해왕과 그 아들들의 대외 전투에서 일정한 전공을 올리는 일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금관국(金官國)과 초팔해(草八兮)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유신 가계 및 금관국의 본래 김해를 근거지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신라에 투항하면서 김해로 근거지를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본래 근거지는 어디였을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진경대사비」에 보이는 김유신

가계의 시조 혹은 출자집단으로 생각되는 ‘초발’과 유사한 발음을 가진 초팔해(草八兮, 합천군 초계면 및 주변지역)라는 지명이 주목된다. 해(兮)는 지명에 붙는 접미사이므로, 초팔해는 초팔(草八) 지역이란 의미가 되는데, 발(拔)과 팔(八)은 발음상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자이다. 현대 중국 어에서도 거의 유사한 발음(拔=bá, 八=bā)이다. 물론 이러한 발음의 유사성은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초팔’ 혹은 ‘초발’이라는 명칭과 비슷한 이름이 다른 곳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이어서 우연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인명과 지명 등을 고유의 발음과 비슷한 한자로 기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발음의 유사성이라면 동일한 대상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초발이 초팔과 마찬가지로 지명의 성격을 띠는 점도 양자가 동일한 대상의 이(異)표기일 가능성 높게 한다. 초발이 지명의 성격을 띠었음은 발(拔)이라는 글자가 백제와 임내[가야] 지역의 지명에서 다수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광개토왕비>에는 영락(永樂) 6년의 백제 침공 당시에 고구려에 함락된 백제의 지명 중에 돈발성(敦拔城)과 □발성(□拔城)이 보이고, 영락 10년의 신라 구원 때에 함락한 지역에 임나가라(任那加羅) 중발성(從拔城)이 보이고 있다. 또한 『북사(北史)』와 『수서(隋書)』 등의 중국 북조계 역사서에는 백제 수도의 이름을 거발성(居拔城)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⁵⁾ 발(拔)이 신라 지역에 많이 보이는 벌(伐)과 비슷하게 백제와 주변 지역에서 지명을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팔해가 위치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합천 동부지역은 또한 대가야와 신라, 백제의 접경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항상 이웃의 군대에 고통받아 신라에 투항하’게 되었다는 금관국의 지리적 상황과도 상통한다. 특히 6세기에 들어와 신라의 (대)가야 지역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백제 역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이들의 대립의 최전선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로의 귀순 이전 금관국은 신라와 이웃 나라, 즉 (대)가야의 경계에서 전쟁에 시달리다가 결국 구해왕 때에 자발적으로 신라로의 집단적 사민을 결정한 것인데, 이는 초팔해의 지리적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초팔해 지역 지배층의 무덤군으로 생각되는 합천 옥전고분군의³⁶⁾ 무덤 양식과 출토품

35) 『翰苑』의 建居狄城, 『通典』의 建居拔城, 『太平寰宇記』의 俱尸拔城 등은 居拔城을 轉寫하는 과정에 생긴 오류로 생각된다.

36) 합천 옥전고분군을 조성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가까운 주변 지역에 多羅里라는 지명을 근거로 하여 『日本書紀』에 任那를 구성하는 국가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多羅國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조영제 [2007], 『옥전고분과 다라국』, 해안, 188쪽). 그런데 최근에 多羅國의 ‘羅’는 ‘내(川)나 천변 지역의 평야’를 뜻하는 那·耶·良 등과 같은 의미의 접미사이지만, ‘다라실’ 혹은 ‘月谷’ 등으로도 불린 多羅里的 ‘羅’는 月の 古語인 ‘드랄·돌라’를 표기한 것이어서 양자를 연결시킬 수 없고, 오히려 ‘다라실(돌실)’이나 ‘다리실(달이실)’을 음제한 것으로 보이는 喙(己呑)國으로 비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전덕제[2011], 『喙國(喙己呑)의 위치와 역사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1, 270-278쪽). 두 가지 견해 모두 옥전고분이 있는 쌍책면과 황강을 마주보고 있는 남쪽의 草溪面 지역을 草八兮(國)으로 보고, 쌍책면은 그와 구분되는 별도의 정치세력(소국)으로 보고 있지만, 초팔해(국) 지역에 설치되었던 八溪縣 및 이를 계승한 草溪縣, 草溪郡 등은 현재의 초계면만이 아니라 황강 너머의 쌍책면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초팔해(국)의 영역도 초계면만이 아니라 쌍책면 일대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초계면 일대에는 고대 정치세력(소국)의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고분군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들의 성격은 단일한 흐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빈번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초까지 진행된 이 고분군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이곳에 축조된 대형 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옥전Ⅱ기]의 것으로 생각되는 23호분의 무덤 형식과 부장품들은 김해-부산 지역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가야계통의 고분인 반면 그 다음 단계[옥전Ⅲ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M1호분과 M2호분에서는 신라계 토기와 신라양식의 마구와 함께 경주 금녕총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로만글라스 제품이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옥전Ⅳ기]의 고분인 M3호분과 M4호분에서는 신라식 토기나 유물들이 사라지는 대신 대가야 양식의 토기와 마구류, 대도(大刀) 등의 위세품이 나타나다가 다음 단계[옥전Ⅴ기]의 고분인 M6호분과 M10호분에서는 기존의 고령양식의 토기와 무기, 마구들이 계승되는 가운데 신라계통의 황구실석실묘와 출(出)자형 보관, 파수배부 등의 유물들이 출현하며, 이 지역 대규모 고분의 마지막 단계[옥전Ⅵ기]인 M11호분에는 백제계 묘제에 백제계 부장품들이 보인다고 한다.³⁷⁾

이처럼 이 지역 지배층의 고분 유적의 무덤 형식과 및 부장품은 단일한 계통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시기를 단위로 하여 빈번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대가야와 신라, 백제 등 자신보다 강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초팔해 지역에 대해 주변 정치 세력들이 번갈아 가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그러한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의 교체는 상당한 군사적 충돌을 수반한 것으로서, 초팔해 지역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주변 정치 세력들의 전쟁의 무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진경대사비」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이웃의 군대에 고통받았’다는 금관국의 상황과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팔과 초발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초팔해는 당연히 임나 및 김유신 가계의 시조 혹은 출자집단인 초발과 관련되는 지역으로서, 본래 금관국이 위치하였던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초팔해 지역이 금관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삼국사기』의 다음 기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파사이사금) 29년(108) 여름 5월, 홍수로 백성들이 굶주렸다. 10도(道)로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창고를 열고 진휼하였다. 군대를 보내 비지국(比只國), 다벌국(多伐國), 초팔국(草八國)을 병합하였다.³⁸⁾

2세기 초의 파사이사금 때의 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삼국사기』에 기록된 초기의 정복 기사들이 후대의 사실을 초기 국왕들의 행적에 소급하여 기록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실제

37) 조영제, 『앞의 책』, 111-125쪽 및 224-229쪽.

38) 『三國史記』 권1 婆娑尼師今 “二十九年, 夏五月, 大水, 民飢, 發使十道, 開食賑給. 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并之.”

이들 나라들에 대한 정복 시기는 보다 후대일 가능성도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때에 병합한 나라로 초팔국(草八國)과 함께 언급된 나라들의 이름이 『일본서기』에서 529년에 금관(國)과 함께 신라에 정복된 지역의 이름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서기』에서는 금관(國)[須那羅]과 함께 정복된 지역으로 배벌(背伐)[비지(費智)], 안다(安多)[다다라(多多羅)], 위타(委陀)[화다(和多)]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삼국사기』 기사인 비지국(比只國)과 다벌국(多伐國)의 이름은 각기 비지(費智)[배벌(背伐)] 및 다다라(多多羅)[안다(安多)]와 유사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금관(國)의 본래 위치는 초팔해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위 기사의 초팔국을 금관국과 같은 것으로 보면 위 기사에 나오는 세 나라는 모두 529년에 신라가 정복한 지역과 통하게 된다. 서로 다른 기사에 나오는 동일한 시기에 한꺼번에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이 이와 같이 유사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데, 아마도 이들 지역이 서로 가깝게 이웃해 있어서 한 차례의 정복 전쟁으로 모두 병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파사이사금 때에 차지했던 초팔해와 그 주변 지역을 후대에 (대)가야에 빼앗겼다가 529년에 다시 회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팔해를 금관국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대가야 시조와 금관국 시조를 형제로 이야기하는 대가야의 시조 전승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대가야)는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혹은 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 한다]에서 도설지왕(道設智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16대 지속되었다.[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釋利貞傳)』을 살펴보니 “가야산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천신(天神)인 이비하(夷毗訶)의 정기를 받아 대가야왕(大伽倻王) 뇌질주일(惱室朱日)과 금관국왕(金官國王) 뇌질청예(惱室靑裔) 두 사람을 낳았다.” 고 하였으니 뇌질주일은 아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수로왕(首露王)의 별칭이다. 그러나 『가락국고기』의 여섯 알의 이야기와 함께 모두 허황되어서 믿을 수 없다.³⁹⁾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인용된 『석이정전』에 나오는 위의 대가야국 시조 전승에 의하면 대가야의 시조인 뇌질주일과 금관국의 시조인 뇌질청예는 다 같이 가야산신인 정견모주의 아들로 천신인 이비하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형제 사이였다. 이러한 전승은 금관국이 본래 고령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고령과 초팔(=초팔해)은 다 같이 가야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곳에 성립된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을 가야산신의 후예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관국을 김해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 시조를 김해에서 멀리 떨어진 가야산신의 아들로 비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위의 기록에 대한 기존의 해석 중에는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다.’ 까지를 최치원의 『석이정전』에서 인용된 문장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는 문장의 해석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문장의 전후

3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郡 建置沿革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珍朱智)至道設智王, 凡十六世.(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 金冠國王惱室靑裔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 不可信.)”

맥락으로 볼 때 『석이정전』에서의 인용은 정전모주가 뇌질주일과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다는 부분까지이고, 그 다음의 문장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자가 부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로왕을 금관국의 시조로 이야기한 것은 최치원이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자로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수로가 금관국의 시조라는 전승은 고려시대를 거치며 당연한 사실로 확립되어 있었고, 이에 영향 받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자는 『석이정전』에 나오는 금관국왕 뇌질청예를 당연히 수로와 동일시 하였던 것이다.

한편 위의 대가야 시조 전승은 대가야와 금관(국)이 원래 대등하면서도 매우 긴밀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대가야(=임나가라)가 본격적으로 국가적 위상을 갖추고 등장하던 당시에 고령과 그 남쪽의 초발(=초팔해) 지역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치세력을 이루었고, 그것이 위와 같은 시조 전승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금관(국)의 후예인 김유신 가계가 후대에 자신들을 임나(가라)의 왕족이라고 일컬었던 것도 금관(국)이 대가야(=임나가라)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고, 그 지배층이 대가야(=임나가라)의 왕족을 자처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금관국이 본래 초팔해(국)이었다면 언제부터 금관국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금관국의 금관(金官)이라는 한자어 이름의 별칭인 수나라(須那羅)나 소나라(素奈羅)라는 고유어 명칭이 신라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수나라나 소나라는 쇠(=철)의 나라라는 뜻으로서, 한자어 금관(金官)이 고유어를 번역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 등에 전하는 신라의 인명이나 지명들과 동일한 성격이다. 그런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야 지역의 지명으로서의 예외적인 것이다. 다른 가야 지역 정치세력의 이름들은 모두 고유어를 한자로 표현한 음차어(音借語)들로 보이는데, 그 한자 발음이 나타내는 이름들은 어떠한 의미의 단어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이처럼 금관 혹은 그 별칭인 수나라(須那羅)나 소나라(素奈羅)라는 이름이 다른 가야 지역의 지명과 성격이 다르고, 오히려 신라의 지명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것은 이 이름이 본래의 이름이 아니라 후대에 이 지역이 신라의 영향을 받게 된 이후에 형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지역 지배층의 고분들에서 신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옥전Ⅲ기]에 이러한 이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나라 이름의 변경이라는 것은 정치체제의 변화나 국가 성격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에 초팔해국이 신라의 일부로 편입되어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진경대사비>의 임나 관련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관국의 시조로 알려진 수로(首露)는 초발(草拔)이라는 호칭이 후대에 변화된 것이고, 금관국의 본래 이름도 초발과 유사한 초팔해(草八兮)국으로, 그 본래 위치도 김해가 아닌 합천 동부의 쌍책면-초계면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살펴보았다. 금관국이 김해에 있었다고 하는 인식은 금관국의 유민들이 김해에 자리 잡고 생활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금관국이 본래 김해에 있던 것이 아니라면 금관국 왕실의 후예를 임나왕족으로 칭한 <진경대사비>의 기록을 근거로 김해를 임나의 본거지로 보는 이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김해 지역은 『일본서기』에서 임나에 속하는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가야 등 10개 정치세력에도 들어 있지 않다. 김해가 가야의 근원지라는 점에서 임나는 김해의 원(原)가야(=구야국)와 구별되는 별도의 정치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진경대사비>에서 금관국 왕실의 후예를 임나의 왕족으로 일컫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서기』에서 언급한 임나를 구성하는 정치세력 중에 금관국(=초팔해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6세기 당시에는 이미 금관국(=초팔해국)이 이미 독립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라 다른 정치세력에 예속된 일부 지역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일본서기』에서는 신라의 금관(=소나라) 정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금관(=소나라)을 국(國)이 아닌 촌(村, スキ)으로 일컫고 있다. 이미 독립적 정치세력의 위상을 잃어버렸음에도 여전히 임나의 왕족으로 칭해졌다는 사실에서 임나와 임나 왕족의 성격에 대한 일정한 시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임나와 김해의 원(原) 가야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임나와 관련된 자료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임나와 가야의 기원 및 발전,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이해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함께 금관국이 김해의 구야국과 동일시되고 시조 수로에 대한 전승이 형성, 발전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임나관련 금석문의 재검토 -任那 草拔과 金官國의 역사적 성격」 토론문

김재홍 (국민대학교)

이 논문은 <진경대사비>에 나오는 ‘임나왕족(任那王族) 초발성지(草拔聖枝)’라는 구절을 실마리로 초발=수로(首露)가 동의이음어라는 인식 아래 금관국이 『삼국사기』에 보이는 초팔해국(草八兮國)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계의 움직일 수 없는 통설이라는 금관국이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이며, 이는 변한 구야국과 연결된다는 기존 학설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신학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도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의문을 품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설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임나를에 대하여 금석문 자료를 통해 재인식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동안 이 구절에 대해서는 임나왕족에 초점을 맞추어 금관국이 임나라는 증거의 하나로만 언급이 되고 전체 문장이 가진 의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지 않았습니. 이번에 발표자가 그동안 의미가 불확실하였던 초발(草拔)을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료를 찾는 노력의 결실로 보입니다. 이미 발표자는 <광개토대왕릉비>에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반파’라는 국명을 찾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도 하여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문은 기존 학계의 통설에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기본 사료인 금석문 자료를 대상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경청하여야 하는 발표로 사료됩니다. 금석문과 사료를 새로이 해석하는 부분은 대부분 찬성하는 바입니다. 발표문 자체는 논리적인 서술로 전개되고 있어 기존 견해와 비교하면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1. 초발(草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삼국유사』 소재 「가락국기」에 따르면 수로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나타나서’라고 하였으며, 이것의 원래 용어는 초발(初發)이었다가 후에 초발(草拔)로 바뀌었다가 고려시대에 수로(首露)로 정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발은 초팔해국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팔해국은 역시 처음 건국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팔해국은 당시 어떤 뜻이나 사물에서 나온 것입니까.

2. 사료 비판 및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금관가야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명쾌한 해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체기에 “상신은 4개 춘

(村)[금관(金官)·배벌(背伐)·안다(安多)·위타(委陀)]가 4개 촌이다. 어떤 책에는 다다라(多多羅)·수나라(須那羅)·와다(和多)·비지(費智)를 4개 촌이라 하였다” 와 “다다라(多多羅)·소나라(素奈羅)·불지귀(弗知鬼)·위타(委陀)·남가라(南迦羅)·아라라(阿羅羅)의 여섯 성을 떼어 주며 항복을 청하였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연구사적으로 다다라·수나라·와다·비지의 4촌은 일반적으로 금관가야를 구성하였던 읍락을 보고 있으며 이 중에서 국읍인 수나라가 금관국, 즉 금관가야를 대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비지(불지귀)를 창녕의 비자벌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 발표자와 같이 넓은 지역에 걸친 임나의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발표자가 설명한 대로 뒤에 “남가라(南迦羅)·아라라(阿羅羅)” 라는 지명이 나오므로 수나라를 김해의 금관가야로만 볼 수 없을 듯합니다. 또한, 4촌의 지명을 『삼국사기』에 나오는 비지국(比只國), 다벌국(多伐國), 초팔국(草八國)과 연결시킨 것은 일견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지와 비지, 다벌과 다다라는 음이 상통합니다만, 초팔과 금관은 음운상으로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금관국과 초팔해국의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유신 가계 및 금관국이 김해를 근거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금관국이 멸망한 후에 김해 지역으로 사민하여 후대에 김해지역에 금관국이 있었다고 인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5세기 전반에 쇠락하면서 그 주민의 일부는 고령의 대가야(문헌사학, 김태식)로, 일부는 합천의 다라국=옥전고분군(고고학, 신경철, 김두철 등)으로 이주하였다는 것과는 대치되는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견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합천 저포 E지구 4호묘에서 발견된 “하부(下部) 사리리(思利利)” 명 항아리와 우륵 12곡의 지명과 관련하여 합천지역에 하부, 혹은 하가라도(下加羅都)가 있었다는 연구성과입니다. 고령지역은 상부(上部), 혹은 상가라도(上加羅都)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합천지역의 초팔해국=금관국과 고령지역의 대가야=반파국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야 멸망 후에 김유신 가문과 도설지 가문(김태식 견해)의 관계와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과 의의

권인한 (성균관대학교)

- I. 머리말
- II.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및 표기자 정리
- III.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6세기 신라 금석문 11종을 대상으로 이들에 쓰인 고유명사 표기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성모·운모·성조 등의 분포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지닐 수 있는 음운사적 의의, 특히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에 목표를 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기존에 발굴된 6세기 신라 금석문들 중에서 훼손이 심하거나, 고유명사 표기례의 숫자가 충분치 않아 본고의 논의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산·황초령 진흥왕순수비 및 경주 남산신성 3·4·5·6·7·8·10비”를 제외한 “포항 중성리비(501)~경주 남산신성 1·2·9비(591)”에 이르는 11종의 금석문들에 대한 원문 구조 분석,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및 표기자 정리 등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보일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수집·정리된 각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성모 분포도, 운모 분포도, 성조 분포도 및 疑·來母字 분포도 등을 바탕으로 ①무기음(전청) vs. 유기음(차청)의 비율, ②무성음(전청+차청) vs. 유성음(전탁+차탁)의 비율, ③설두음 vs. 설상음의 비율, ④치두음 vs. 정치음의 비율(이상 성모편), ⑤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 및 개음절 vs. 폐음절의 비율, ⑥성조의 분포(이상 운모편), ⑦음소 분포 제약 등 권인한(2015)의 제2부 국어학적 연구편에서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론으로¹⁾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분포적 특징 및 흐름을 살펴본 후, 이들을 통한 6세기 신라 한자음의 경향 파악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1) 본고의 분석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권인한(2015)와 동일한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각종 분포도를 제시함에 있어서 字種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延字數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분포론적 특징들에 대한 해석상의 균질성을 기하고자 한 것에 있음을 밝혀둔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본문에서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후, 이 글을 포함하여 최근 필자의 일련의 논의들에서 드러난 바를 바탕으로 6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신라한자음의 흐름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이 방면의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의 아낌없는 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II.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및 표기자 정리

이 장에서는 다음 장의 논의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포항 중성리비(501)에서 경주 남산 신성비(591)에 이르기까지 6세기 신라 금석문 11종에 대한 판독 및 해석문을 토대로 원문 구조 분석²⁾,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및 표기자 정리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1. 포항 중성리비(501)³⁾

1) 亲已 (𪛗𪛗𪛗) [中] [斯^折盧(A) 𪛗…

喙^部(A) 習智(B) 阿干支(C), 沙喙(A) 斯^德智(B) 阿干支(C) 教.

2) 沙喙(A) 爾抽智(B) 奈麻(C), 喙^部(A) 卒智(B) 奈麻(C), 本牟子 喙(A) 沙利(B) 夷斯利(B) 白:

“爭人 喙^評(A) 公斯弥(B), 沙喙(A) 夷須(B), 牟旦伐喙(A) 斯利(B) 壹伐(C) 皮朱智(B), 本波喙(A) 柴(B) 干支(C) 弗乃(B) 壹伐(C), 金^評(A) 𪛗(B) 干支(C) 祭智(B) 壹伐(C),

使人 奈蘇毒只(a) 道使 喙(A) 念牟智(B), 沙喙(A) 鄒須智(B),

世令 于^干居伐(A) 壹斯利(B), 蘇豆古利^木(a) 仇鄒列支(B) 干支(C) 沸竹休(B) 壹金知(C), 那音支^木(a) 卜^𪛗(B) 干支(C) 乞斤(B) 壹金知(C), 玕伐(A) 壹^𪛗(B).

(教)云: ‘豆智(B) 沙干支(C) 宮, 日夫智(B?) 宮 奪爾, 今更還 牟旦伐喙(A) 作民.’ ”

3) 沙干支(C) 使人 [果] 西牟利(B) 白口 “若後世更濫人者 與重罪.”

典書 與牟豆(B) 故記, 沙喙(A) 心刀哩(B) [口].

2) 원문 구조 분석의 기본적인 틀은 『신라문자자료 I·II』(국립경주박물관, 2017·2019)의 원고 집필자인 이용현 선생의 “원문 끊어읽기”의 방식을 준용한 것임을 밝혀 謝意를 표한다.

※ 밑줄(): 고유명사[(A): 상위 지명(국명/부명 등), (a): 하위 지명, (B): 인명, (C): 관등명, (d): 직명 및 기타], 기울임체: 한문적 요소, ^X: 이체자, [X]: 추독자(잔존 자형이나 비편 또는 문맥으로 추독되는 글자 포함), {YZ}: 상하 합자, Y²⁷: Y자로 판독되나 Z자일수도 있음, 𪛗: 미상자(파손자 포함).

3) 이 비문의 판독, 해석 및 원문 구조 분석은 권인한(2020, 곧 나옴)을 바탕으로 부분 수정한 것이다. 다만, 본고의 초점이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에 있음과 원고 분량을 고려하여 원문에 대한 해석문은 원문 구조 분석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임을 밝혀둔다.

(1) 포항 중성리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⁴⁾

A: [斯]廬, 金評, 喙評, 牟旦伐喙², 本波喙, 沙喙⁵, 喙⁴(喙部² 포함), 于居伐, 珍伐

a: 那音支村, 蘇豆古利村, 奈蘇毒只

B: 乞斤, 公斯弥, 仇鄒列支, 念牟智, 豆智, 卜[圖], 弗乃, 果西牟利, 沸竹休, 斯德智, 斯利, 沙利, 習智, 柴, 心刀哩, 與牟豆, 夷斯利, 夷須, 爾抽智, 壹[圖], 日夫智, 壹斯利, 祭智, 卒智, 鄒須智, 皮朱智

C: 干支⁴, 沙干支², 阿干支², 奈麻², 壹金知², 壹伐³

(1') 포항 중성리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⁸ 居 乞 古 公 果 仇 斤 金³ 那 乃 奈³ 念 旦² 德 刀 毒 豆³ 列 廬 利⁶ 哩 麻³ 牟⁵ 弥(=彌) 伐⁷ 卜 本 夫 弗 沸 斯⁵ 沙⁸ 西 蘇² 須² 習 柴 心 阿² 與 于 音 夷² 爾 壹⁷ 日 祭 卒 朱 竹 只 支¹⁰ 智¹⁰ 知² 珍 抽 鄒² 波 評² 皮 喙¹⁰ 休

<자종(字種) 63, 연자수(延字數) 145>

2. 포항 냉수리비(503)⁵⁾

1) <前面> 斯羅(A) 喙(A) 斯夫智(B) 王·乃智(B) 王, 此二王 教: “用珎而麻村(a) 節居利(B) 爲證爾, 令其得財教耳.”

癸未年九月廿五日, 沙喙(A) 至都廬(B) 葛文丑(C) 斯德智(B) 阿干支(C) 子宿智(B) 居伐干支(C), 喙(A) 爾夫智(B) 壹干支(C) 只心智(B) 居伐干支(C), 本彼(A) 頭腹智(B) 干支(C), 斯彼(A) 暮斯智(B) 干支(C), 此七王等共論 教: “用前世二王教爲證爾, 取財物, 盡令節居利(B) 得之教耳.”

2) 別教: “節居利(B) 若先死, 後令其弟兒斯奴(B) 得此財教耳.”

別教: “末鄒·斯申支(B) 此二人後莫更導此財, <後面> 若更導者 教其重罪耳.”

3) 典事人 沙喙(A) 壹夫智(B) 奈麻(C) 到廬弗(B) 須仇[休](B), 喙(A) 耽須(a) 道使 心訾公(B), 喙(A) 沙夫(B) 那斯利(B), 沙喙(A) 蘇那支(B) 此七人跟[圖]² 所白了事, 煞牛拔誥故記 <上面> 村主 與支(B) 干支(C) 須支(B) 壹今智(C) 此二人世中了事 故記.

(2) 포항 냉수리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斯羅, 本彼, 斯彼, 沙喙³, 喙⁴

4) ※어깨번호는 빈도수, 취소선(×)은 분석 대상 제외자들임을 표시함. 이하 같음.

분석 대상 제외자들은 1) 미상자(圖), 2) 한문 요소, 3) 판독상 異見이 큰 글자(‘Y’²² 제시자 일부), 4) 고유명사 구조상 타 비문에 비해 차이가 현저한 지명 후부 요소(중성리비 ‘-喙’) 등임을 밝혀둔다.

5) 이 비문의 판독 및 원문 구조 분석은 권인한(2020)을 바탕으로 부분 수정한 것이다.

a: 珍而麻村, 耽須

B: ˆ斯夫智, 乃智, 那斯利, 到盧弗, 頭腹智, 末鄒, 暮斯智, 斯奴, ˆ斯德智, 沙夫, 斯申支, 蘇那支, 須仇休, 須支, 心訾公, 與支, 爾夫智, 壹夫智, 子宿智, 節居利³, 至都盧, 只心智

C: 葛文王, 干支³, 居伐干支², 奈麻, 阿干支, 壹干支, 壹今智

(2') 포항 냉수리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⁷ 葛⁵ 居⁵ 公⁴ 仇² 今² 那² 乃² 奈² 奴² 德² 到² 都² 頭² 羅² 盧² 利⁴ 麻² 末² 暮² 文² 伐² 腹² 本⁴ 夫⁴ 弗⁸ 斯⁴ 沙⁴ 蘇⁴ 須³ 宿³ 申² 心² 阿² 與² 爾² 而² 壹³ 子³ 訾³ 節³ 只¹¹ 支¹⁰ 智¹⁰ 至² 珍² 鄒² 耽(=耽) 彼² 喙⁷ 休 <자중 51, 연자수 114>

3. 울진 봉평리비(524)⁶⁾

1) 甲辰季 正月 十五日, 喙⁷(A) 牟即智(B) 寐錦丑(C), 沙喙⁷(A) 徙夫智(B) 葛文丑(C), 本波⁷(A) 夫智(B) 干支(C), 岑喙⁷(A) 美昕智(B) 干支(C), 沙喙⁷(A) 而粘智(B) 大阿干支(C) 吉先智(B) 阿干支(C) 一羞夫智(B) 一吉干支(C), 喙⁷(A) 勿力智(B) 一吉干支(C) 慎宍智(B) 居伐干支(C) 一夫智(B) 太奈麻(C) 一爾智(B) 太奈麻(C) 牟心智(B) 奈麻(C), 沙喙⁷(A) 十斯智(B) 奈麻(C) 悉爾智(B) 奈麻(C) 等 所教事.

2) 別教令: “居伐牟羅(A) 男弥只(a), 本是奴人, 雖是奴人, 前時王大教. 法道俠阡隘爾, 耶界城(A) 失火遶城, 我大軍起. 若有者一行起之, 人備土事, 王大奴人(a) 貪共值五, 其餘事種種奴人法.”

3) 新羅(A) 六部 煞斑牛 [訓][評]. [處]事大人 喙⁷(A) 內沙智(B) 奈麻(C), 沙喙⁷(A) 一登智(B) 奈麻(C) 莫次(B) 邪足智(C), 喙⁷(A) 比須婁(B) 邪足智(C), 居伐牟羅(A) 道使 卒次(B) 小舍帝智(C), 悉支(A) 道使 烏婁次(B) 小舍帝智(C), 居伐牟羅(A) 尼牟利(B) 一伐(C) 弥宜智(B) 波旦(C) 紐只斯利(B) 一金智(C). 阿[尺]兮杖(a)使人 奈爾利(B) 杖六十, 葛尸條杖(a)使人 奈爾利(B) 居[尺]尺(C), 男弥只杖(a)使人 翼[尺]尺(B) 杖百, 於即斤利(B) 杖百, 悉支(A) 軍主 喙⁷(A) 爾夫智(B) 奈麻(C).

節 書人 牟玆斯利公(B) 吉之智(C) 沙喙⁷(A) 善文(B) 吉之智(C),

新人 喙⁷(A) 述刀(B) 小烏帝智(C), 沙喙⁷(A) 牟利智(B) 小烏帝智(C),

立石碑人 喙⁷(A) 博士(C).

于時 教之: “若此者獲罪於天.”

居伐牟羅(A) 異知已(B) 下干支(C) 辛日智(B) 一尺(C) 世中[字] 三百九十八.

(3) 울진 봉평리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6)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도 권인한(2020)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분 수정한 것이다.

A: 新羅, 居伐牟羅⁴, 本波部⁶, 沙喙部⁶, 悉支², 耶界城, 岑喙部, 喙⁷(喙部⁶ 포함)

a: 葛尸條村, 男弥只²(村), 大奴村, 阿尺兮村

B: 圖夫智, 吉先智, 內沙智, 奈爾利², 尼牟利, 莫次, 牟利智, 牟心智, 牟即智, 牟珍斯利公, 勿力智, 弥宜智, 美昕智, 比須婁, 徙夫智, 善文, 述刀, 慎宍智, 辛日智, 悉爾智, 十斯智, 於即斤利, 烏婁次, 爾夫智, 而粘智, 異知巳, 翼圖, 一登智, 一夫智, 一羞夫智, 一爾智, 卒次, 組只斯利

C: 葛文王, 寐錦王, 干支², 居圖尺, 居伐干支, 吉之智², 奈麻⁶, 夫阿干支, 博士, 邪足智², 小舍帝智², 小烏帝智², 阿干支, 一吉干支², 一金智, 一伐, 一尺, 太奈麻², 波旦, 干干支

(3') 올진 봉평리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⁸ 葛² 居⁶ 界公 斤金 錦吉⁵ 男² 內奈¹⁰ 奴尼 旦大刀 登羅⁵ 力婁² 利⁷ 麻⁸ 莫寐 牟⁹ 文² 勿 弥(=彌)³ 美伐⁶ 本夫⁵ 比徙 斯³ 沙⁷ 舍² 邪² 先善 羞須 述尸 慎新 辛悉³ 心十 阿³ 耶於 烏³ 宍宜 爾⁵ 異而 翼一⁹ 日岑 粘帝⁴ 條(=條) 足² 足卒 即(=卽)² 之² 只³ 支¹⁰ 智²⁹ 知 珍次³ 尺³ 組(=綻) 巳(=巴) 波² 兮 喙¹⁴ 昕

<자중 85, 연자수 241>

4. 울주 천전리 서석(525, 539)⁷⁾

(가) 원명

1) 乙巳[年] 沙喙部(A) [葛]文丑(C) 覓遊來, 始得見谷之.

古谷 无名, 谷 善石得, 造[書]ᄃ(=之).

以下 爲名 書石谷, 字作[之].

2) 并遊 友妹 [麗]德(d)·光妙(d)·於[史]鄒(B)女郎 三之.

[食]多熬 作功人 尔利夫智(B) [太奈]麻(C)·悉得斯智(B) 大舍帝智(C),

作食[人] [榮]知智(B) 壹吉干支(C) 妻 居知尸奚(B)夫人, 眞宍智(B) 沙干支(C) 妻 阿兮牟弘(B) 夫人,

作書人 [募]ᄃ 尔智(B) 大舍帝智(C).

(나) 추명

1) 過去 乙巳年 六月 十八日 味, 沙喙部(A) 徙夫知(B) [葛]文丑(C) 妹 於史鄒(B)女郎 三[并]遊來 以後 [年] 八² [年] 過去 妹王考 妹王 過[人] 丁巳年 王 過去, 其王妃 只沒尸兮(B)妃 愛

7) 이 명문들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이문기(1992), 박병철(2006), 성균관대학교박물관(2008), 국립경주박물관(2019)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自思.

2) 己未年 七月 三日 其王与妹, 共見 書石叱見來谷.

此時 共三來, 另即智(B)太王妃, 夫乞支(B)妃, 徙夫知(B)王 [子]郎 深[夫知(B)] [共]來.

此時 賊作[臣] 喙部(A) 知礼夫知(B) 沙干支(C), [泊六知(B)] 居伐干支(C),

[臣] 丁乙尔知(B) [奈]麻(C),

作食人 眞宍知(B) 波玠干支(C) 婦 何[太]牟呼(B)夫人,

[夫知(B)] 居伐干支(C) 婦 [一][利][次(B)]夫人,

[次(B)] [干支(C)] 婦 沙[次(B)]夫人, 共作之.

(4) 울주 천전리서석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沙喙部², 喙部

B: [次], [泊六知], [夫知], 居知尸奚, 另即智, 募募爾智, 夫乞支, 沙[次], 徙夫知², 悉得斯智, 深[夫知], 阿兮牟弘, 於史鄒², 榮知智, 爾利夫智, 一利[次], 丁乙尔知, 知礼夫知, 只沒尸兮, 眞肉智~眞肉知, 何太牟呼

C: [干支], 葛文王², 居伐干支, 奈麻, 大奈麻, 大舍帝智², 沙干支², 壹吉干支, 波玠干支

d: 光妙, 麗德

(4') 울주 천전리서석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⁷ 葛² 居³ 乞 吉 奈² 得(=得) 禮 六 利² 麻² 募² 牟² 沒 另(=牟~武)⁸ 文² 泊 伐² 夫⁷ 斯 沙⁵ 史² 徙² 舍² 尸² 悉 深 阿 於² 榮 宍(=肉)² 乙 尔(=爾)³ 一 壹 丁 帝² 即(=卽) 只 支⁸ 智⁸ 知¹¹ 珍 眞² 次² 鄒² 太 波 何 奚 兮² 呼 弘 喙³ <자중 54, 연자수 119>

5. 단양 적성비(545-550?)⁹⁾

1) [年] 月中 王敎事.

大衆等 喙部(A) 伊史夫智(B) 伊干[支](C),

[沙][喙][部](A) 豆弥智(B) 波玠干支(C),

喙[部](A) 西夫叱智(B) 大阿干[支](C)·[夫智(B)] 大阿干支(C)·內礼夫智(B) 大阿干支

8) 「另」자는 신라 속자의 하나로서 「牟」자나 「武」자와 상통하는 글자다. “全即智寐錦王”<울진 봉평리 비>~“另即智太王妃”<울주 천전리서석_추명>, “武力智阿干支”<단양 적성비>~“另力智逆干”<창녕 진흥왕척경비, 북한산·마운령 진흥왕순수비>. 「另」자의 연원이나 그 음가에 대한 논의는 별고를 기약하겠거니와, 본고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另」자의 음가를 잠정적으로 「牟」자와 「武」자에 각각 1/2씩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임을 밝혀둔다.

9)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주보돈(1992a), 남풍현(2000), 장경준(2009), 성균관대학교박물관(2008), 국립경주박물관(2019)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C),

高頭林城(A) 在[軍]主等 喙部(A) 比次夫智(B) 阿干支(C),
 沙喙部(A) 武力智(B) [阿][干][支](C),
 [鄒]文村(a) 幢主 沙喙部(A) 導設智(B) 及干支(C),
 勿思伐城(A) [幢][主][喙]部(A) 助黑夫智(B) 及干支(C).

2) 節敎事. 赤城(A) 也尔次(B) [] 中, 作善[]^通 懷慙 力使 死人. 是以後 其妻 三[](B?)
 [] 許利之 四年. 小女 師文[] 公兄 鄒文村(a) 已玆婁(B) 下干
 支(C), [] [前]者, 更 赤城(A) 烟 去使之. 後者, 公[兄][] 異葉耶 國法
 中 分与. 雖然 伊[](B?) [] 子, 刀只(B) 小女, 烏礼兮(B) 撰干支(C) []
 使法 赤城(A) 佃舍法 爲之. 別 官賜[] [弗兮(B) 女, 道豆只(B), 又悅利已(B) 小子, 刀羅兮(B)
 [] 合五人之.

3) 別敎: 自此後 國中 如也尔次(B) [] 懷慙 力使 人事. 若其生子女 子年少[]
 [] 兄弟耶. 如此白者 大人耶 小人耶..

4) [] [喙]部(A) 奈弗耽郝失利(B) 大舍(C), 鄒文[村](a) [] 勿思伐城
 (A) 幢主使人 那利村(a) [] 人 勿支次(B) 阿尺(C), 書人 喙部(A) []
 [] 人 石書立人 非今皆里村(a) [] 智(B) 大烏(C) 之.

(5) 단양 적성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高頭林城, 勿思伐²城, 沙喙³部, 赤城³(烟), 喙⁶部a: 那利村, 非今皆里村, 鄒文³村

B: [] 夫智, [] 智, [] 弗兮, 內礼夫智, 奈弗耽郝失利, 道豆只, 刀羅兮, 導設智, 刀只, 豆
 弥智, 武力智, 勿支次, 比次夫智, 西夫叱智, 也尔次², 烏礼兮, 又悅利已, 伊史夫智, 助黑夫智, 已
 玆婁, 三[](?), 伊[](?)

C: 及干支², 夫舍, 夫阿干支³, 夫烏, 阿干支², 阿尺, 伊干支, 撰干支, 彼玆干支, 干干支

(5') 단양 적성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¹¹ 皆 高 今 及² 那 內 奈 刀² 道 導 豆² 頭 羅 力 礼(=禮)² 婁 利³ 里 林 武 文³ 勿³ 弥
 (=彌) 伐² 夫⁶ 弗² 比 非 史 舍 思² 沙³ 三 西 設 失 阿⁶ 也² 悅 烏² 又 伊³ 爾² 助 只² 支¹² 智¹⁰
 珍² 叱 次⁴ 撰 尺 鄒³ 耽 巳(=巴)² 彼(=彼) 郝 兮³ 喙⁹ 黑

<자중 61, 연자수 139>

6. 창녕 진흥왕척경비(561)¹⁰⁾

1) 亲巳年二月一日立.

[寡]人幼[年]承基, 政委輔弼, [俊][智], 行[悉]事未[立][哭]思赦[四]方[攷]囚[地]土[隘]陝也. 占[文]人普於山与心[耶]. 初除林[權]然[此]卅而已. 土地疆[畝], 山林也. 大等与軍主·幢主·道使与外村主審[照]. 故[土]海州(a?) 白田·畚与山[河]川.

2) [教]以[人][然]之. 雖不[心]河[杖]与[之]. 其餘少小事知古[法]者[以上]大等与古奈末(d)典[法]况[人]与上[此]以[看]其身受[割].

3) 于時, [大][智](B) 葛文丑(C),
 [者] 漢只(A) [屈珥智](B) 大一伐干(C),
 [沙]喙(A) [智](B) 一伐干(C),
 [折夫智](B) 一尺干(C),
 [智](B) 一尺干(C),
 喙(A) [夫智](B) 迺干(C),
 沙喙(A) 另力智(B) 迺干(C),
 喙(A) 小里夫智(B) [干](C),
 沙喙(A) 都設智(B) 沙尺干(C),
 沙喙(A) 伐夫智(B) 一吉干(C),
 沙喙(A) 忽智(B) 一[干](C),
 [喙](A) 弥利[次公](B) 沙尺干(C),
 喙(A) 余亡智(B) 沙尺(C),
 喙(A) 述智(B) 沙尺干(C),
 喙(A) [干](B) 沙尺干(C),
 喙(A) 比叶[智](B) 沙尺干(C),
 本[^]波(A) 末[智](B) 及尺干(C),
 喙(A) [智](B) [干](C),
 沙喙(A) 刀下智(B) 及尺干(C),
 沙喙(A) [智](B) 及尺干(C),
 喙(A) 鳳安智(B) [干](C),

10)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노중국(1992a), 성균관대학교박물관(2008), 국립경주박물관(2017), 정현숙(2018)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𑖦𑖦等	喙(A) 居七夫智(B) 一尺干(C), [喙](A) 一夫智(B) 一尺干(C), 沙喙(A) 甘力智(B) 𑖦𑖦干(C),
𑖦大等	喙(A) 末得智(B) 𑖦尺干(C), 沙喙(A) 七聰智(B) 及尺干(C),
四方軍主 比子伐(A)軍主	沙喙(A) 登𑖦𑖦智(B) 沙尺干(C),
漢城(A)軍主	喙(A) 竹夫智(B) 沙尺干(C),
碑利城(A)軍主	喙(A) 福登智(B) 沙尺干(C),
甘文(A?)軍主	沙喙(A) 心夫智(B) 及尺干(C),
上州行使大等	沙喙(A) 宿欣智(B) 及尺干(C), 喙(A) 次叱智(B) 奈末(C),
下州行使大等	沙喙(A) 春夫智(B) 大奈末(C), 喙(A) 就舜智(B) 大舍(C),
于抽·悉𑖦·𑖦西阿郡(a)使大等	喙(A) 北尸智(B) 大奈末(C), 沙喙(A) 須什夫智(B) 奈[末](C),
旨爲人	喙(A) 德文(B) 奈末(C),
比子伐停(d)助人	喙(A) 覓薩智(B) 大奈末(C),
書人	沙喙(A) 導智(B) 大舍(C),
村主	𑖦聰智(B) 述干(C), 麻叱智(B) 述干(C).

(6) 창녕 진흥왕척경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甘文, 本¹波, 碑利城, 比子伐, 沙喙¹⁵, 漢城, 漢只, 喙¹⁹

a: 𑖦西阿郡, 悉𑖦, 于抽, 海州

B: 𑖦𑖦𑖦𑖦, 𑖦𑖦𑖦𑖦智, 𑖦𑖦𑖦屈珎智, 𑖦𑖦夫智, 𑖦𑖦折夫智, 𑖦𑖦𑖦智³, 𑖦智, 甘力智, 居七夫智, 德文, 都設智, 導智, 刀下智, 登𑖦𑖦智, 另力智, 麻叱智, 末𑖦智, 末得智, 𑖦聰智, 覓薩智, 弥利𑖦次会, 伐夫智, 福登智, 鳳安智, 北尸智, 比叶𑖦𑖦智, 小里夫智, 須什夫智, 宿欣智, 述智, 心夫智, 尔亡智, 一夫智, 竹夫智, 次叱智, 春夫智, 就舜智, 七聰智, 忽智C: 𑖦𑖦𑖦𑖦², 𑖦𑖦𑖦干², 𑖦尺干, 葛文王, 及尺干⁶, 奈末³, 夫奈末³, 夫舍², 夫一伐干, 沙尺, 沙尺干⁸, 述干², 一𑖦𑖦, 一吉干, 一伐干, 一尺干⁴, 迺干²

d: 吉奈末, 比子伐停

(6') 창녕 진흥왕척경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²⁸ 葛² 甘² 居⁶ 屈⁶ 及⁶ 吉⁷ 奈⁷ 德⁷ 刀⁷ 導⁷ 都⁷ 得⁷(=得) 登² 力² 利² 里² 麻² 末⁹ 亡⁹ 奚⁹ 另⁹(=牟~武) 文³ 弥³(=彌) 伐⁵ 福⁵ 本⁵ 鳳⁵ 夫¹⁰ 北¹⁰ 碑¹⁰ 比³ 沙²⁴ 舍² 薩² 西² 設² 小² 須² 宿² 舜² 述³ 尸³ 悉³ 心³ 阿³ 安³ 于³ 尔³(=爾) 一⁹ 子² 迺² 折² 竹² 只² 智³⁸ 珍² 叱² 次² 尺²⁰ 聰² 抽² 春² 就² 七² 波² 下² 漢² 叶² 忽² 喙³⁴ 欣 <자종 75, 연자수 271>

7. 마운령 진흥왕순수비(568)¹¹⁾

1) <陽面> 太昌元年 歲次戊子 [八][月] 廿一日 [癸][未], [眞]興(B) 太王(C) 巡狩[管][境] 刊石銘記也. 夫純風不扇 則世道乖眞, 旨化不敷 則邪爲交競. 是以, 帝王建号 莫不修己以安百姓. 然朕歷數當躬, 仰紹太祖之基, 纂承王位, 兢身自慎, 恐違乾道. 又蒙天恩, 開示運記. 冥感神祇, 應符合竿. 因斯, 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府自惟忖, 撫育新古黎庶, 猶謂 道化不周, 恩施未有. 於是 歲次戊子 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以欲勞賚, 如有忠信精誠才超察厲勇敢強戰, 爲國盡節有功之徒, 可加賞爵, 以章勲勞. 引駕日行, 至十月二日 癸亥, 向涉是 達非里(a), 廣因諭邊界矣.

2) <陰面> 于是隨駕:

沙門道人 法藏(d)·慧忍(d),

太等 喙部(A) 居朴夫智(B) 伊干(C)·內夫智(B) 伊干(C),

沙喙部(A) 另力智(B) 迺干(C),

喙部(A) 服冬知(B) 大阿干(C)·比知夫知(B) 及干(C)·未知(B) 大奈末(C)·及玆夫知

(B) 奈末(C),

執駕人 喙部(A) 万兮(B) 大舍(C),

沙喙部(A) 另知(B) 大舍(C),

裏內從人 喙部(A) 沒兮次(B) 大舍(C),

沙喙部(A) 非尸知(B) 大舍(C),

騎人 沙喙部(A) 爲忠知(B) 大舍(C),

占人 喙部(A) 与難(B) 大舍(C),

藥師 薦支次(B) 小舍(C),

奈夫通典 本波部(A) 加良知(B) 小舍(C),

本波部(A) 莫沙知(B) 吉之(C),

及伐斬典 喙部(A) 夫法知(B) 吉之(C),

11)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노중국(1992b), 성균관대학교박물관(2008), 국립경주박물관(2017), 정현숙(2018)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裏內[?]名(B) 吉之(C),

堂來客·裏來客五十 外客[?]智(B) 沙干(C),

助人 沙喙部(A) 舜知(B) 奈末(C).

(7)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本²波部², 沙喙部⁵, 喙部⁶,

a: 達非里

B: [?]名, [?]智, 加良知, 居杞夫智, 及珎夫知, 內夫智, 篤支次, 另力智, 另知, 莫沙知, 万兮, 沒兮次, 未知, 服冬知, 夫法知, 非尸知, 比知夫知, 舜知, 与難, 爲忠知, 眞興

C: 及干, 吉之³, 奈末², 大奈末, 大舍⁶, 大阿干, 沙干, 小舍², 伊干², 迺干, 太王

d: 法藏, 慧恐

(7')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加⁶ 居² 及² 吉³ 難³ 內³ 奈³ 達² 篤² 冬² 良² 力² 另²(=牟~武)² 莫² 萬² 末³ 名² 沒² 未² 法² 服² 本² 夫⁵ 比² 非² 沙⁷ 舍⁸ 舜⁸ 尸⁸ 阿⁸ 與⁸ 爲⁸ 伊² 迺² 支⁴ 智⁴ 知¹² 之³ 珍² 次² 忠² 杞²(=漆) 波² 兮² 喙¹¹ <자중 46, 연자수 108>

8. 대구 무술오작비(578?)¹²⁾

1) 戊戌年 {十一}月 朔 十四日 另冬里[?] {且只} [?] 作記之.

2) 此成在人者

都唯那 寶藏(d) [沙]尺干(C), 都唯那 慧藏(d) 阿尼(d),

大工尺 仇利支[?] 壹利刀兮(B) 貴干(C),

{工尺} 上[?] (B?), 豆尔利兮(B),

道尺 辰[?] 生之(B?), [?] 久[?] (B), 夫作[?] 笔令(B) 一伐(C)·奈生(B) 一伐(C), 居[毛] 代丁(B) 一伐(C), 另冬里[?] 沙尔乙(B) 一伐(C), 珎得所利[?] 也得失利(B) 一伐(C), [烏]珎叱只[?] [內]迺尔(B) 一尺(C)·另所兮(B) 一伐(C)·伊此尔利(B) 一尺(C)·[伊]助只(B) 彼日(C),

此塢 本廣 廿步, 高 五步 四尺, 長 五十步,

12)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주보돈(1992b), 남풍현(2000), 성균관대학교박물관(2008), 하일식(2009), 橋本繁(2015), 국립경주박물관(2017), 정재영·최강선(2019)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此作起數者 三百{十二}人 功夫如, 十三日 了作事之.
 文作人 壹利兮(B) 一尺(C).

(8) 대구 무술오작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

a: 村, 居毛村, 仇利支村, 另冬里村², 夫作村, 烏玕叱只村, 玕得所利村

B: 奈生, 內迺尔, 代丁, 豆尔利兮, 另所兮, 芼令, 沙尔乙, 也得失利, 伊助只, 伊此尔
 利, 壹利刀兮, 壹利兮, 辰生之, 且只塢, 上

C: 貴干, 沙尺干, 一伐⁶, 一尺³, 彼日

d: 寶藏, 慧藏, 阿尼

(8') 대구 무술오작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² 居 仇 貴 內 奈 尼 代 刀 冬² 豆 溲(=得)² 令 另(=牟~武)³ 利⁷ 毛 芼 伐⁶ 夫 沙² 上 生²
 所² 失 阿 也 烏 乙 伊² 尔(=爾)⁴ 壹² 日 一⁹ 作 迺 丁 助 之 只³ 支 辰 玕(=珍)² 叱 且 此 尺⁴ 彼
 兮⁴ <자종 49, 연자수 91>

9. 경주 남산신성비(591)¹³⁾

(가) 제1비

1) 亲亥年 二月 廿六日, 南山新城 作節, 如法以 作後三年 崩破者, 罪教事 爲 聞 教令 誓事之.

2) 阿良(a) 邏頭 沙喙(A) 音乃古(B) 大舍(C),

奴含(a) 道使 沙喙(A) 合親(B) 大舍(C),

[營]沽(a) 道使 沙喙(A) 倣知(B) 大舍(C),

郡上村主 阿良(a) 今知(B) 撰干(C),

柒吐[郡]A 知尔利(B) 上干(C),

匠尺 阿良(a) 末丁次(B) 干(C),

奴含(a) 次叱礼(B) 干(C),

文尺 文知(B) 阿尺(C),

城徒上 阿良(a) 沒奈生(B) 上干(C),

13) 이 비문들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이명식(1992), 주보돈(1994), 남풍현(2000), 성균관대학교박물관(2008), 박방룡(2011), 橋本繁(2013), 국립경주박물관(2017)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또한 필요시 필자가 2019년 8월 23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촬영한 사진도 참조하였음도 밝혀둔다.

[工]尺	阿叱[兮]次(B) 干(C),
文尺	竹生次(B) 一伐(C),
面捉上	玕巾(B),
知 ^{鼻?} 捉上	知礼次(B),
不捉上	首尔次(B),
小石捉上	辱[兮]次(B),
受 十一歩三尺八寸.	

(9) 경주 남산신성 제1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沙喙³

a: 營沽, 奴含, 奴含村, 阿良(村)⁴, 柒吐郡

B: 倣知, 文知, 知尔利, 今知, 末丁次, 沒奈生, 首尔次, 阿叱今次, 辱今次, 音乃古, 竹生次, 知礼次, 玕巾, 次叱礼, 合親

C: 干³, 夫舍³, 士干², 阿尺, 一伐, 撰干

(9') 경주 남산신성 제1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⁶ 巾 古 沽 今 乃 奈 奴² 良⁴ 礼(=禮)² 利 末 沒 文 倣 伐 沙³ 舍³ 生² 首 阿⁶ 營 辱 音 尔(=爾)² 一 丁 竹 知⁵ 玕(=珍) 叱² 次⁷ 撰 尺 親 柒(=漆) 吐 舍² 合 兮² 喙³

<자종 41, 연자수 77>

(나) 제2비

1) 阿大兮村(a)

亲亥年 {二月} 廿六日, 南山新城(d)作節, 如法以 後三年 崩破者, 罪教事 爲 聞 教令 誓事 之.

2) 阿旦兮村(a)道使	沙喙 ^{鼻?} (A) 勿生次(B) {小舍}(C),
仇利城(A)道使	沙喙(A) 級知(B) {小舍}(C),
答大支村(a)道使	牟喙(A) 所叱(B) {大(鼻?)}(C),
郡中[上][人]	[沙]尸城(A) 本西利之(B) 貴干(C),
	久利城(A) 首利之(B) 撰干(C),
匠尺	沙尸城(A) 可沙里知(B) {上干}(C),
文尺	美吹 ^{叱?} 之(B) {一伐}(C),
阿大兮村(a)作上人	所平 ^{本?} 之(B) {上干}(C),
工尺	可尸之(B) {一伐}(C),

文尺	得毛 ^{也?} 之(B)_{一尺}(C),
面石捉人	仁尔之(B)_{一伐}(C),
^{尊?} 石捉人	^{尊?} 首叱兮之(B)_{一尺}(C),
^{不?} 石捉人	^{不?} 安尔之(B)_{彼日}(C),
小石捉人	兮利之(B)_{彼日}(C),
	受作七步四尺.

(10) 경주 남산신성 제2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久利城, 仇利城, 牟喙, 沙尸城², 沙喙²// a: 答大支村, 阿旦兮村, 阿大兮村²

B: ^{尊?}首叱兮之, ^{尊?}安尔之, 可沙里知, 可尸^{尊?}之, 級知, 本西利之, 得毛^{尊?}之, 勿生次, 美吹^{尊?}之, 所叱^{尊?}知, 所平之, 首^{尊?}利之, 仁尔之, 兮利之

C: 貴干, 夫^{尊?}, 士干², 小舍², 一伐³, 一尺², 撰干, 彼日²

d: 南山新城

(10') 경주 남산신성 제2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可²干⁴久仇級旦答大³得利⁵里毛牟勿美伐³本沙⁵舍²生西所²首²尸³阿³
安尔(=爾)²仁⁵日²之¹⁰支知³叱²次撰尺²吹平彼²兮⁵喙³

<자중 42, 연자수 91>

(다) 제9비

1) 亲亥年 二月 廿六日, 南山新城(d)作節, 如[法]以 作[後]三年 [崩]破者, 罪教[事] 爲 聞 [教]
[令] 誓事之.

2) [仇]伐郡(A)中 [伊]同城(A) 徒 [受]六[步].

郡上人	[曳]安知(B)_{撰干(C), [生]伐(A) ^{城?} 文(B)_{上干(C),
[匠]尺	同村(a)_{內丁(B)_{上干(C), 斤谷村(a)_{另利丈 ^{丈?} (B)_{一[尺](C),
文尺	^{生?} 伐(A)_{只次 ^{尊?} (B)_{一伐(C),
[城]徒上人	伊同村(a)_{ ^{尊?} 尸丁(B)_{上干(C),
工尺	指大 ^{公?} 村(a)_{入夫 ^{尊?} (B)_{一伐(C),
文尺	伊同村(a)_{ ^{尊?} 次兮(B)_{阿尺(C),
面促	伯干支村(a)_{支刀(B)_{一尺(C),
^{尊?} 捉	同村(a)_{西 ^{尊?} (B)_{阿尺(C),
不捉人	伊同村(a)_{ ^{尊?} (B?),
{小石}捉人}	伯干[支]村(a)_{戊七(B)_{ ^{尊?} (C).

(11) 경주 남산신성 제9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 A: 仇伐郡, 生伐, 伊同城, 𪛗伐// a: 斤谷村, 同村², 伯干支村², 伊同村³, 指大𪛗村
- B: 另利丈, 曳安知, 𪛗尸丁, 𪛗文, 𪛗次兮, 內丁, 戊七, 西𪛗, 入夫𪛗, 支刀, 只次𪛗
- C: 撰干, 𪛗, {一伐}², {一尺}², 士干³, 阿尺²// d: 南山新城

(11') 경주 남산신성 제9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⁶ 谷 仇 斤 內 大 刀 同⁶ 另 利 戊 文 伯² 伐⁵ 夫 生 西 尸 阿² 安 曳 伊⁴ 一⁴ 入 丈 丁² 只 指 知 支³ 次² 撰 尺⁴ 七 兮 <자중 35, 연자수 64>

Ⅲ.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과 그 의의

1. 성모편

먼저 분석 대상의 6세기 신라 금석문 11종에 쓰인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연자수 기준)를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표1> 포항 중성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5.5	滂敷 p ^h	並奉 b 11.5	明微 m 9.0			26.0
설음	설두 端 t 5.0	透 t ^h	定 d 4.0	泥娘日來 n l 6.0 9.0			24.0
	설상 知 t 14.0	徹 t ^h 1.0	澄 d 1.0				15.0
치음	치두 精 ts 1.5	淸 ts ^h 0.5	從 dz		心 s 11.0	邪 z 1.0	14.0
	장치I 莊 ts 2.0	初 ts ^h	崇 dz 1.0		生 s 8.0	俟 z 1.0	11.0
	장치II 章 tc 12.0	昌 tc ^h	船 dz	2.0	書 c	禪 z	14.0
아음	見 k 14.0	溪 k ^h 1.0	羣 g 1.0	疑 ɲ			16.0
후음	影 ʔ 10.0		匣雲 f 1.0	以 j 3.0	曉 h 11.0		25.0
계	64.0	2.5	18.5	29.0	30.0	1.0	145.0

14) 이하의 성모 분포도는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漢語 中古音を 바탕으로 하되, 다음 몇 가지의 조정을 거쳐 제시된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6세기가 위진남북조대 후기임을 감안하여 이 음계의 특징에 맞게 ①輕唇音[非·敷·奉·微]→重唇音[幫·滂·並·微], ②娘·日母→泥母, ③雲母→匣母로 합류시켜 제시하였다(坂井健一(1975), 王力(1985), 이승재(2018) 등에서의 논의를 참조하되, 王力(1985)에서의 舌頭·舌上音 未分說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둘째, 曉母(/h-/)를 전통적으로 次淸音에 소속시켜 왔으나, 최근에 와서 이를 全淸音에 소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음(<https://zh.wikipedia.org/wiki/User:Polyhedron/中古漢音拼音#聲母部分>)과 來母가 음성학적으로 舌頭音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曉母와 來母의 소속을 조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2〉 포항 냉수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7.0	滂敷 p ^h	並奉 b 4.0	明微 m 5.0			16.0
설음	설두	端 t 4.0	透 t ^h	定 d 1.0	泥娘日 來 l 7.0			19.0
	설상	知 t 11.0	徹 t ^h	澄 d				11.0
치음	치두	精 ts 5.0	淸 ts ^h	從 dz		心 s 15.0	邪 z	20.0
	장치I	莊 ts̺ 1.0	初 ts̺ ^h	崇 dz̺		生 s̺ 4.0	俟 z̺	5.0
	장치II	章 tc 13.0	昌 tc ^h	船 dz		書 c 1.0	禪 z	14.0
아음	見 k 15.0	溪 k ^h	羣 g 1.0	疑 ɳ				16.0
후음	影 ʔ 4.0		匣雲 f	以 j 1.0	曉 h 8.0			13.0
계		60.0		6.0	20.0	28.0		114.0

〈표3〉 울진 봉평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7.0	滂敷 p ^h	並奉 b 9.0	明微 m 29.0			45.0
설음	설두	端 t 7.0	透 t ^h 0.5	定 d 1.5	泥娘日 來 l 24.0			47.0
	설상	知 t 31.0	徹 t ^h	澄 d 1.0				32.0
치음	치두	精 ts 3.5	淸 ts ^h 3.5	從 dz		心 s 13.0	邪 z 1.0	21.0
	장치I	莊 ts̺	初 ts̺ ^h	崇 dz̺ 1.0		生 s̺ 7.0	俟 z̺	8.0
	장치II	章 tc 15.0	昌 tc ^h 3.0	船 dz 1.0		書 c 3.0	禪 z 3.0	25.0
아음	見 k 26.0	溪 k ^h	羣 g	疑 ɳ 1.0				27.0
후음	影 ʔ 16.0		匣雲 f 1.0	以 j 4.0	曉 h 15.0			36.0
계		105.5	7.0	14.5	72.0	38.0	4.0	241.0

〈표4〉 울주 천전리 서석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4.5	滂敷 p ^h	並奉 b 6.5	明微 m 10.0			21.0
설음	설두	端 t 3.5	透 t ^h 1.0	定 d	泥娘日 來 l 7.0			15.5
	설상	知 t 20.5	徹 t ^h	澄 d				20.5
치음	치두	精 ts 1.0	淸 ts ^h 2.0	從 dz		心 s 4.0	邪 z	7.0
	장치I	莊 ts̺ 2.0	初 ts̺ ^h	崇 dz̺		生 s̺ 7.0	俟 z̺	9.0
	장치II	章 tc 11.0	昌 tc ^h	船 dz		書 c 5.0	禪 z	16.0
아음	見 k 13.0	溪 k ^h 1.0	羣 g	疑 ɳ				14.0
후음	影 ʔ 6.0		匣雲 f 6.0	以 j	曉 h 4.0			16.0
계		61.5	4.0	12.5	21.0	20.0		119.0

〈표5〉 단양 적성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9.0	滂敷 p ^h 0.5	並奉 b 5.5	明微 m 8.0			23.0
설음	설두	端 t 3.0	透 t ^h	定 d 5.0	泥娘日來 n l 5.0 10.0			23.0
	설상	知 t 12.0	徹 t ^h	澄 d				12.0
치음	치두	精 ts	淸 ts ^h 4.0	從 dz		心 s 4.0	邪 z	8.0
	장치I	莊 ts̺ 3.0	初 ts̺ ^h	崇 dz̺ 2.0		生 s̺ 4.0	侯 z̺	9.0
	장치II	章 tc 14.0	昌 tc ^h 2.0	船 dz̺		書 c̺ 3.0	禪 z̺	19.0
아음	見 k 14.0	溪 k ^h	羣 g 2.0	疑 ɳ				16.0
후음	影 ʔ 11.0		匣雲 f 4.0	以 j 3.0	曉 h 11.0			29.0
계		66.0	6.5	18.5	26.0	22.0		139.0

〈표6〉 창녕 진흥왕적경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11.5	滂敷 p ^h	並奉 b 12.5	明微 m 18.0			42.0
설음	설두	端 t 7.0	透 t ^h	定 d 1.0	泥娘日來 n l 8.0 5.0			21.0
	설상	知 t 40.0	徹 t ^h 1.0	澄 d				41.0
치음	치두	精 ts 4.0	淸 ts ^h 5.0	從 dz 1.0		心 s 7.0	邪 z 1.0	18.0
	장치I	莊 ts̺	初 ts̺ ^h	崇 dz̺		生 s̺ 24.0	侯 z̺	24.0
	장치II	章 tc 2.0	昌 tc ^h 23.0	船 dz̺ 3.0		書 c̺ 5.0	禪 z̺	33.0
아음	見 k 33.5	溪 k ^h 0.5	羣 g 6.0	疑 ɳ				40.0
후음	影 ʔ 11.0		匣雲 f 3.0	以 j	曉 h 38.0			52.0
계		109.0	29.5	26.5	31.0	74.0	1.0	271.0

〈표7〉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9.0	滂敷 p ^h 1.0	並奉 b 4.0	明微 m 10.0			24.0
설음	설두	端 t 2.0	透 t ^h	定 d 1.0	泥娘日來 n l 5.0 2.0			10.0
	설상	知 t 18.0	徹 t ^h	澄 d				18.0
치음	치두	精 ts 1.0	淸 ts ^h 3.0	從 dz		心 s 7.0	邪 z	11.0
	장치I	莊 ts̺	初 ts̺ ^h	崇 dz̺		生 s̺	侯 z̺	
	장치II	章 tc 4.0	昌 tc ^h	船 dz̺		書 c̺ 10.0	禪 z̺	14.0
아음	見 k 11.0	溪 k ^h	羣 g 2.0	疑 ɳ				13.0
후음	影 ʔ 3.0		匣雲 f 3.0	以 j 1.0	曉 h 11.0			18.0
계		48.0	4.0	10.0	18.0	28.0		108.0

〈표8〉 대구 무술오작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1.5	滂敷 p ^h	並奉 b 6.5	明微 m 5.0			13.0
설음	설두 端 t 5.5	透 t ^h	定 d 2.0	泥娘日 來 n l 8.0 10.0			25.5
	설상 知 t 2.5	徹 t ^h	澄 d				2.5
치음	치두 精 ts 2.5	淸 ts ^h 1.5	從 dz		心 s	邪 z	4.0
	장치I 莊 ts	初 ts ^h	崇 dz	1.0	生 s	侯 z	7.0
	장치II 章 tc 5.0	昌 tc ^h 5.0	船 dz		書 c	禪 z 2.0	13.0
아음	見 k 4.0	溪 k ^h	羣 g 1.0	疑 ɳ			5.0
후음	影 ? 16.0		匣雲 f 4.0	以 j 1.0	曉 h		21.0
계	37.0	6.5	14.5	24.0	7.0	2.0	91.0

〈표9〉 경주 남산신성 1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1.0	滂敷 p ^h	並奉 b 1.0	明微 m 3.0			5.0
설음	설두 端 t 0.5	透 t ^h 1.0	定 d	泥娘日 來 n l 7.0 7.0			15.5
	설상 知 t 7.5	徹 t ^h	澄 d				7.5
치음	치두 精 ts	淸 ts ^h 9.0	從 dz		心 s	邪 z	9.0
	장치I 莊 ts	初 ts ^h	崇 dz	1.0	生 s	侯 z	6.0
	장치II 章 tc	昌 tc ^h 3.0	船 dz		書 c	禪 z	7.0
아음	見 k 10.0	溪 k ^h	羣 g	疑 ɳ			10.0
후음	影 ? 8.0		匣雲 f 5.0	以 j 1.0	曉 h 3.0		17.0
계	27.0	13.0	7.0	18.0	12.0		77.0

〈표10〉 경주 남산신성 2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3.0	滂敷 p ^h	並奉 b 4.0	明微 m 4.0			11.0
설음	설두 端 t 3.0	透 t ^h 1.5	定 d 1.5	泥娘日 來 n l 5.0 6.0			17.0
	설상 知 t 3.0	徹 t ^h	澄 d				3.0
치음	치두 精 ts	淸 ts ^h 1.0	從 dz		心 s 1.0	邪 z	2.0
	장치I 莊 ts	初 ts ^h	崇 dz	1.0	生 s 8.0	侯 z	9.0
	장치II 章 tc 11.0	昌 tc ^h 5.0	船 dz		書 c 7.0	禪 z	23.0
아음	見 k 8.0	溪 k ^h	羣 g 1.0	疑 ɳ			9.0
후음	影 ? 9.0		匣雲 f 5.0	以 j	曉 h 3.0		17.0
계	37.0	7.5	12.5	15.0	19.0		91.0

〈표11〉 경주 남산신성 9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翹非 p	2.5	滂敷 p ^h		並奉 b	5.5	明微 m	3.0				11.0
설음	설두	端 t	2.0	透 t ^h	0.5	定 d	6.5	泥娘日 來 l	2.0 1.0				12.0
	설상	知 t	2.0	徹 t ^h		澄 d	1.0						3.0
치음	치두	精 ts		淸 ts ^h	3.0	從 dz				心 s	1.0	邪 z	4.0
	장치I	莊 ts		初 ts ^h		崇 dz	1.0			生 s	1.0	俟 z	2.0
	장치III	章 tc	5.0	昌 tc ^h	4.0	船 dz				書 c	1.0	禪 z	10.0
아음		見 k	8.0	溪 k ^h		羣 g	1.0	疑 ŋ					9.0
후음		影 ʔ	11.0			匣雲 f	1.0	以 j	1.0	曉 h			13.0
계			30.5		7.5		16.0		7.0		3.0		64.0

이상의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를 바탕으로 성모면에서 이들이 지닐 수 있는 음운사적 의의, 특히 고대 한국한자음 재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들에 대한 고찰을 행하도록 하겠다.

가. 무기음(전청) vs. 유기음(차청)의 비율

- ①중성리비 : 94.0(64.8%) vs. 2.5(1.7%)
 ②냉수리비 : 88.0(77.2%) vs. 0.0(0.0%)
 ③봉평리비 : 143.5(59.5%) vs. 7.0(2.9%)¹⁵⁾
 ④천전리서석 : 81.5(68.5%) vs. 4.0(3.4%)
 ⑤단양적성비 : 88.0(63.3%) vs. 6.5(4.7%)
 ⑥창녕비 : 183.0(67.5%) vs. 29.5(10.9%)
 ⑦마운령비 : 76.0(70.4%) vs. 4.0(3.7%)
 ⑧무술오작비 : 44.0(48.4%) vs. 6.5(7.1%)
 ⑨남산1비 : 39.0(50.6%) vs. 13.0(16.8%)
 ⑩남산2비 : 56.0(61.5%) vs. 7.5(8.2%)
 ⑪남산9비 : 33.5(52.3%) vs. 7.5(11.7%)
 cf)광개토_夫餘 : 38.0(50.7%) vs. 0.0(0.0%)¹⁶⁾
 광개토_韓 : 80.3(41.6%) vs. 6.0(3.1%)

위에서 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유기음 비율이 10%대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는 공

15) 권인한(2020)과 달리 봉평리비의 일부 수치에 0.5의 차이가 곳곳에서 드러날 것인 바, 이는 「比」자의 음계를 “止脣㊟上旨幫→止脣㊟上旨幫/止脣㊟去至並”로 바로잡은 결과임을 밝혀둔다.

16) 광개토왕비문_부여계와 한계에서의 비율 수치는 권인한(2020)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하 같음.

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광개토왕비문에서의 수치와 비슷하게 **6세기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 유기음의 발달이 아직 미약한 단계였음**을 알려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무기음 비율의 최저점이 무술오작비(578?)에 있다가 유기음 비율의 최고점이 바로 다음 비문인 남산신성 1비(591)에 있음은 6세기 후반에 와서 신라한자음에서의 유기음 발달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말하자면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 **6세기 중반 이후에 유기음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만한 것인데, 그 원인의 하나로는 고유명사 표기자 「尺」(昌母), 「次」(淸母)의 사용¹⁷⁾이 둘 다 봉평리비(524)에서 시작되어 「尺」은 창녕척경비(561)에서, 「次」는 남산신성비(591)에서 정점을 찍는 등 대체로 560년대 전후로 그 사용량이 늘어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덧붙여 유기음 성모들의 조음위치에 따른 빈도수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표12> 유기음 성모의 조음위치별 빈도수 추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합계
순음 滂數	--	--	--	--	0.5	--	1.0	--	--	--	--	1.5
설음 透徹	1.0	--	0.5	1.0	--	1.0	--	--	1.0	1.5	0.5	6.5
치음 淸初昌	0.5	--	6.5	2.0	6.0	28.0	3.0	6.5	12.0	6.0	7.0	77.5
아음 溪	--	--	--	1.0	--	0.5	--	--	--	--	--	1.5

위의 표를 통하여 유기음의 발달이 “**치음>설음>순음≒아음**” 순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찾을 수 있거니와, 이는 국어 유기음의 조음위치별 단계적 발달설(김무림(1998), 박창원(2002) 등)¹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나. 무성음(전청+차청) vs. 유성음(전탁+차탁)의 비율

- ①중성리비 : 96.5(66.6%) vs. 48.5(33.4%)
- ②냉수리비 : 88.0(77.2%) vs. 26.0(22.8%)
- ③봉평리비 : 150.5(62.4%) vs. 90.5(37.6%)
- ④천전리서석 : 85.5(71.8%) vs. 33.5(28.2%)
- ⑤단양적성비 : 94.5(68.0%) vs. 44.5(32.0%)

17) 「昌」: 봉평리비(3회), 적성비(1회), 창녕비(20회), 무술오작비(4회), 남산1·2·9비(합7회)

「次」: 봉평리비(3회), 천전리서석(2회), 적성비(4회), 창녕비(1회), 마운령비(2회), 남산신성1·2·9비(합10회)

18) 최근에 이르러 고대국어에서 유기음의 발달이 “치음>설음>순음>아음”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보는 단계적 발달설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치음의 차청자는 거의 대부분이 국어에서 유기음으로 반영되는 것은 한자의 차용시기에 치음의 유기음은 형성되어 있었고, 설음의 차청자가 대체로 국어에서 유기음으로 반영되는 것은 치음의 유기음보다 뒤에 설음의 유기음이 생성되었고, 아음의 차청자가 국어에서 평음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음 계열의 유기음이 가장 늦게 형성되었으며, 그 시기는 국어의 한자음이 굳어진 이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창원 2002: 185>

⑥창녕비	: 212.5(78.4%) vs. 58.5(21.6%)
⑦마운령비	: 80.0(74.1%) vs. 28.0(25.9%)
⑧무술오작비	: 50.5(55.5%) vs. 40.5(44.5%)
⑨남산1비	: 52.0(67.5%) vs. 25.0(32.5%)
⑩남산2비	: 63.5(69.8%) vs. 27.5(30.2%)
⑪남산9비	: 41.0(64.1%) vs. 23.0(35.9%)
cf)광개토_夫餘	: 38.0(50.7%) vs. 37.0(49.3%)
광개토_韓	: 86.3(44.7%) vs. 106.7(55.3%)

위에서 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무성음 vs. 유성음 비율이 평균 7:3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6세기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 유성음의 음소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알려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무술오작비의 경우 그 비율이 55:45로 나타남이 다소 이례적이나, 그럼에도 유성음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수치(55.3%)를 보이는 광개토왕비문_한계 자료와는 달리 여전히 무성음의 비율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서 위의 진술을 유지해도 좋을 것이다.

권인한(2020)에서 광개토왕비문_한계 vs. 신라 3비(①~③) 사이에 유성음 감소 현상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원인 규명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 확대해보아도 그 사정이 나아진 것은 없으므로 그 원인의 하나로서 광개토왕비문_한계 고유명사의 대부분이 백제계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결론을 내리고 싶다.¹⁹⁾ 말하자면 광개토왕비문_한계 자료와 신라 금석문 자료 사이에 동질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유성음 감소 현상의 존재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다. 설두음(端系) vs. 설상음(知系)의 비율

①중성리비	: 24.0(16.6%) vs. 15.0(10.3%)
②냉수리비	: 19.0(16.7%) vs. 11.0(9.6%)
③봉평리비	: 47.0(19.5%) vs. 32.0(13.3%)
④천전리서석	: 15.5(13.0%) vs. 20.5(17.2%)
⑤단양적성비	: 23.0(16.5%) vs. 12.0(8.6%)
⑥창녕비	: 21.0(7.7%) vs. 41.0(15.1%)
⑦마운령비	: 10.0(9.3%) vs. 18.0(16.7%)

19)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논의로는 백제 목간의 음차자, 경흥의 반절자, 『日本書紀』 백제 고유명사 표기자 등을 자료로 백제한자음의 자음체계를 논의한 이승재(2013)으로서, 여기에서 이 교수는 백제 자음체계에 유성음 계열(/b/ /d/ /dz/ /z/ /z/)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이것을 일본의 ㄹ音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전해진 음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강조한 바 있다.

- ⑧무술오작비 : 25.5(28.0%) vs. 2.5(2.7%)
 ⑨남산1비 : 15.5(20.1%) vs. 7.5(9.7%)
 ⑩남산2비 : 17.0(18.7%) vs. 3.0(3.3%)
 ⑪남산3비 : 12.0(18.8%) vs. 3.0(4.7%)
 cf)광개토_夫餘 : 21.0(28.0%) vs. 0.0(0.0%)
 광개토_韓 : 74.5(38.6%) vs. 4.0(2.1%)

위에서 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전반적으로 설두음의 비율이 설상음의 비율을 상회함으로써(④ ⑥ ⑦ 예외)²⁰⁾ 설두음과 설상음의 구별이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말할 수 있겠다(설상음→설두음으로의 중화). 특히 6세기 초반 비문들에서 불규칙한 비율을 보이다가 무술오작비 이후 설상음의 비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짐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6세기 후반부터 『東國正韻』 申叔舟 서문에서 말한²¹⁾ 설두음·설상음의 未分 상태가 자리잡았음을 보여준 도 또다른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치두음(精系) vs. 정치 I+II음(莊系+章系)의 비율

- ①중성리비 : 14.0(9.7%) vs. 11+14=25.0(17.2%)
 ②냉수리비 : 20.0(17.5%) vs. 5+16=21.0(18.4%)
 ③봉평리비 : 21.0(8.7%) vs. 8+25=33.0(13.7%)
 ④천전리서석 : 7.0(5.9%) vs. 9+16=25.0(21.0%)
 ⑤단양적성비 : 8.0(5.8%) vs. 9+19=28.0(20.1%)
 ⑥창녕비 : 18.0(6.6%) vs. 24+33=57.0(21.0%)
 ⑦마운령비 : 11.0(10.2%) vs. 0+14=14.0(13.0%)
 ⑧무술오작비 : 4.0(4.4%) vs. 7+13=20.0(22.0%)
 ⑨남산1비 : 9.0(11.7%) vs. 6+ 7=13.0(16.9%)
 ⑩남산2비 : 2.0(2.2%) vs. 9+23=32.0(35.2%)
 ⑪남산9비 : 4.0(6.3%) vs. 2+10=12.0(18.8%)
 cf)광개토_夫餘 : 5.0(6.7%) vs. 3.0+3.0= 6.0(8.0%)
 광개토_韓 : 21.4(11.1%) vs. 8.6+2.5=11.1(5.8%)

20) 울주 천전리서석(525/539), 창녕 진흥왕척경비(561), 마운령 진흥왕순수비(568) 이 세 비문은 갈문왕 또는 국왕의 행차와 관련된 비문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에서 설상음의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알기 어렵다.

21) “또 자모를 분류하여 만드는 것도, 성모를 고르게 할 뿐이라, 설두·설상음과 순중·순경음과 치두·정치음같은 것은, 우리나라 한자음에 있어서는 이를 구별할 수 없으니, 역시 마땅히 그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36자모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겠는가.(且字母之作諸於聲耳, 如舌頭·舌上·唇重·唇輕 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 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六字乎?)” <강신항 2011: 217-218>

그런데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전체적으로 정치음의 비율이 치두음의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본 설음의 경우와는 정반대 방향의 비율 대비를 보이는 것이어서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만만치 않을 것인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설명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위에 나타난 비율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설음의 경우와는 반대 방향 즉, 치두음→정치음으로의 중화로 해석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해석은 권인한(1999: 98)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거니와, 그 요지는 『三國史記』·『三國遺事』 소재 고유명사 이표기 자료에서 치두음인 精母↔精母의 대응례가 2례인데 비하여 정치음인 章母↔章母의 대응례는 9례임을 받아들여 고대국어의 치음계열에 중세국어의 /ʃ/에 해당되는 음소가 치두음인 精母(/ts/)보다는 정치음인 章母(/tʃ/) 계통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 점이다. 자료에 충실한 해석을 추구한 것이나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박창원(2002: 185)의 각주 31)에서 “이러한 결론은 중세국어의 /ʃ/의 음가와 후대의 변화를 관련하여 생각하면 통시적인 변화과정이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측면이 있다. /ʃ/의 조음위치가 고대국어의 구개음에서 중세국어의 치조음으로 그리고 다시 근대국어의 구개음으로 변화하였다는 설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비판을 받았기에 더이상 동일한 해석을 추구하기가 부담스럽게 되어 있다.

둘째는 위에서 드러난 치두 vs. 정치음의 비율 수치를 한어음운사적 기준에 의거하여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필자가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黃侃의 “照系二等諸母古讀精系說”(照系2等の 정치음 I 성모들은 상고음에서 精系 즉, 치두음으로 읽는다는 설)과 “照系三等諸母古讀舌頭音說”(照系3等の 정치음 II 성모들은 상고음에서 설두음으로 읽는다는 설)이다. 이 상고음 학설을 6세기 신라 금석문 자료에 적용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치음의 경우 위진남북조음 자료의 하나인 『經典釋文』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상통례들이 광범위하게 찾아질 뿐만 아니라 당시 한반도와 교류가 잦았을 江東(山東·江蘇省) 출신의 音義家들에서 다수 보인다는 점에서²²⁾ 이 학설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黃侃의 학설을 적용해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설두음 vs. 설상음 / 치두음 vs. 정치음의 비율 수치는 각각

- ①중성리비 : 38.0(26.2%) vs. 15.0(10.3%) / 25.0(17.2%) vs. 0.0(0%)
 ②냉수리비 : 33.0(28.9%) vs. 11.0(9.6%) / 25.0(21.9%) vs. 0.0(0%)
 ③봉평리비 : 72.0(29.9%) vs. 32.0(13.3%) / 29.0(12.0%) vs. 0.0(0%)

22) 坂井健一(1975), pp.337-338 참조.

◦照系三等·舌音系 相通

徐邈音 9例, 劉昌宗音 6例, 李軌音 5例, 郭璞音 7例, 郭象音 8例, 向秀音 1例, 王元規音 1例, 字林音 1例, 沈重音 5例, 戚袞音 2例, 謝嶠音 4例, 顧野王音 2例, 鄭玄音 3例, 何胤音 1例, 施乾音 1例, 合計 56例

◦照系二等·齒頭音 相通

徐邈音 13例, 劉昌宗音 20例, 李軌音 1例, 郭璞音 2例, 郭象音 3例, 字林音 2例, 沈重音 3例, 沈旋音 1例, 孫炎音 1例, 鄭玄音 3例, 何胤音 1例, 施乾音 1例, 合計 51例

④천전리서석	: 31.5(26.5%) vs. 20.5(17.2%) / 16.0(13.4%) vs. 0.0(0%)
⑤단양적성비	: 42.0(30.2%) vs. 12.0(8.6%) / 17.0(12.2%) vs. 0.0(0%)
⑥창녕비	: 54.0(19.9%) vs. 41.0(15.1%) / 42.0(15.5%) vs. 0.0(0%)
⑦마운령비	: 24.0(22.2%) vs. 18.0(16.7%) / 11.0(10.2%) vs. 0.0(0%)
⑧무술오작비	: 38.5(42.3%) vs. 2.5(2.7%) / 11.0(12.1%) vs. 0.0(0%)
⑨남산1비	: 22.5(29.2%) vs. 7.5(9.7%) / 15.0(19.5%) vs. 0.0(0%)
⑩남산2비	: 40.0(44.0%) vs. 3.0(3.3%) / 11.0(12.1%) vs. 0.0(0%)
⑪남산9비	: 22.0(34.4%) vs. 3.0(4.7%) / 6.0(9.4%) vs. 0.0(0%)

의 수치로 조정될 수 있게 된다. 조정된 값으로 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은 모두 설두음과 치두음의 비율이 각각 설상음과 정치음의 비율을 상회함으로써 설두·설상음 및 치두·정치음의 미분 상태에 근사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음이 중요하다. 물론 위진남북조대는 정치음 계열이 불완전하게 정립된 시기이므로²³⁾ 위와 완전 동일한 수치로 도출될 수는 없겠으나, 전반적으로 설두음과 치두음의 비율이 설상음과 정치음의 그것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6세기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의 설두·설상음 및 치두·정치음의 미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말해도 좋을 것이다.**

2. 운모편

앞 절에서와 같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운모 분포도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운모 분포도²⁴⁾에서 취소선이 그어진 攝은 그에 속하는 글자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함).

23) 坂井健一(1975: 338)에서는 위의 照系二·三等 상통례들에 근거하여 “이 시기[위진남북조]에는 치음의 정치음 성모는 아직 36자모 체계로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음을 참조.

24) 여기서 위진남북조음의 운모체계에 맞추지 못하고 중고음의 攝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필자의 역량 한계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위진남북조음 운모체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坂井健一(1975: 384~386)에서 『經典釋文』 제 음의가들의 反切下字를 조사한 결과 『切韻』 반절하자와 70% 정도가 완전 일치한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이렇게 처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 TING Pang-hsin(1975: 233)→ 魏晉_37韻部,
何大安(1981: 八十八)→ 魏_34韻部·晉_40韻部,
王力(1985: 113)→ 魏晉南北朝_42韻部,
이승재(2018: 405-407)→ 前期中古音(5세기 전반기)_30韻部 등.

〈표13〉 포항 중성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모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v/k		
	果假	遇蟹	蟹止	止效	效流	咸深	山臻	臻宕	宕曾	曾梗	梗通		
순음	4.0	1.0		3.0		5.0		0.0/7.0	3.0/1.0			0.0/1.0	25.0
설음	1.0	1.0	4.0	19.0	1.0	4.0	1.0/0.0	2.0/1.0	1.0/0.0		0.0/1.0	0.0/2.0	38.0
치음	8.0	5.0	3.0	17.0		2.0	1.0/1.0	0.0/0.0	0.0/2.0				39.0
아음	1.0	2.0				1.0	3.0/0.0	8.0/0.0	1.0/1.0			1.0/0.0	18.0
후음	2.0	2.0	10.0	2.0		1.0	1.0/0.0	0.0/0.0	0.0/7.0				25.0
계	16.0	11.0	17.0	41.0	1.0	13.0	6.0/1.0	10.0/8.0	5.0/11.0		0.0/1.0	1.0/3.0	145.0
	99.0(68.3%)						22.0(15.2%)/24.0(16.6%)						

〈표14〉 포항 냉수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모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蟹	蟹止	止效	效流	威深	山臻	臻宕	宕曾	曾梗	梗通		
순음	2.0	5.0		2.0				0.0/3.0	2.0/1.0			0.0/1.0	16.0
설음	3.0	4.0	2.0	14.0	1.0	1.0	1.0/0.0		1.0/0.0		0.0/1.0		28.0
치음	4.0	4.0		25.0		1.5	2.0/0.0	0.0/3.0	0.0/1.0			0.0/0.5	41.0
아음		5.0				1.0	1.0/0.0	7.0/1.0				1.0/0.0	16.0
후음	1.0	1.0	7.0			1.0		0.0/3.0					13.0
계	10.0	19.0	9.0	41.0	1.0	4.5	4.0/0.0	7.0/7.0	3.0/5.0		0.0/1.0	1.0/1.5	114.0
	84.5(74.1%)						15.0(13.2%)/14.5(12.7%)						

〈표15〉 울진 봉평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모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 群	曾梗	通	
순음	11.0	5.5		9.0		9.0		0.0/6.0	3.0/1.0	0.0/0.5			45.0
설음	5.0	1.0	15.5	38.0	2.0	1.0	3.5/0.0	2.0/0.0	1.0/0.0		1.0/1.0		71.0
치음	10.0	1.5		29.0		1.0	3.0/0.0	2.0/0.0	3.0/6.0		0.0/5.0	0.0/1.5	62.0
아음		6.0	1.0	1.0			2.0/0.0	8.0/2.0	1.0/5.0			1.0/0.0	27.0
후음	5.0	4.0	15.0	1.0					1.0/9.0		0.0/1.0		36.0
계	31.0	18.0	31.5	78.0	2.0	11.0	8.5/0.0	12.0/8.0	9.0/21.0	0.0/0.5	1.0/7.0	1.0/1.5	241.0
	171.5(71.2%)						31.5(13.1%)/38.0(15.8%)						

〈표16〉 울주 천전리서석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비 섬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桂	曾梗	通	
	성모												
순음	3.0	10.0				2.0		0.0/2.0	2.0/1.0	0.0/1.0			21.0
설음			6.0	24.0							1.0/1.0	0.0/3.0	35.0
치음	7.0			18.0		2.0	1.0/0.0		3.0/1.0		0.0/1.0		33.0
아음		3.0						7.0/2.0	0.0/2.0				14.0
후음	2.0	3.0	6.0						0.0/3.0		2.0/0.0		16.0
계	12.0	16.0	12.0	42.0		4.0	1.0/0.0	7.0/4.0	5.0/7.0	0.0/1.0	3.0/2.0	0.0/3.0	119.0
	86.0(72.3%)						16.0(13.4%)/17.0(14.3%)						

〈표17〉 단양 적성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비 섬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 桂	曾梗	通	
	성모												
순음	2.0	7.0		4.0				0.0/2.0	3.0/5.0				23.0
설음	2.0		4.0	14.0	4.0	4.0	2.0/0.0		2.0/0.0		0.0/1.0		33.0
치음	4.0	1.0	1.0	23.0		3.0	1.0/0.0	1.0/1.0	0.0/2.0		0.0/1.0		38.0
아음			1.0				1.0/2.0	11.0/0.0					15.0
후음	8.0	2.0	12.0	3.0	1.0	1.0		0.0/1.0		0.0/1.0	0.0/1.0		30.0
계	16.0	10.0	18.0	44.0	5.0	8.0	4.0/2.0	12.0/4.0	5.0/7.0	0.0/1.0	0.0/3.0		139.0
	101.0(72.7%)						21.0(15.1%)/17.0(12.2%)						

〈표18〉 창녕 진흥왕척경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비 섬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	曾梗	通	
순음	2.0	10.0		5.0		1.0		0.0/14.0	4.0/ 0.0	2.0/0.0	0.0/ 2.0	1.0/1.0	
설음		1.0	7.0	42.0	2.0	1.0			1.0/ 0.0		3.0/ 4.0	0.0/1.0	
치음	26.0	1.0	1.0	5.0	1.0	1.0	1.0/2.0	1.0/ 3.0	2.0/ 8.0		0.0/20.0	2.0/1.0	
아음		1.0					2.0/6.0	28.0/ 1.0	0.0/ 2.0				
후음	2.0	1.0	34.0				0.0/1.0	3.0/ 0.0	1.0/10.0				
계	30.0	14.0	42.0	52.0	3.0	3.0	3.0/9.0	32.0/18.0	8.0/20.0	2.0/0.0	3.0/26.0	3.0/3.0	271.0
	144.0(53.1%)						51.0(18.8%)/76.0(28.1%)						

〈표19〉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비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	曾梗	通	
순음	2.0	5.0		4.0		2.0	0.0/1.0	1.0/3.0	2.0/1.0	0.0/1.0	1.0/0.0	0.0/1.0	24.0
설음			4.0	16.0				1.0/0.0	1.0/0.0	1.0/0.0	0.0/1.0	2.0/1.0	27.0
치음	15.0			7.0			0.0/1.0	0.0/1.0	1.0/1.0				26.0
아음	1.0	1.0					0.0/2.0	6.0/0.0	0.0/3.0				13.0
후음	1.0	1.0	13.0	3.0									18.0
계	19.0	7.0	17.0	30.0		2.0	0.0/4.0	8.0/4.0	4.0/5.0	1.0/1.0	1.0/1.0	2.0/2.0	108.0
	75.0(69.4%)						16.0(14.8%)/17.0(15.7%)						

〈표20〉 대구 무술오작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비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泮	曾梗	通	
	성모												
순음		1.0		1.0	2.0	3.0		0.0/6.0					13.0
설음			3.0	14.0	1.0	1.0			2.0/ 1.0		2.0/2.0	2.0/0.0	28.0
치음	2.0	4.0		6.0			0.0/1.0		1.0/ 2.0	1.0/1.0	2.0/4.0		24.0
아음		1.0		1.0		1.0							3.0
후음	2.0	1.0	4.0	2.0				2.0/0.0	0.0/12.0				23.0
계	4.0	7.0	7.0	24.0	3.0	5.0	0.0/1.0	2.0/6.0	3.0/15.0	1.0/1.0	4.0/6.0	2.0/0.0	91.0
	50.0(54.9%)						12.0(13.2%)/29.0(31.9%)						

〈표21〉 경주 남산신성 1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비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 莊	曾梗	通	
	순음	설음	치음	아음	후음								
순음								0.0/2.0	1.0/1.0	4.0/0.0			8.0
설음		3.0	4.0	8.0					1.0/0.0	1.0/0.0	1.0/0.0	0.0/2.0	20.0
치음	6.0			7.0		1.0		1.0/0.0	1.0/3.0		2.0/1.0		22.0
아음		2.0					1.0/0.0	6.0/0.0	1.0/0.0				10.0
후음	6.0		5.0				3.0/1.0		0.0/1.0		1.0/0.0		17.0
계	12.0	5.0	9.0	15.0		1.0	4.0/1.0	7.0/2.0	4.0/5.0	5.0/0.0	4.0/1.0	0.0/2.0	77.0
	42.0(54.5%)						24.0(31.2%)/11.0(14.3%)						

〈표22〉 경주 남산신성 2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비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江	曾梗	通	
순음				3.0	1.0	1.0		0.0/3.0	1.0/1.0		1.0/0.0		11.0
설음			3.0	11.0			0.0/1.0	1.0/0.0	1.0/2.0		0.0/1.0		20.0
치음	7.0	2.0	1.0	16.0		2.0		1.0/0.0	0.0/2.0		1.0/2.0		34.0
아음	2.0					2.0	0.0/1.0	4.0/0.0					9.0
후음	3.0		8.0					1.0/0.0	0.0/5.0				17.0
계	12.0	2.0	12.0	30.0	1.0	5.0	0.0/2.0	7.0/3.0	2.0/10.0		2.0/3.0		91.0
	62.0(68.1%)						11.0(12.1%)/18.0(19.8%)						

〈표23〉 경주 남산신성 9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운류 운비 성모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江	曾梗	通	
순음		1.0				2.0		0.0/5.0	1.0/0.0		0.0/2.0		11.0
설음			2.0	2.0	1.0		0.0/1.0				2.0/0.0		8.0
치음			1.0	8.0				1.0/0.0	0.0/1.0	1.0/0.0	1.0/4.0	6.0/0.0	23.0
아음						1.0		6.0/0.0	1.0/0.0				8.0
후음	2.0		2.0	4.0				1.0/0.0	0.0/4.0			0.0/1.0	14.0
계	2.0	1.0	5.0	14.0	1.0	3.0	0.0/1.0	8.0/5.0	2.0/5.0	1.0/0.0	3.0/6.0	6.0/1.0	64.0
	26.0(40.6%)						20.0(31.3%)/18.0(28.1%)						

위에서 제시된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운모 분포도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한자음 관련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마. 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

- ①중성리비 : 99.0(68.3%) vs. 22.0(15.2%) vs. 24.0(16.6%)
- ②냉수리비 : 84.5(74.1%) vs. 15.0(13.2%) vs. 14.5(12.7%)
- ③봉평리비 : 171.5(71.2%) vs. 31.5(13.1%) vs. 38.0(15.8%)
- ④천전리서석 : 86.0(71.2%) vs. 16.0(13.4%) vs. 17.0(14.3%)
- ⑤단양적성비 : 101.0(72.7%) vs. 21.0(15.1%) vs. 17.0(12.2%)
- ⑥창녕비 : 144.0(53.1%) vs. 51.0(18.8%) vs. 76.0(28.1%)
- ⑦마운령비 : 75.0(69.4%) vs. 16.0(14.8%) vs. 17.0(15.7%)
- ⑧무술오작비 : 50.0(54.9%) vs. 12.0(13.2%) vs. 29.0(31.9%)
- ⑨남산1비 : 42.0(54.5%) vs. 24.0(31.2%) vs. 11.0(14.3%)

⑩남산2비	: 62.0(68.1%) vs. 11.0(12.1%) vs. 18.0(19.8%)
⑪남산9비	: 26.0(40.6%) vs. 20.0(31.3%) vs. 18.0(28.1%)
cf)광개토_夫餘	: 48.0(64.0%) vs. 16.0(21.3%) vs. 11.0(14.7%)
광개토_韓	: 128.0(66.3%) vs. 46.0(23.8%) vs. 19.0(9.8%)

위에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광개토왕비문에서 세 종류의 비율이 ‘음성운>양성운>입성운’의 순서로 나타남에 비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음성운>입성운>양성운’ 순서의 비문들(① ③ ④ ⑥ ⑦ ⑧ ⑩)이 ‘음성운>양성운>입성운’ 순서의 비문들(② ⑤ ⑨ ⑪)에 양적으로 우세함으로써 입성운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⑤단양 적성비와 ⑥창녕비 사이에 음성운의 비율이 70%대에서 50%대로 급하락한 반면, 입성운의 비율은 10%대에서 20% 후반대로 급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양성운은 ⑨남산1비에서, 입성운은 ⑧무술오작비에서 각각 최고점을 찍고 있음을 보아서는 6세기 후반에 들어 개음절 구조에서 폐음절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하는 바, ‘개음절(음성운) vs. 폐음절(양성운+입성운)’의 비율 대비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①증성리비	: 99.0(68.3%) vs. 46.0(31.7%)
②냉수리비	: 84.5(74.1%) vs. 29.5(25.9%)
③봉평리비	: 171.5(71.2%) vs. 69.5(28.8%)
④천전리서석	: 86.0(71.2%) vs. 33.0(27.7%)
⑤단양적성비	: 101.0(72.7%) vs. 38.0(27.3%)
⑥창녕비	: 144.0(53.1%) vs. 127.0(46.9%)
⑦마운령비	: 75.0(69.4%) vs. 33.0(30.5%)
⑧무술오작비	: 50.0(54.9%) vs. 41.0(45.1%)
⑨남산1비	: 42.0(54.5%) vs. 35.0(45.5%)
⑩남산2비	: 62.0(68.1%) vs. 29.0(31.9%)
⑪남산9비	: 26.0(40.6%) vs. 38.0(59.4%)
cf)광개토_夫餘	: 48.0(64.0%) vs. 27.0(36.0%)
광개토_韓	: 128.0(66.3%) vs. 65.0(33.7%)

위에서 보듯이 개음절 vs. 폐음절의 비율이 ②냉수리비에서 75 : 25 정도의 수치를 보이다가 ⑪남산9비에서는 40 : 60 정도의 수치를 보임은 6세기 말엽에 이르러 신라한자음의 음절구조가 개음절 구조에서 폐음절 구조로의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5세기 초의 고구려한자음과 6세기 말의 신라한자음 사이에 음절구조상의 차이가 상당히

였던 것으로 말할 수 있음을 그 의의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바. 성조의 분포

	평성	상성	거성	입성
①중성리비	75.0(51.7%)	7.0(4.8%)	39.5(27.2%)	23.5(16.2%)
②냉수리비	65.0(57.0%)	10.0(8.8%)	25.5(22.4%)	13.5(11.8%)
③봉평리비	105.9(43.9%)	16.3(6.8%)	79.0(32.8%)	39.8(16.5%)
④천전리서석	61.0(51.3%)	13.5(11.3%)	28.0(23.5%)	16.5(13.9%)
⑤단양적성비	67.5(48.6%)	19.5(14.0%)	34.5(24.8%)	17.5(12.6%)
⑥창녕비	88.5(32.7%)	14.5(5.4%)	92.5(34.1%)	75.5(27.9%)
⑦마운령비	44.0(40.7%)	7.5(6.9%)	39.5(36.6%)	17.0(15.7%)
⑧무술오작비	29.9(32.9%)	17.3(19.0%)	14.0(15.4%)	29.8(32.7%)
⑨남산1비	38.0(49.4%)	9.0(11.7%)	19.0(24.7%)	11.0(14.3%)
⑩남산2비	43.5(47.8%)	12.0(13.2%)	17.5(19.2%)	18.0(19.8%)
⑪남산9비	33.5(52.3%)	5.0(7.8%)	7.0(10.9%)	18.5(28.9%)
cf)광개토-夫餘	44.0(58.7%)	13.0(17.3%)	7.0(9.3%)	11.0(14.7%)
광개토-韓	105.7(54.8%)	25.5(13.2%)	43.3(22.4%)	18.5(9.6%)

성조의 분포에 있어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평성자 선호 경향에서의 공통점을 보이는 동시에 성조별 비율에 있어서는 “평성>거성>입성>상성”의 순서의 비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① ② ③ ④ ⑥ ⑦ ⑨). 이를 광개토왕비문과 비교해보면 평성자 선호 경향에서의 공통점만 보일 뿐, 성조별 비율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통점을 찾아지지 않는다(⑤단양적성비에서의 “평성>거성>상성>입성”의 순서가 광개토왕비문_한계와의 공통점일 뿐이다). 이는 6세기 신라 금석문들과 광개토왕비문 사이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차이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하나 위의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성조 분포도에서의 특징적인 흐름은 ⑦마운령비와 ⑧무술오작비 사이에 비평성자(仄聲字)들의 비율이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라한자음에서 성조의 분포면에서도 그 이전과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운모면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江攝字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 현상은 권인한(2015: 222)에서 말한 대로 강섭자가 전체 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못미치므로 그만큼 고유명사 표기자로 선택될 확률이 낮았던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봄이 안전할 것이다.²⁵⁾

3. 음소 분포 제약

음소 분포 제약이란 특정 음소가 특정한 위치에 나타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을 말하는데, 주요 고찰 대상은 어두에서의 疑母(/ŋ-/), 來母(/l-/)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 권인한(2011)에서

25) 다만, 한 세기에 걸쳐 특정 섭의 결핍 분포가 지속됨은 결코 예사로운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蛇足を 달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강섭이 상고음에서 魏晉·宋·北魏 전기(~493)에 이르기까지 東部に 속한 운부였다가, 齊·梁·陳·北周·隋代(480~618)에 와서야 비로소 독립된 운부임(何大安 1981: 八十九, 一二七)에 주목하여 강섭자 불용의 굳건한 흐름을 보이는 6세기 신라한자음은 魏晉代의 음을 근간으로 한 체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작된 소위 두음법칙의 존재 여부에 대한 추적의 속편인 셈이다.

〈표24〉疑母字의 분포

	어두	어중
①중성리비	--	--
②냉수리비	--	--
③봉평리비	--	宜 ¹ 弥宜智
④천전리서석	--	--
⑤단양적성비	--	--
⑥창녕비	--	--
⑦마운령비	--	--
⑧무술오작비	--	--
⑨남산1비	--	--
⑩남산2비	--	--
⑪남산9비	--	--
cf) 광개토_夫餘	--	--
광개토_韓	巖 ¹ 巖門 城	--

먼저 疑母字의 경우는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어두는 물론 어중에서도 그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어중에서의 유일한 예는 ③봉평리비에서의 인명 표기 “弥宜智”인데, 이는 그만큼 6세기 신라 비문들에서는 광개토왕비문_한계에서보다 음소 /ŋ/의 분포에 있어서의 제약이 더욱 철저하였음을 알려준다.

〈표25〉來母字의 분포

	어두	어중
①중성리비	--	列 ¹ 仇鄒列支 盧 ¹ 斯盧 利 ⁶ 蘇豆古利村, 果西牟利, 斯利, 沙利, 夷斯利, 壹斯利 哩 ¹ 心刀哩
②냉수리비	--	盧 ² 到盧弗, 至都盧 利 ⁴ 節居利 ³ , 那斯利
③봉평리비	--	羅 ⁴ 居伐牟羅 ⁴ 力 ¹ 勿力智 婁 ² 比須婁, 烏婁次 利 ⁷ 尼牟利, 只斯利, 奈爾利 ² , 於卽斤利, 牟珍斯利公, 牟利智
④천전리서석	-- cf)(d)麗德<원명>	禮 ¹ 知礼夫知<추명> 六 ¹ 匱泊六知<추명> 利 ² 余利夫智<원명>, 一利 次<추명>
⑤단양적성비	--	羅 ¹ 刀羅兮 力 ¹ 武力智 禮 ² 內礼夫智, 烏礼兮 婁 ¹ 巳婁婁 利 ³ 那利村, 奈弗耽郝失利, 又悅利 巳 里 ¹ 非今皆里村 林 ¹ 高頭林城

⑥창녕비	--	力 ² 甘力智, 另力智 利 ² 碑利城, 弥利 次 次会 里 ¹ 小里夫智
⑦마운령비	--	良 ¹ 加良知 力 ¹ 另力智
⑧무술오작비	--	令 ¹ 笔令 利 ⁷ 仇利支 村 村, 玆得所利 村 村, 豆尔利 兮, 也得失利, 伊此尔利, 壹利 刀兮, 壹利兮 里 ² 另冬里 村 村 ²
⑨남산1비	--	良 ⁴ 阿良(村) ⁴ 禮 ² 知礼次, 次 知 叱礼 利 ¹ 知 知尔利
⑩남산2비	--	利 ⁵ 久利城, 仇利城, 本西利之, 首 利 利之, 兮利之 里 ¹ 可沙里知
⑪남산9비	--	利 ¹ 另利丈
cf) 광개토_夫餘	--	盧 ¹ 鴨盧 婁 ³ 味仇婁, 俳婁, 瑞社婁 流 ¹ 沸流谷 留 ² 大朱留王, 儒留王 利 ² 碑利城, 奄利大水
광개토_韓	林 ¹ 林城	羅 ⁶ 古須耶羅城, 芬而耶羅城, 新 羅, 新羅城, 安羅, 任那加羅 盧 ⁴ 古 古盧城, 各模盧城, 白模盧 城, 牟盧城 婁 ⁶ 古牟婁城, 婁城, 婁賣城, 牟 婁城, 燕婁城, 于婁城 利 ¹⁰ 利 利城, 利 利 利 利 利 利 利城, 幹氏利城, 古利城, 沸 利 利城, 析支利城, 阿利水, 也利 城, 於利城, 奧利城

위에서 보듯이 來母字의 경우는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어중의 분포는 자유로운 반면, 어두에서는 그 제약이 매우 철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예외는 ④천전리서석_원명에서의 漢化 인명으로 추정되는 “麗德”).

따라서 『삼국지』·동이전_한계에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疑母字 또는 來母字의 어두 제약을 어긴 경우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漢化 표기이거나 수적으로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3세기 초~6세기 말에 이르는 고대국어 자료들에서 어두에서 /ŋ-/은 물론 /l-/이 설 수 없었던 음소 분포 제약 즉, 두음법칙의 존재가 굳건하였던 것으로 최종 정리해도 좋을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포항 중성리신라비(501)~경주 남산신성비(591)”에 이르는 6세기 신라 비문

11종에서 수집·정리된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분포를 바탕으로 음운학적 고찰을 행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고대한국한자음 연구 관련 음운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본론의 논의에서 드러난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지표별 논의의 정리

가. 무기음(전청) vs. 유기음(차청)의 비율: 전반적으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유기음 비율이 10%대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광개토왕비문에서와 비슷하게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 유기음의 발달이 아직 미약한 단계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만, 6세기 후반에 올수록 치음자를 중심으로(「昌」, 「次」 등) 유기음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⑥창녕비를 기점으로 치음 차청자의 빈도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을 실마리로 유기음 성모의 조음위치별 빈도수 추이를 살핀 결과, 유기음의 발달이 “치음>설음>순음≒아음” 순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도 또다른 의의로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나. 무성음(전청+차청) vs. 유성음(전탁+차탁)의 비율: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무성음 vs. 유성음 비율이 평균 7:3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당시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 유성음의 음소적 지위가 약하였음을 알려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또한 광개토왕비문_한계에서 무성음 vs. 유성음 비율이 45:55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광개토왕비문_한계의 고유명사 대부분이 백제계인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설두음(端系) vs. 설상음(知系)의 비율: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전반적으로 설두음의 비율이 설상음의 비율을 상회함으로써 **설두음과 설상음의 구별이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말할 수 있다(설상음→설두음으로의 중화). 특히 6세기 초반 비문들에서 불규칙한 비율을 보이다가 무술오작비 이후 설상음의 비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짐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6세기 후반부터 『東國正韻』 신숙주 서문에서 말한 설두음·설상음의 미분 상태가 자리잡았음을 보여줌도 또다른 의의가 될 수 있다.

라. 치두음(精系) vs. 정치 I+II음(莊系+章系)의 비율: 설음의 경우와는 달리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전체적으로 정치음의 비율이 치두음의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설음의 경우와는 반대 방향의 중화로 해석해야 하나, 이는 국어 치음의 통시적인 변화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설명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黃侃의 “照系二等諸母古讀精系說” 및 “照系三等諸母古讀舌頭音說”을 적용하여 조정해본 결과,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설두음과 치두음의 비율이 각각 설상음과 정치음의 비율을 상회함으로써 설두·설상음 및 치두·정치음의 미분 상태에 근사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의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 광개토왕비문에서 세 운류의 비율이 ‘음성운>양성운>입성운’의 순서로 나타남에 비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음성운>입성운>양성운’ 순서의 비문들이 ‘음성운>양성운>입성운’ 순서의 비문들에 양적으로 우세함으로써 입성운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음이 주목된다. 즉, ⑤단양 적성비와 ⑥창녕비 사이에 음성운의 비율이 70%대에서 50%대로 급하락한 반면, 입성운의 비율은 10%대에서 20% 후반대로 급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운은 ⑨남산1비에서, 입성운은 ⑧무술오작비에서 각각 최고점을 찍고 있음을 보아서 6세기 후반에 들어 개음절 구조에서 폐음절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하는 바, ‘개음절(음성운) vs. 폐음절(양성운+입성운)’의 비율 대비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5세기 초의 고구려한자음과 6세기 말의 신라한자음 사이에 음절구조상의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말할 수 있음을 그 의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바. 성조의 분포: 성조의 분포에 있어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평성자 선호 경향에서의 공통점을 보이는 동시에 성조별 비율에 있어서는 “평성>거성>입성>상성” 순서의 비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광개토왕비문과 비교해보면 평성자 선호 경향에서의 공통점만 보일 뿐, 성조별 비율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통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성조 분포도에서 특징적인 흐름은 ⑦마운령비와 ⑧무술오작비의 사이에 비평성자들의 비율이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6세기 후반에 들어 신라한자음에서의 평성자 선호 경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사. 음소 분포 제약: 먼저 疑母字의 경우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어두는 물론 어중에서도 그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6세기 신라에서는 광개토왕비문_한계에서 보다 음소 /ŋ/의 분포에 있어서의 제약이 더욱 철저하였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來母字의 경우는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어중의 분포는 자유로운 반면, 어두에서는 그 제약이 매우 철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지』·동이전에서부터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疑母字 또는 來母字의 어두 제약을 어긴 표기례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수적으로 미미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3세기초~6세기말에 이르는 고대국어 자료들에서 어두에서 /ŋ-/은 물론 /l-/이 설 수 없었던 음소 분포 제약 즉, 두음법칙의 존재가 굳건하였던 것으로 최종 정리해도 좋을 것이다.

2.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에 있어서의 의의

앞서 정리된 본고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라한자음은 6세기 전반에는 광개토왕비문으로 대표되는 5세기 고구려한자음과의 공통성을 유지해오다가 6세기 후반에 들어 몇 가지 차이점들이 나타나면서 점차 신라화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말할 수 있고, 이를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본고의 의의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6세기 초 신라 3비문과의 비교에서 성모면에서의 전청(무기음) vs. 차청(유기음)의 비율, 설두음 vs. 설상음, 치두음 vs. 정치음의 비율, 운모면에서의 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 및 개음절 vs. 폐음절의 비율, 성조 분포에서의 평성자 선호 경향, 음소 분포 제약면에서의 疑·來母字의 어두 제약 등에서 광개토왕비문_한계 사이의 상당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권인한 2020: 56), 이러한 공통성이 대체로 ⑤단양적성비(545~550?)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한자음에서의 6세기 전반기는 고구려한자음 이식기로 특징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다가 6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다른 면모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첫째 전청(무기음) vs. 차청(유기음)의 비율면에서 무기음의 비율이 ⑧무술오작비(578?)에서 최저점을 찍음과 동시에 유기음의 비율이 ⑨남산1비(591)에서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점, 둘째 설두음 vs. 설상음의 비율면에서 ⑧무술오작비에서 각각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고 있다는 점, 셋째 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면에서 ⑪남산9비(591)에서 음성운의 최저점을 찍는 한편, ⑨남산1비와 ⑧무술오작비에서 양성운과 입성운의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점, 넷째 성조 분포면에서 ⑦마운령비(568)와 ⑧무술오작비에서 비평성자(=仄聲字)들의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들을 통하여 6세기 후반, 특히 ⑧무술오작비를 전후한 시기에 **유기음자의 증가, 설두음자의 증가 및 설상음자의 급감, 양성운·입성운자의 증가, 비평성자 사용의 증가 등 광개토왕비문과의 차이점인 동시에 신라한자음의 독자적 특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남은 과제와 전망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신라한자음의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식적 성격이 강한 금석문과 달리 비공식적 성격의 6세기 후반 함안 목간들에서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을 통해서도 본고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에 남아 있는 7~8세기의 불경 음주 및 각필점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다짐해본다.

■ 참고 문헌

- 강신항(2011),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국립경주박물관(2017·2019), 『신라문자자료 I·II』, 비에이디자인.
- 권인한(2011), 「『삼국지』·위서·동이전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구결연구』 27, 217-242.
- 권인한(2015), 『광개토왕비문 신연구』, 박문사.
- 권인한(2020, 곧 나옴),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국어사적 의의 탐색: 신라 3비문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및 비교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한국고대사학회(편), 『신라 왕경과 포항중성리신라비』 (가제), 28-65.
- 김무림(1998), 「고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7-39.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노중국(1992), 「울주 천전리서석」,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가야 편)』, (제)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50-174.
- 박방룡(2011), 「남산신성비·월성해자비의 재해석」, 『목간과 문자』 8, 71-92.
- 박병철(2006.5.13), 「울주 천전리서석 원명과 추명에 대하여」, 구결학회 월례 강독회 발표문, 1-9.
- 박창원(2002), 『고대국어 음운(1)』, 태학사.
- 성균관대학교박물관(편)(2008), 『신라 금석문 탁본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명식(1992), 「경주 남산신성비」,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가야 편)』, (제)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03-121.
- 이문기(1992), 「울주 천전리서석」,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가야 편)』, (제)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50-174.
- 이승재(2013), 『한자음으로 본 백제음 자음체계』, 태학사.
- 이승재(2018), 『전기 중고음』, 일조각.
- 장경준(2009), 「단양적성비문의 재검토」, 『한국목간학회 제4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141-161.
- 정재영·최강선(2019.12.28), 「무술오작비 3D 스캔 판독」, 구결학회 월례 연구발표회, 1-6.
- 정현숙(2018),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 주보돈(1992a·b), 「단양 적성비·대구 무술오작비」,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가야 편)』, (제)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33-40, 97-102.
- 주보돈(1994), 「남산신성의 축조와 남산신성비-제9비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0·11, 33-59.
- 하일식(2009), 「무술오작비 추가 조사 및 판독 교정」, 『목간과 문자』 3, 139-156.
- 한경호(2014), 『新出土戰國-西漢時期楚地文獻語音研究』, 上海: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Ting Pang-hsin(1975), *CHINESE PHONOLOGY OF THE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SPECIAL PUBLICATIONS NO. 65.
- 王力(1985),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何大安(1981), 『南北朝韻部演變研究』, 台北: 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橋本繁(2013), 「중고기 신라 축성비의 연구」, 『동국사학』 55, 129-182.

橋本繁(2015), 「戊戌塙作碑釋文の再検討」,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94集, 千葉: 正文社, 17-25.

坂井健一(1975), 『魏晉南北朝字音研究－經典釋文所引音義攷』, 東京: 汲古書院.

▣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의 현 단계

空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과 의의」 토론문

한경호 (성균관대학교)

본 토론자는 주 전공이 해당 문장에서 다루어진 주제보다는 다소 이른 시기인 상고중국어(Old Chinese) 쪽이며, 전공의 소속분야도 국어학이 아닌 중어학이므로 본 발표문에 대해 논해줄 수 있는 바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논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보면, 본 문장에서 다루어진 자료들을 보면, 제시된 자료들이 6세기 신라어의 어떤 음소 혹은 음절과 대응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성모 쪽에서 결론을 내게 된다면 결국은 [±aspirate]나 [±voice]와 같은 일부 자질관련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파열음과 비음의 조음점 치음(dental) 혹은 치경음(alveolar)이 권설음(retroflex)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 더 붙어 치음 혹은 치경음의 파찰~마찰음이 권설음(retroflex)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세히 본다면, 유기음의 비율이 6세기에 늘어났다-더 정확히는 자질로서의 [±aspirate] 차이가 분명해졌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세한국어와의 큰 차이는 없지 않은가로 여겨진다. 특히 권설음의 경우, 동북아 언어에서는 통시적으로 중국어 내지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언어들을 제외할 시, 다소 드러나기 어려운 자음일 수 있는데, 고대한국어를 연구함에 있어 권설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2. pp.29-30의 「바. 성조의 분포」에 대해 논한다면, 중국어의 음절에서 평성은 예로부터도 전체 음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의할 점은 크게 없다고 느껴진다. 더불어 명문당 연구자료도 사용된 글자수가 자중 기준으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라면 다소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가 토론자의 생각이다. 더불어 성조만큼은 다음자(내지는 복수한자음)의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음역에 사용된 글자 당 성조를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3. 마지막으로, pp.15-18에 제시된 성모 분포도에 있어 禪~船母의 경우, 상고음을 같이 감안하더라도 禪母 dz- 船 z-로 재구합이 합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空

신라 文書木簡의 話者와 書者

이경섭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 발표요지

목간은 크게 형태와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목서의 내용에 기반한 용도별 분류는 문서목간과 꼬리표목간, 기타 목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가운데 문서목간의 경우 문서의 수발(受發)관계가 명확한 수발문서목간, 장부목간, 기록간 등으로 구분하거나, 관사나 관인 사이에서 명령의 전달 혹은 행정 처리의 보고나 업무 연락 등을 위해 사용된 문서목간과 행정의 과정에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작된 기록목간으로 나누기도 한다. 나아가 문서의 수발관계 즉 문서의 수신과 발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좁은 의미의 문서목간이라고도 한다.

이 발표는 문서목간의 발신과 수신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것이 제작되고 기능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문서목간에는 구두(口頭) 전달의 과정이 문자화된 경우들이 많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구두 형식적인 문서목간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발신과 수신을 언급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명령이나 보고의 구두 전달이 문자화되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해당 내용을 말하는 화자(話者)와 그것을 문자로 쓰는 서자(書者)의 존재가 내재되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문서의 발신과 수신 과정에 중첩된 화자와 서자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서목간과 문서행정의 전개 양상이 지니고 있는 역사상을 분명히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서목간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문서 행정의 과정에서 구두 전달의 양상이 어떻게 변이되고 문자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월성해자 유적에서 출토한 목간 중에는 당시 신라 국가의 중심지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양상을 반영한 문서목간들이 있다. 그 가운데 2호 목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구두 보고의 형식이 문자화된 문서목간으로 주목받았는데, 내용은 관사 내부나 관사와 관사 사이의 상급(上)에게 행정 명령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던 상신(上申)문서였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수신은 대오지랑(大烏知郎)이 확인되지만 발신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문장의 구조는 화자이자 문서의 발신자가 서자가 되어 말하는 보고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기록한 형태이다. 주목되는 것은 수신자에 대하여 직명(職名)은 기록하지 않은 채 대오지랑으로만 표기한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2호 목간의 행정 체계가 대오지랑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직제(職制)적인 상하관계보다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

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월성해자 신출토 3호 목간이다. (1면)典中大等□白沙喙及伐漸典前과 (4면)文人周公智吉士로 보아 발신은 전중대등(典中大等)이며 수신은 사탁급별점전(沙喙及伐漸典), 문서 작성자는 문인 주공지 길사이다. 문서는 어떤 행정상의 내용이 전중대등에게 보고되고, 전중대등이 이것을 사탁급별점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었던 듯하다. 문서 상에서 ‘□白’의 화자는 전중대등이며 서자는 문인 주공지 길사인데, 주공지는 전중대등 이하의 문서 담당자(文人)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목간에서는 내용상 화자가 발신자(전중대등)이지만 서자는 제3자인 주공지였던 것이다. 2호 목간의 대오지랑(수신)과 화자=서자, 신3호 목간의 전중대등(발신·화자)과 주공지(서자)의 관계는 유사한 경우였을 가능성이 크며, 구두 전달의 내용[下達·上申·傳達]과 업무 성격[內外]의 차이에 따라 발신과 수신, 화자와 서자의 존재가 분명히 기록되거나 일부 생략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중대등과 사탁급별점전이 직무상 상하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목간에서 사용된 발신자의 구두 전달을 의미하는 ‘白’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상신(上申)의 의미만으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후술하는 월지 1호 목간과도 유사하다.

성산산성 218호 목간은 가장 이른 시기의 지방 출토 문서목간이다. 이 문서의 내용으로 보아 발신은 진내멸촌주(眞乃滅村主)이며, 수신은 미즉이지(弥卽余智) 대사(大舍)가 분명하다. 서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이다. 이 문서목간의 사안을 구두로 보고하는[白과 白之] 화자는 진내멸촌주이며, 구두 전달[上申]의 내용이 “...白(1면)~白之(2면)”, “...白(3면)~白之(4면)”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진 것에서 문서의 서자가 진내멸촌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장 구조는 이미 지적된 것처럼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의 “...敎~敎耳”와 같은 동사 반복 구문으로 하나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하는 서술에서 사용한 관용적인 구문이다. 문서목간에서 “...白~白之”가 반복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완결되는 내용이지만 구분되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서사한 형태이며, 이는 곧 발신자이자 화자인 진내멸촌주의 구두 전달[上申] 내용과 정황을 서자가 그대로 문서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신자를 진내멸촌주[職名]로 기록한 것과 달리 수신자는 직명이 아닌 ‘인명+관등’으로 기록한 점도 흥미롭다. 이는 문서목간의 수신자[미즉이지 대사]와 서자의 관계가 업무상으로는 사적(私的)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여겨진다.

이성산성 출토 무진년 목간(608년 추정)도 지방사회에서 사용된 문서목간인데, 지방의 거점성인 남한성과 수성 사이의 문서행정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목간은 하부가 결실되고 일부의(3면) 판독이 곤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찍부터 고대 일본의 ‘某前申’ (혹은 前白) 서식 목간의 기원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를 참고하면 남한성 도사가 발신자이자 화자였을 가능성이 크며 수성 도사와 촌주가 수신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서의 서자는 남한성의 도사이거나 성사(城司)의 문자 담당자였을 것이다. 특히 문서 제작(발송)의 날짜[年月日]가 기입된 것은 구두 전달의 과정이 문서목간으로 문자화되면서 날짜 기입의 필요성

이 더욱 강화되었던 정황[월성해자→성산산성→이성산성→월지 목간]을 반영한다. 그리고 문서의 발신과 수신이 모두 직명(職名: 道使·村主)으로 기록된 점이나, 문서의 수발 관계가 지방행정체계에서 동급인 지방관[도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당시 지방사회의 문서행정이 城村 단위에서부터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월지(안압지) 1호 목간은 안압지 보고서 출간 당시에는 판독이 어려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국립경주박물관의 안압지목간 재조사 과정에서 목간 면의 순서와 안정적인 판독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발신처이자 화자는 세택(洗宅)이고, 수신처는 이진(二典)임이 확인되었다. 본문에 이어서는 문서 작성의 시점[11월 27일]과 문서 작성자[書者]인 典左 思林을 기록했다. 세택은 시종 및 비서·문필 담당기관으로 국왕 직속과 東宮 직속으로 각각 존재했으며, 頭身沐浴과 (木松)茵 등은 목욕 및 깔개(茵)와 관련된 행사 혹은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이진(二典)은 동궁의 급장전(給帳典: 異稱 □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목간의 세택 또한 동궁 산하의 세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목간은 세택이 급장전에서 빌린 물품의 반납을, 급장전의 典左 思林이 확인하고 기록한 문서목간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에도 관사 내외의 간단한 명령·정보의 전달이나 보고 등을 문서목간화하였고, 구두 전달의 문서목간화라는 오랜 서사 전통에 따른 차자표기식(借字表記式) 목간 서식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지금까지 살펴 본 신라 문서목간의 서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¹⁾

1) 월성해자 목간 일부와 신출토 목간의 경우 선본의 적외선 사진을 직접 검토하지 못한 관계로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목간이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글에서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선 정리하였다.

■ 문서목간의 서식(書式)

구 분	서 식	비 고
① 월성해자 2호	…(万拜)白 }	大烏知郎足下万拜白 }
② 월성해자 10호	…(敬)白 ~前	□典大宮士等敬白 □典前先□
③ 월성해자 12호	…敎事	四月一日典太等 敎事
④ 월성해자 신2호	…前(敬呼)白	□小舍 ^前 敬呼白遣 居生小烏送□□
⑤ 월성해자 신3호	…(敬)白 ~前	典中大等敬白沙喙及伐漸典前
⑥ 월성해자 신4호	…前別白	兮刪宋(宗?)公前別白作(?)□□×
⑦ 성산산성 218호	…白~白之/~前去白之(2면), “…白~白之”	(2면)□城在弥卽尔智大舍下智前去 白之
⑧ 이성산성 무진년목간	…(白?, 1면)…前(2면)	南漢城道使(白?)…須城道使村主前
⑨ 월지(안압지) 1호	…白之~前	洗宅白之 二典前

현재까지 알려진 문서목간의 서식은 크게 (ㄱ) ‘…白’ : ① ④ ⑥ ⑦, (ㄴ) ‘…白~前’ : ② ⑤ ⑧ ⑨ (ㄷ) ‘敎事’ : ③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식의 특징으로 (ㄱ)은 화자이자 발신자가 명기되지 않고 발신자가 관등명이나 인명이 표기된 수신자에게 직접 구두로 보고[주로 上申]하는 형식의 문서목간에 적용되고 있으며, (ㄴ)은 발신과 수신이 분명하게 기록되며 문서의 授受관계가 직명과 직명이나 직명과 관부, 관부와 관부 사이의 평행적인 구두 傳達 내용이 기록되었다. (ㄷ)은 6세기 금석문에서도 자주 확인되듯이 명령이나 포고 등의 구두 전달[下達]에 사용되었다.

■ 문서목간의 授受와 話者·書者 관계

구 분	발 신	수 신	話 者	書 者	날 짜	비 고
월성해자 2호	미상	大烏知郎	발신자	발신자	×	上申
월성해자 10호	□典大宮士等	□典	□典大宮士等	미상	×	불명
월성해자 12호	典太等	미상	典太等	미상	4월 1일	下達
월성해자 신2호	미상	□小舍	발신자	발신자?	×	上申?
월성해자 신3호	典中大等	沙喙及伐漸典	典中大等	文人周公智吉士	×	傳達
월성해자 신4호	미상	兮刪宋(宗?)公	발신자	발신자	×	上申?

성산산성 218호	眞乃滅村主	弥卽尔智大舍 下智	眞乃滅村主	미상	3월중	上申
이성산성 무진년목간	南漢城道使	須城道使村 主	南漢城道使	미상 결실	戊辰年 정월 12일	傳達
월지(안압지) 1호	洗宅	二典	洗宅	典左 思林	11월 27일	(出納) 記錄

문서의 授受와 話者書者 관계에서 문서의 발신자와 문서 내용의 화자는 모두 일치하는데, 이 같은 양상은 문서의 내용이 문서 발신의 주체가 구두로 말하는 형식의 문장으로 서사되었기 때 문이다. (ㄱ)의 ① ④ ⑥은 문서의 화자이자 발신자가 서자와 동일하며, (ㄴ)의 경우는 발신 및 수신 과 함께 서자도 따로 기록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ㄱ)의 문서목간이 보다 고식(古 式)의 구두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ㄴ)은 문서목간의 양식이 비록 구두 형식을 완전히 극복 한 것은 아니지만 관부 체계와 관직제도가 정비되어감에 따라 신라적인 문서 양식으로 자리잡았 던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ㄱ)과 (ㄴ)의 비교에서는 발신과 수신이 公私적인 관계나 직간접적인 상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인 관계가 강화되어 갈수록 문서목간의 발신과 화자, 서자의 분립은 분명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서목간에 내재된 구두의 세계에 기반한 문서행정은 사람과 사람, 개 인과 개인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경향성을 지니게 된다. 그것이 점차 문서주의에 입각한 계서 (階序)적인 관부와 관직 중심의 관료제 발전에 동반해 점차 문서목간에서도 발신 및 화자와 서자 와의 분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은 곧 문서에 근거한 행정 책임을 문자화했던 과정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문서목간의 발신과 수신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관직화된 개인으로, 종래에 는 관부와 관부 그리고 관부에 속한 관인들을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관부 의 관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구두의 세계에 기반했던 목간의 문서행정이 점차 관료제적인 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일찍이 국가의 재정을 주재하는 관직의 이름으로 출발했던 稟主의 발전 과정이나 大等の 분화 등을 염두에 둔다면 구두의 세계에서 기원했던 문서목간에 내재된 문서행정의 전개 과정은 신라 관직과 관부제도의 기원과 성립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찰할만한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발표자료

1. 들어가며

▪ 목간의 용도 분류

- 文書목간, 꼬리표[附札]목간, 기타목간

▪ 문서목간이란

- (윤선태 2007) ① 文書受發 관계가 명확한 受發문서목간

② 장부목간 ③ 전표나 각종 행정처리를 위한 메모, 발췌
용으로 사용된 기록간

- (이경섭 2013) ① 관사나 관인 사이에서 명령의 전달 혹은
행정 처리의 보고나 업무 연락 등을 위해 사용된 문서목간
[수신(자)와 발신(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 좁은 의미의 문서목간

② 행정의 과정에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작된
기록목간[帳簿.集計.傳票.기타]

● 문서목간 ▮ 문서(文書) _ 좁은 의미의 문서목간

└ 기록(記錄) ─ 장부(帳簿)

└─ 집계(集計)

└─ 전표(傳票) [支給 / 請求 등]

└─ 기타

*이 글에서는 좁은 의미의 문서목간을 검토 대상으로 함.

- 이 연구는 문서목간의 발신과 수신 문제를 검토하면서 문서목간이 제작되고 기능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
-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문서목간의 경우 口頭 傳達의 과정이 문자화된 사례들이 확인됨
- 이러한 문서목간의 발신과 수신 과정은 목간의 제작 과정에서 話者和 書者의 존재를 암시
- 이들 목간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문서 행정의 과정에서 口頭 傳達의 양상이 어떻게 변이되고 文字化되는지 고찰



2. 월성해자 출토 목간
(1) 2호 목간

• 월성해자 2호 목간의 판독

- 1면 大鳥知郎足下万拜白]
- 2면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个(斤?)
- 3면 牒垂賜教在之 後事者命盡
- 4면 使內



• 鳥

• 白 丿 = 白

• 월성해자 2호 목간 해석

대오지랑 족하에게 萬拜하며 아웁니다. [白之]

經에 넣어 쓰려고 생각하여 白不踰紙 12 개(혹은 斤)을 사라는
牒을 내리신[垂賜] 명령[敎]이 있었습니다. 뒤의 일은 명한
대로 다하였습니다.

使內 (시킨 대로 처리했습니다)

- 수신 : 大鳥知郎, 발신 : 미상=목간의 話者이자 書者

- 大鳥知郎=大鳥知(경위 15관등)+ 郎의 구조

: 大鳥第(「영천청제비 병진명」: 536)

→大鳥之(「단양적성비」: 550년 경)

→大鳥(「남산신성비 제3비」: 591)의 흐름

: 大舍(12) 이하 관등에는 帝智, 智, 第, 之 등의 어미가 사용.

「창령비」(561)에 大舍로 표기된 이후에는

帝智, 智, 第, 之의 어미는 사라짐.

* 연대 추정의 단서

- 2호 목간의 성격 자체는 관사 내에서나 관사와 관사 사이의
상급(자)에게 행정 명령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던 上申문서

① 經에 넣어 쓸 白不踰紙를 사라는 명령이 下達

(牒으로 표현된 문서목간)

② 명령 집행의 실무 담당자가 일의 처리를 진행함

③ 결과가 大鳥知郎에게 보고됨

(문서목간으로 보고, 2호 목간)

- 544년(진흥왕 5년) 興輪寺, 550년 安藏법사를 大書省에
임명, 551년 惠亮을 寺主[僧政]로 임명, 565년(진흥왕 26)
陳 불교 經論 1천 7백여 권

- 당시 행정 명령과 보고 체계에서 口頭形式的인 측면이
강했음을 암시

- 즉 ‘口頭傳達의 文字化’ 과정에서

문서목간의 話者이자 書者인 발신자를 불분명하게 처리



• 12호 목간의 판독

1행 四月一日典太等敎事

2행 (爲)舌日故爲□敎事□

- 敎事의 내용을 기록한

일종의 명령 하달 문서

목간이었을 것으로 추정



(2) 신출토 3호 목간

<월성해자 신출토 3호 목간>

(1면) 典中大等□白沙喙及伐漸典前

(2면) 阿尺山□舟□至□愼白□□

(3면) 急陁爲在之

(4면) 文人周公智吉士・

(1면) 典中大 등이 … 아뿔(白). 沙喙及伐漸典 앞(前).

(2면) 阿尺인 山□가 배로 이르러 삼가 아뢰길, “□□하여,

(3면) 급히 흠으로 막게 하였다”함.

(4면) 文人인 周公智 吉士

* 적외선 선본을 확인 못해서 윤선태, 2018의 판독과 해석 참조

- 발신자 및 話者 : 典中大等, 수신 : 沙喙及伐漸典
書者 : 文人 周公智 吉士
- 어떤 행정상의 내용이 전중대등에게 보고되고,
전중대등이 이것을 사탁급벌점전에게 전달
- 典中大等 = 典大等?
- 沙喙及伐漸典 → 沙喙의 及伐漸典. 沙喙部? 沙喙宮?
- 전중대등(발신)_관직(명이자 관부적 성격), 沙喙及伐漸典_관부
- 文人 周公智 吉士는 전중대등 이하의 속료. 문자 담당자.
- 전중대등과 주공지의 관계는
월성해자 2호 목간의 대오지랑과 발신자(話者) 및
성산산성 218호 목간의 미죽이지 대사와 書者의 관계와 유사
- 書者의 기록 유무 : 구두 전달의 내용[下達. 上申. 傳達]과
업무 성격[內外]의 차이. 書式의 차이로 확인[표 참조].
- 전중대등과 사탁급벌점전이 직무상 상하관계 ×
: ‘白’이라는 구두 형식의 표현이 반드시 上申의 의미만은 아님
: 월지 1호 목간
- 발신(話者)과 수신, 서자가 모두 기록된 문서목간이라는 의미



3. 성산산성 218호 목간

성산산성 218호 목간 판독

- 1면 三月中 眞乃滅村主 懷怖白
2면 □城在弥卽尔智大舍下智前去白之
3면 (卽)白 先節卒日代法稚然
4면 伊(毛)羅及伐尺(案)言(廻)法卅代告今卅日食去白之

성산산성 218호 목간 해석

- 1면 3월에 眞乃滅村主가 괴롭고 두려워하며 아뢰기를,[白]
2면 “□城에 계신 弥卽尔智 大舍下智 앞에 나아가 아뢰니다”
(고 하였습니다).[白之]
3면 곧 아뢰기를,[卽白] “앞선 때에 60일 代法을 다하지(채우지)
못하였습니다[稚然].”
4면 ‘伊毛羅 及伐尺이 살피어 말하기를[案言] ‘법을 피하여[廻法]
30(일)대법[卅代]을 (행하였음을) 알리고[告]’ 지금 30일을 먹
고 가버렸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白之]

- 218호 목간은 “…白(1면)~白之(2면)”,
“…白(3면)…白之(4면)”의 문장 구조
- 이 모든 사안을 구두로 보고하는[白과 白之]
행위의 주체는 진내멸촌주
- 218호 목간의 문장 형식과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

<냉수리비>의 敎~敎耳 구문

- (1.2행) 斯羅喙斯夫智王乃智王此二王敎用珍而麻村節居利爲
證尔令其得財敎耳
- (7.8행) 此七王等共論敎用前世二王敎爲證尔取財物盡令
節居利得之敎耳
- (9.10행) 別敎節居利若先死後令其弟兒斯奴得此財敎耳
- (11.12.후1행) 別敎末鄒斯申支此二人後莫更謫此財若更謫者
敎其重罪耳

- 이같은 비문의 동사반복 구문은 교를 내리는 주체를 밝히고
敎와 敎耳 사이의 개별적인 내용을 상대화하여 讀者를
의식하면서 書者가 기록한 형태
- “…敎~敎耳”와 같은 동사반복 구문은 하나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하는 서술에서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완결되
지만 구분되는 여러 내용을 순차적으로 서사할 때에 당시
신라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던 구문 (이용현 2019)

▪ 진내멸촌주는 목간의 書者인가?

- “卽白”으로 이어지는 문장은 보고당사자(진내멸촌주)가 1인칭의 화법으로 문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목간 내용의 구두보고자인 진내멸촌주의 말을 제3자인 書者가 그 보고의 과정과 내용을 구분하여 채록한 문장 구조로 이해

진내멸촌주가 미족이지 대사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여

書者가 구두보고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제작

진내멸촌주가 직접 미족이지 대사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현장에 배석한 書者가 목간을 작성했을 경우

- 목간의 내용상 수신은 미족이지 대사, 발신은 진내멸촌주

- 목간의 話者는 진내멸촌주, 書者는 미상(제3자)

* 수신이 문서 내용상 職名이 기재되지 않은 채

‘인명+ 관등’으로만 기록.

이는 문서목간의 수신자(미족이지 대사)와 書者의

관계 속에서 유추 → 전중대등과 주공지. 사적인 예속 관계



안악 3호분의
記號과 省事



이성산성 무진년 목간의 판독

- . (1면) 戊辰年正月十二日朋南漢城道使… (결실)
- . (2면) 須城道使村主前南漢城(城)火□… (결실)
- . (3면) 城上□(庸)(黃)去□□(得)(時)□…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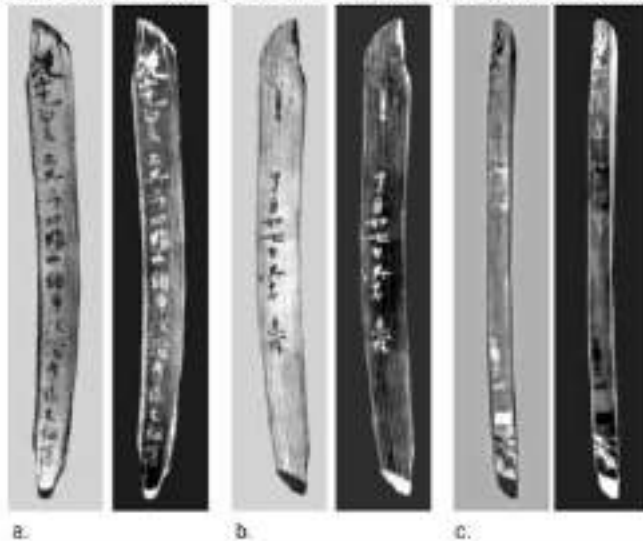
- 무진년의 연대는 608년(진평왕 30년)으로 추정
- 고대 일본의 ‘누구(某)의 앞(前)에 아웁니다(申)’(혹은 前白목간)라는 서식의 목간, 前白목간의 기원을 언급(이성시 1997)
- 목간의 하부가 결실되고 3면의 대다수 글자의 판독이 난해
- 지방의 거점성인 남한성과 수성 간의 문서행정 양상
- 남한성도사가 발신자이자 話者, 수성도사와 촌주는 수신

- 문서목간의 書者는 남한성의 도사(+ 춘주)이거나
城司의 문자 담당자로 추정
- 문서 제작 혹은 발신일의 유무, 수신·발신인의 명기, 구두형
식과 문서형식의 문제 등에서 월성해자 2호 목간과 이성산
성 무진년 목간의 차이
- 성산산성 218호 목간과는 다르게 지방행정체계 상의
(지명+) 職名(道使·村主)으로 표기



5. 월지(안압지) 1호 목간

함순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안압지 목간의 새로운 편목(〈신라문화연구〉창간호, 2007)



월지(안압지) 1호 목간

(1면) 洗宅白之 二典前 四□子頭身沐浴□□木松茵

(2면) … □近□入日□□

(3면) 十一月廿七日 典(左) 思林

- 안압지 보고서 이후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2007)의 연구.
목간의 새로운 판독과 순서
- 발신처이자 話者(白之)는 洗宅, 수신처는 二典,
문서 본문 (四□子 ~ 入日□□),
문서작성 시점 (十一月廿七日),
문서작성 담당자=書者는 典(左) 思林
- # 洗宅과 二典: 세택은 시종 및 비서. 문필 담당기관으로
국왕 직속과 東宮 직속으로 각각 존재. 頭身沐浴과 (木松)茵
→ 목욕 및 깔개(茵)와 관련된 行事 혹은 儀式과 관련=給帳典
- 세택이 급장전에서 빌린 물품의 반납 과정에서 급장전의
典左 思林이 확인하고 기록한 문서목간으로 추정
- 官司 内外의 간단한 명령. 정보의 전달이나 보고 등에서 목간이
사용되었을 것. 이 때 구두 전달의 문서목간화라는 오랜 서사
전통에서 借字表記式 목간 서식이 형성되어 전개(윤선태 2008)
- 관부와 관부 사이의 행정 처리 문서이며, 날짜와 함께 그 담당
자를 기입(행정상의 책임 소재)

6. 나오며

■ 문서 목간의 서식(書式)

(ㄱ) ‘…白’ : ① ④ ⑥ ⑦

(ㄴ) ‘…白~前’ : ② ⑤ ⑧ ⑨

(ㄷ) ‘敎事’ : ③

■ 문서목간의 서식(書式)

구 분	서 식	비 고
① 월성해자 2호	…(万拜)白 1	大鳥知郎足下万拜白 1
② 월성해자 10호	…(敬)白 ~前	□典大宮士等敬白 □典前先□□
③ 월성해자 12호	…敎事	四月一日典太等敎事
④ 월성해자 신2호	…前(敬呼)白	□小舍 ^韓 敬呼白達 居生小鳥送□□
⑤ 월성해자 신3호	…(敬)白 ~前	典中大等敬白沙喙及伐漸典前
⑥ 월성해자 신4호	…前別白	今刪宋(宗?)公前別白作(?) □□×
⑦ 성산산성 218호	…白~白之/-前去白之(2면), …白~白之	(2면) □城在弥卽尔智大舍下智前去白之
⑧ 이성산성 무진년목간	…(白?, 1면)…前(2면)	南漢城道使(白?)…須城道使村主前
⑨ 월지(안압지) 1호	…白之~前	洗宅白之 二典前

- (ㄱ)은 話者이자 발신자가 명기되지 않고 발신자가 관등명이나 인명이 표기된 수신자에게 직접 구두로 보고[주로 上申]하는 형식의 문서목간
- (ㄴ)은 발신과 수신이 분명하게 기록되며 문서의 授受관계가 직명과 직명이나 직명과 관부, 관부와 관부 사이의 평행적인 구두 傳達 내용이 기록
- (ㄷ)은 6세기 금석문에서도 자주 확인되듯이 명령이나 포고 등의 구두 전달[下達]에 사용

■ 문서목간의 授受와 話者-書者 관계

_일부 목간 제외

구 분	발 신	수 신	話 者	書 者	날 짜	비 고
월성해자 2호	미상	大鳥知郎	발신자	발신자	×	上申
월성해자 12호	典太等	미상	典太等	미상	4월 1일	下達
월성해자 신3호	典中大等	沙喙及伐漸典	典中大等	文人周公智吉士	×	傳達
성산산성 218호	眞乃滅村主	弥卽余智大舍下智	眞乃滅村主	미상	3월중	上申
이성산성 무진년목간	南漢城道使	須城道使.村主	南漢城道使	미상	戊辰年 청월 12일	傳達
월지(안압지) 1호	洗宅	二典	洗宅	典(左) 思林	11월 27일	(出納) 記錄

■ 문서의 授受와 話者.書者 관계에서는 문서의 발신자와

문서 내용의 화자는 모두 일치

- 이는 문서의 내용이 문서 발신의 주체가 구두로 말하는 형식의

문장으로 서사되었기 때문

- (ㄱ)의 ①④⑥은 문서의 화자이자 발신자는 서자와 동일

- (ㄱ)의 문서목간이 보다 고식(古式)의 구두 형식

- (ㄴ)은 발신 및 수신과 함께 書者도 따로 기록된 경우가 많음

- (ㄴ)은 비록 구두 형식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관부체제와 관직제도가 정비되어감에 따라

신라적인 문서 양식으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이해

- 나아가 (ㄱ)과 (ㄴ)의 비교에서는 발신과 수신 사이에

公.私적인 관계나 職務적인 상하 관계 등이 고려

- 공적인 관계가 강화되어 갈수록

문서목간의 발신과 話者, 書者의 분립은 분명해지는 경향

※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 문서목간의 발신은 목간의 내용상 話者로부터 시작
- ‘口頭의 세계’에 기반한 문서행정은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경향성
- ‘口頭의 세계’가 점차 행정화된 ‘文字化’ 과정 속에서
문서목간의 발신 및 話者와, 書者와의 분립이 요구
- 문서목간의 발신과 수신은 경우 개인으로부터 점차 관직화된
개인으로, 종래에는 관부와 관부 중심으로 정착
이 과정에서 개인은 관부의 관인으로 존재
- 구두의 세계에 기반했던 목간의 문서행정이 점차 공식화되고
관료제적인 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전
- 稟主의 발전과정이나 大等의 분화 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구두의 세계에서 기원했던 문서목간에
내재된 문서행정의 전개 과정은 신라 관직-관부제도의
기원과 성립 과정 속에서도 이해 가능

「신라 문서목간의 話者와 書者」 토론문

박성현 (계명대학교)

이경섭 선생님은 한국 고대 목간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도 『한국고대사연구』에 「성산산성 목간과 신라사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218호 목간(‘眞乃滅村主’ 목간)을 검토하면서 화자와 서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번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라고 생각된다. 신라 ‘문서 목간’의 다양한 사례들이 검토되면서 그것을 ‘구두(口頭) 전달의 과정이 문자화’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때 해당 내용을 말하는 화자와 그것을 문자로 쓰는 서자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한 것이다.

그리하여 몇 개의 문서 목간을 검토하고 그것을 (ㄱ) ‘...白’, (ㄴ) ‘...白~前’, (ㄷ) ‘敎事’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ㄴ)이 ‘신라적인 문서 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았으며, (ㄴ)에서와 같이 공적인 관계가 강화되어 갈수록 발신자=화자와 서자의 분립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정리한 부분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더 풀어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문제 제기에 따른 논문의 완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1. 218호 목간의 해석 문제

218호 목간에 대해서 발표문에는 없지만 보내주신 ppt 파일을 보면 2, 4면의 ‘~白之’를 ‘~라고 아뢰었습니다’라고 해석하였다. 서두의 ‘3월중’이라는 표현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진내멸 촌주를 발신자, 미족이지 대사를 수신자로 하는 문서 양식이 되지 않는다. 3월에 진내멸 촌주가 아뢴 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될 뿐이다. 이것이 문서 양식이 되려면 “(3월에) 진내멸 촌주가 아뢰입니다. 미족이지 대사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문서 목간을 가지고 문서 행정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모든 문서 목간이 문서 행정과 직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통 광의의 문서라고 하면 문서와 장부를 포괄하는 것이고, 협의의 문서라고 하면 受發하는 문서를 것이다. 문서 목간은 대체로 수발하는 문서를 말하며 여기에는 사적인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문서 목간을 문서 행정과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구, 제도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가려내고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서 목간이 구두 보고가 문자화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내게 된 것은 첫째, 단순히 구두 보고해야 할 사안을 대리인을 통해 문서로 전달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또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토론자는 적어도 후자 정도가 되어야 ‘문서 행정’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혹시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3. 문서 목간에서 발신자, 즉 화자와 서자가 달라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識字層의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의 입을 통해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문자화 하는 것은 내용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때 발신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手下의 누군가에게 시켰다면 문자를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 편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문자를 모른다고 하면 서자의 왜곡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의 영역에서 대리인의 입을 통해 전달하기보다 정확한 내용의 문서가 선호되었을 것인데, 이때 이러한 문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하급 관리들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양성될 수 있었을지 궁금하다.

한편 ‘진내멸촌주’ 목간의 경우 별도의 서자가 있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1번에서 제시한 해석을 따른다면 지방 사회에서도 일정한 보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식자층이 존재했던 것일까? 선생님은 진내멸 촌주가 구두 보고한 것을 하급 관리가 기록했을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목간은 ‘수발하는 문서’ 보다는 보고 내용에 대한 기록 또는 정식 기록을 위해 임시 메모한 정도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